

기관정기감사



감 사 보 고 서

-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감사 -

2025. 9.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및 감사중점	3
III. 감사결과	7
제1절 감사결과 총괄	7
제2절 관광진흥 시책 분야	9
제3절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분야	78
제4절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분야	106
[별표]	134

표 목차

[표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요 기능과 업무	3
[표 2]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 및 소관기관 현황	4
[표 3]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현황	4
[표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현황(2022~2024년)	5
[표 5] 감사분야별 감사중점	6
[표 6]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7
[표 7]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현황	10
[표 8]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숙박시설 공급대책	19
[표 9] 제7차 권역계획의 숙박시설 수급분석 중 객실공급 관련	22
[표 10] 숙박시설 수급분석 결과 비교: 제7차 권역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4
[표 11] 서울특별시 관광호텔 객실공급 현황(2010~2019년)	25
[표 12] 서울특별시 숙박시설 수급 분석 전망(2022~2026년)	26
[표 13] 서울특별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객실 수 현황(2018~2024년 6월)	27
[표 14] 관광자원의 수요와 공급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조정의견	28
[표 15] 서울특별시 숙박시설 수급분석 관련 조정의견 제시 내용	29
[표 16]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업종 및 지원 조건 등	30
[표 17] 서울특별시 호텔업 객실 수 구성 현황(2022년)	32
[표 18] 숙박시설의 종류 및 현황(2018~2023년)	32
[표 19] 일반·생활 숙박업 시설 관련 등급결정·인증제도 현황(2023년)	33
[표 20] 숙박업에 집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세부현황(2015~2023년)	35
[표 21] 일반·생활숙박업 시설 기금 지원 현황(2021~2023년)	36
[표 22]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업종 및 지원 조건 등	36
[표 23] 관광·통과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B-2)의 세부 유형(2024년 6월)	41
[표 24]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	42
[표 25] 지방공항을 활용하여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44
[표 26] 방한 상위 20개국(2023년 기준)의 지방 방문 비율	45
[표 27]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와 유사 입국허가 제도의 비교	47

[표 28] 체류자격별 무단이탈률 비교(2015~2023년)	49
[표 29] 중국인 단체관광객 체류자격별 무단이탈률 비교(2015~2023년)	49
[표 30] 양양·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의 외래관광객 유치 기여도(2023년) ..	50
[표 31]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의 확대추진 경과	52
[표 32]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 관련 제도 확대·개선 건의(2018~2024년)	54
[표 33]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에 대한 관계자 의견	54
[표 34] 전담여행사 지정·행정처분 근거 비교	55
[표 35] 외래관광객의 민박 등 이용 현황	64
[표 36]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기간 및 대출금리(2023년 하반기)	66
[표 37]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현황(2019~2023년)	66
[표 38] 지정과 해제 조항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사례	86
[표 39] 서울특별시 공공테니스장 예약정책 현황(2024년 4월 기준)	94
[표 40] 특정동호회의 우선 예약률이 90% 이상인 공공테니스장 현황	95
[표 41] 서대문구 가좌테니스장 및 홍은테니스장 운영 현황	96
[표 42] 시·도교육청별 징계 관련 증명서 제출 규정 및 매뉴얼 마련 현황	100
[표 43]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으로 채용하거나 파견받은 현황	101
[표 44] 자격취소된 체육지도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으로 근무 중인 사례	103
[표 45]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지정 직위	106
[표 46]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	107
[표 47] 문화체육관광부 세출예산 및 보조사업 예산 현황	108
[표 48]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집행 현황	108
[표 49]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영리업무를 수행한 명세	120
[표 50] 외부강의 등 미신고 명세	123
[표 51] 근무지 및 출장지를 이탈하여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명세	124
[표 5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사업 현황(2017~2022년)	127
[표 53]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사업(2017~2022년) 집행잔액 미정산 내역(2024년 3월 말 기준)	129
[표 54] 정상 제출된 정산보고서 관련 집행잔액 미반납 보조사업(2017~2022년) 내역	130

그림 목차

[그림 1]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	50
[그림 2] 골프장 체제 개편	85

도표 목차

[도표 1] 외래관광객 방한 추이 및 관심도	11
[도표 2] 외래관광객 입국 장소 추이	12
[도표 3] 외래관광객 방문지역 특성	13
[도표 4] 외래관광객 숙박시설 이용 특성	14
[도표 5] 외래관광객 여행 중 방문 권역	44
[도표 6] 생활체육 참여율 추이	80
[도표 7] 생활체육 참여 · 미참여 이유(2023년)	80
[도표 8] 생활체육시설 이용 특성(2023년)	81
[도표 9] 생활체육 동호회 선호 종목(2023년)	82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관광 진흥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문화로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동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국민들의 관광·스포츠·문화체험 등 외부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보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종합청렴도가 3~4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2017년 이후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현안사업의 추진내용 및 성과 등을 진단하고, 기관운영의 전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2024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한 후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범위

이번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기능 중 관광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분야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서·결산서, 언론 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4. 6. 19.부터 같은 해 7. 16.까지 20일간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2024. 8. 23.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하였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5. 9. 5.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현황¹⁾ 및 감사중점

제1절 일반 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무와 기능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조직법」 제36조에 따라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 중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소관 세부 기능과 업무는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요 기능과 업무

구분	주요 기능과 업무
대변인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정책 발표,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
감사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감사,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기획조정실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조직·정원, 예산 편성·집행, 법령안 입안 및 심사
문화예술정책실	문화, 예술, 여가,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민족문화,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교류, 재외공관(문화원, 문화홍보관) 문화예술 활동 지원, 국가이미지 제고, 국가 홍보
종무실	종무행정, 종교단체·법인 지원, 종교 교류,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 보존·관리
국민소통실	국정홍보, 정부 주요 정책 광고, 정부발표 브리핑, 국정현안 홍보,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콘텐츠정책국	영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오물·게임물·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캐릭터·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 진흥
저작권국	저작권 정책, 저작권 등록 및 위탁관리업 허가, 불법 복제물 단속,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미디어정책국	정기간행물·방송영상·광고·출판·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
체육국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 진흥,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 국내대회 개최, 국제 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관광정책국	관광진흥,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국내여행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교통, 비자협력, 여행업 육성, 관광특구의 개발·육성,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돋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2. 조직과 인력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2차관 · 1차관보 · 1단 · 4실 · 1대변인 · 5국 · 11관을 두고 있으며, 소속기관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9개 기관이 있다.

[표 2]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 및 소속기관 현황

구분	조직 현황
장관	대변인, 감사관
제1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예술정책실(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종무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제2차관	차관보, 국민소통실(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체육국(체육협력관),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소속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한민국예술원, 해외문화홍보원 ^{주)}

주: 2024. 2. 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본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개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표 3]과 같이 본부 690명, 소속기관 2,328명 등 총 3,018명이다.

[표 3]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현황

구분	계	정무직	별정직	고위 공무원	3~4급	4~5급	6급 이하	연구직	전문 경력관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3,018	4	4	54	128	385	1,459	508	97	379
본부	690	3	4	23	58	216	322	6	49	9
소속기관	2,328	1	-	31	70	169	1,137	502	48	37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3. 예산 현황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규모는 [표 4]와 같이 전년 대비 3.2%(2,137억 원) 증가한 6조 9,545억 원으로서 콘텐츠 및 연관산업,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경쟁력 강화,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향유 확대, 민간의 자유로운 창작지원 및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조성의 기조를 고려하여 편성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예산은 총 3조 6,960억 원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총 3조 2,584억 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83.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현황(2022~2024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	증가율	예산	증가율	
총재정규모	73,968	67,408	△8.9	69,545	3.2	
< 예산 합계 >	37,302	34,941	△6.3	36,960	5.8	
일반회계	29,709	30,446	2.5	31,923	4.8	
지역발전특별회계	6,169	2,980	△51.7	3,868	2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24	1,515	6.4	1,170	△22.8	
< 기금 합계 >	36,666	32,467	△11.5	32,584	0.4	
문화예술진흥기금	3,880	4,079	5.1	4,462	9.4	
영화발전기금	1,100	851	△22.7	590	△30.7	
지역신문발전기금	88	88	△0.3	88	-0.1	
언론진흥기금	213	204	△4.2	192	△5.9	
관광진흥개발기금	13,659	10,580	△22.5	11,025	4.2	
국민체육진흥기금	17,726	16,666	△6.0	16,227	△2.6	

주: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날 수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제2절 감사분야 및 중점

감사원은 핵심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중요도(국민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위험도(국회·언론의 관심 사안, 소극행정 우려 정도 등) 및 감사 운영여건(감사청구, 인력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기능 중 관광진흥 시책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의 2개 분야와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분야를 감사분야로 선정하였다.

감사분야별 감사중점으로는 [표 5]와 같이 관광진흥 시책 분야에서는 숙박 시설 공급 및 관리 대책의 적정성, 방한 외래관광객(이하 “외래관광객”이라 한다)의 지방 방문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지원 시책의 적정성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관리의 적정성을 선정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분야에서는 대중형골프장과 공공체육시설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의 적정성을 선정하였으며, 기관운영 분야에서는 예산집행 및 복무관리의 적정성과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을 선정하였다.

[표 5] 감사분야별 감사중점

분야	감사중점
관광진흥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수립한 외래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에 맞는 제도·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는지?<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숙박시설 공급 및 관리 대책의 적정성②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지원 시책의 적정성③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관리의 적정성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 활성화에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는지?<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대중형골프장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의 적정성② 특정 동호회의 독점 이용 문제가 제기되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책의 적정성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집행, 복무관리 등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마련·운영되고 있는지?<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예산집행 및 복무관리의 적정성②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III. 감사결과

제1절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표 6]과 같이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6]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합계		징계 (인원)	법령상 개선	주의	통보	고발 (인원)
건수	인원					
20	2	2 (2)	1	3	13	1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진흥 시책 분야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래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인프라인 숙박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숙박 시설 수급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여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호스텔을 건립할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도 이를 방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숙박시설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숙박시설 공급 계획을,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조건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2.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분야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2년 대중형골프장 지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정 해제(취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지정요건인 이용료 상한 기준을 초과한 골프장에 대해 지정 해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없어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공테니스장을 점검한 결과 특정 동호회의 독점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원칙 및 예약현황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3.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관서운영경비 지출담당자가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관서운영경비 1억 1천만여 원을 횡령하였고, 소속기관 과장은 겸직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대가로 63백만여 원을 수령하고 이 과정에서 3차례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며, 본부는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1,110억여 원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서운영경비를 횡령하거나 영리업무를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고, 횡령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며,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받도록 통보하였다.

제2절 관광진흥 시책 분야

1. 실태 및 세부 감사중점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2024. 6. 19.~7. 16.)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및 관광특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외래관광객의 방문 특성 및 행태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관광진흥 시책 분야의 실태를 확인하고 세부 감사중점을 도출하였다.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방향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12. 30. 수립한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2031년)에서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2031년까지 관광객 수 4.7억 명 등을 계획 지표²⁾로 제시하였고, 2022. 12. 12. 수립한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라는 비전 아래 2027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 관광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1인당 국내 여행 일수 15일 등을 목표³⁾로 제시하였다.

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현황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1973년부터 설치·운용되었고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호텔 등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개보수·운영자금 용자 등 관광부문 정책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2)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편리한 관광편의 기반 확충,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입체적 관광연계 협력 강화, 혁신적 제도 관리 기반 마련 등 6대 추진전략을 마련

3)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실현의 4대 추진전략을 마련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은 1조 7,292억 원이고, 8개 단위사업과 29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되는 사업예산은 1조 574억 원⁴⁾이며, 2019~2023년 관광사업체 응자지원 규모는 [표 7]과 같이 연간 4,325억~6,4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표 7]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응자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설 자금	업체 수	287	188	237	269
	금액	333,998	223,466	228,127	272,076
운영 자금	업체 수	524	2,779	1,064	1,192
	금액	98,525	416,534	213,579	200,540
합계	업체 수	811	2,967	1,301	1,461
	금액	432,523	640,000	441,706	472,61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 외래관광객 유치의 중요성

외래관광객 유치는 관광객들이 여행경비로 지출한 외화를 국내로 유입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외래관광객이 지출한 207억 달러는 수출액으로 볼 때 반도체(939억 달러)·자동차(430억 달러)·석유제품(407억 달러)·자동차부품(225억 달러) 다음으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또한, 외래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여행업·호텔 등 관련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으며, 외래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관광지·관광시설·관광숙박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하므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한편, 외래관광객이 관광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는 더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한다.

4) 관광사업체 응자지원이 4,59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2,137억 원,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1,097억 원, 국내관광 육성지원 993억 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644억 원, 관광인프라 조성 507억 원,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389억 원,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215억 원 순임

라. 외래관광객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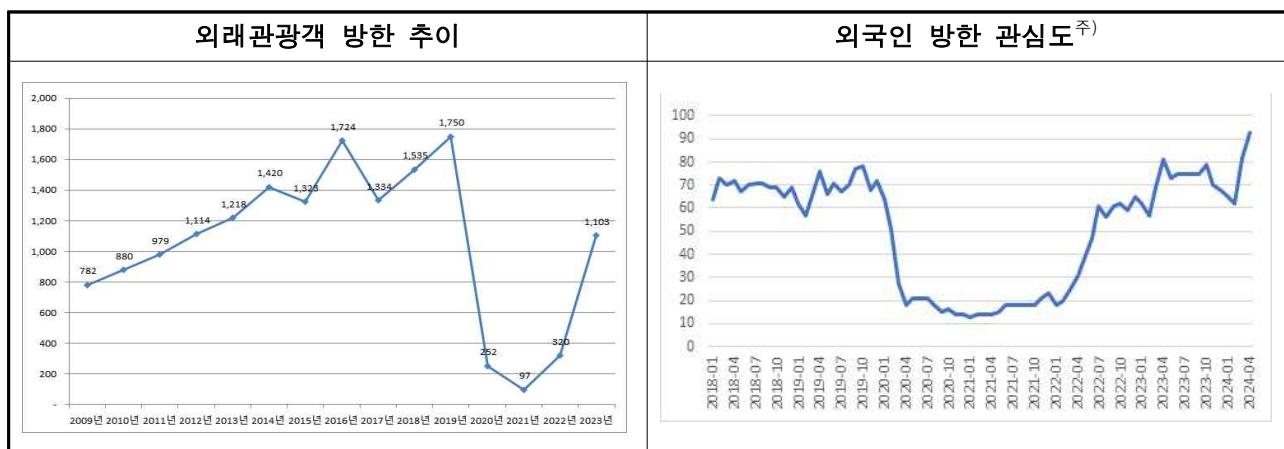
1) 코로나19 이후 외래관광객은 회복되고 있는 추세

2009년 이후 방한 외국인관광객 추이를 보면, [도표 1]과 같이 2009년 782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750만 명(세계 26위)에 이르렀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줄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추세에 있고, 2024년 1~5월 외래관광객은 628만 명으로 2019년 1~5월 대비 90.3%에 이르는 등 외래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방한 관심도 추이를 보면, 2024년 들어 2019년의 방한 관심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외래관광객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1] 외래관광객 방한 추이 및 관심도

(단위: 만 명, %)



주: Google에서 [Incheon Airport]를 검색한 빈도를 수치화한 것(외래관광객 수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에 공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

2) 외래관광객의 특성 및 행태

가) 방한 국가: 다변화

2023년 방한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관광객의 비중은 2019년 34.4%보다 16.1%p 낮아진 18.3%인 반면, 미국(5.9%→9.8%) · 일본(18.7%→21.0%) · 싱가포

르(1.4%→3.2%) · 대만(7.2%→8.7%) 등의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은 약화하고 방한 국가가 다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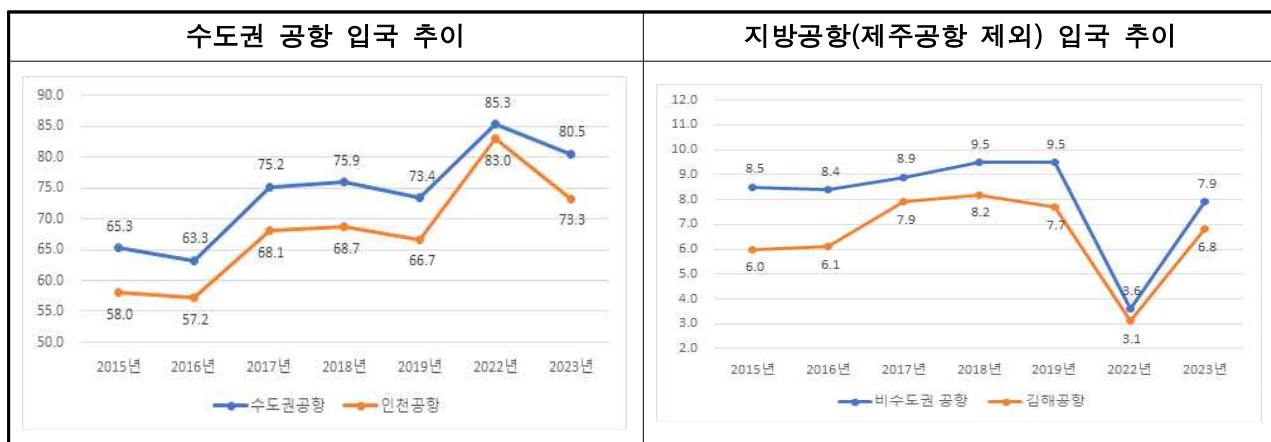
나) 입국 장소: 수도권공항(인천 · 김포공항) 중심

2023년 외래관광객의 93.2%가 공항으로, 6.8%가 항구로 입국하였고, 외래관광객이 수도권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비율은 2015년 65.3%에 비해 15.2%p 높은 80.5%에 이르는 등 [도표 2]와 같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15~2023년 지방공항(제주공항 제외)을 통해 입국한 외래관광객은 3.6~9.5% 수준으로, 이 중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비율이 3.1~8.2%에 달하는 등 주로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공항은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도표 2] 외래관광객 입국 장소 추이

(단위: %)



주: 코로나19 시기에 해당하는 2020년과 2021년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조사하는 “외래관광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다) 방문지역: 서울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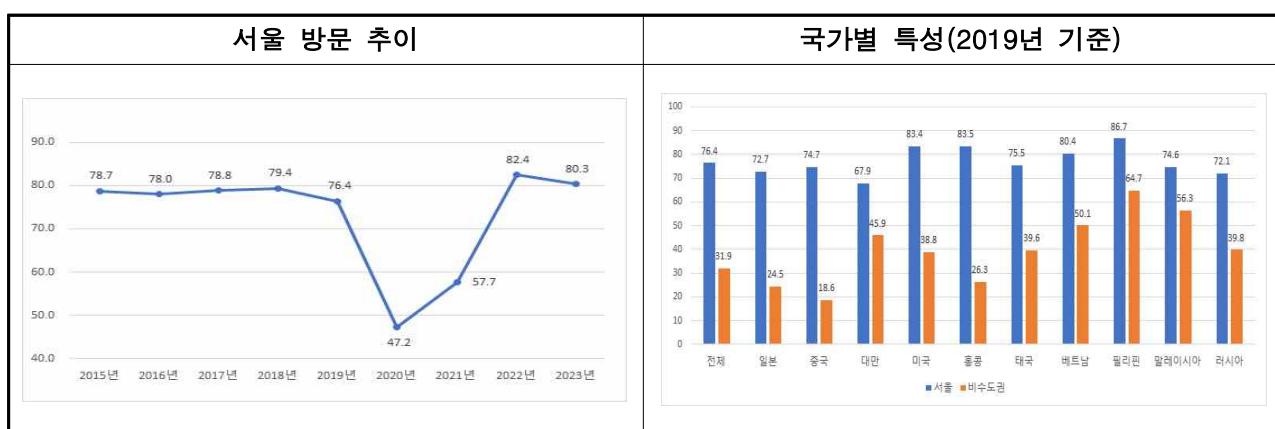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도표 3]과 같이 외래관광객의 76.4~82.4%가 서울을 1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외래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2019년을 기준으로 상위 10개국

외래관광객(전체 외래관광객의 83.8%)의 방문지역 특성을 보면, 서울 방문 비율이 67.9%(대만)~86.7%(필리핀)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서울 선호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2019년 외래관광객의 비수도권(제주 제외) 방문비율을 보면, 일본·중국·홍콩의 경우 18.6%(중국)~26.3%(홍콩)인 반면, 대만·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의 경우 45.9%(대만)~64.7%(필리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국가별로 비수도권 방문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표 3] 외래관광객 방문지역 특성



주: 여러 지역을 방문할 수 있으므로 서울 방문비율과 비수도권 방문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자료: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조사하는 “외래관광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라) 숙박시설 이용: 호텔 선호

숙박시설은 여행객들이 여행 일정을 정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외래관광객(개별여행 및 에어텔 형태)의 75.7%가 여행 전에 숙박시설을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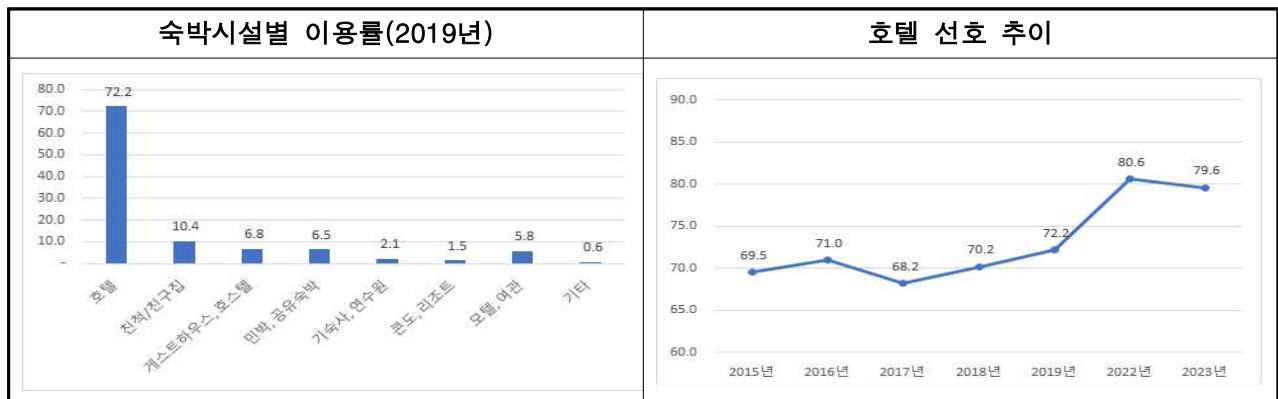
외래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2019년을 기준으로 외래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 행태를 보면, [도표 4]와 같이 외래관광객의 72.2%는 호텔에 숙박하였고 그 다음으로 친척·친구집 10.4%, 게스트하우스·호스텔 6.8%, 민박·공유숙박 6.5%,

모텔·여관 5.8%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2023년 호텔 이용률은 2019년 72.2%보다 7.4%p 높아진 79.6%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텔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도표 4] 외래관광객 숙박시설 이용 특성

(단위: %)



주: 코로나19 시기에 해당하는 2020년과 2021년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관광객이 여러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숙박시설 이용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자료: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조사하는 “외래관광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마. 시사점

외래관광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방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외래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래관광객이 늘어날수록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의 혼잡도는 증가하게 되고, 이는 관광객들의 불편이나 불만족으로 이어져 국가 이미지나 지속적인 방한 수요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입국·숙박·교통 등 관광인프라가 관광 관련 국가계획에 천명한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3천만 명)에 부합하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실태분석 결과에서 외래관광객의 75% 이상이 숙박시설을 사전에 예약하고 방한한다는 점, 외래관광객의 80% 정도가 호텔을 숙박시설로 이용

하고 호텔 선호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외래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2019년의 경우 모텔·여관 등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숙박시설 이용률이 5.8%에 달한 점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호텔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품질·가격이 적정한 숙박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여 호텔 의존도를 낮추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래관광객의 80% 이상이 수도권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비수도권 공항 이용비율은 낮은 점, 외래관광객의 80% 이상이 서울을 방문하는 등 서울 집중도가 높은 점, 대만·동남아시아 국가(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등 지방 방문 비중이 높은 국가도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집중 경향을 낮추고 비수도권 지역 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 세부 감사중점

외래관광객 유치는 외화 획득 및 관광산업 성장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국가 이미지 향상이라는 문화적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정책 수립 시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산업 지원, 관광인프라 조성 등의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 및 관광 실태에 맞게 숙박시설 등 인프라 수급 대책과 출입국 관련 제도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2. 문제점

가. 관광 숙박계획 수립 미흡 및 기금 지원기준 개선 필요

1) 업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을 위해 2022년 12월 「관광기본법」 제3조 등에 따라 2027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 명⁵⁾ 유치⁶⁾를 정책목표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관광기본법」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지침) 등에 따라 관광 분야의 핵심 인프라인 숙박시설에 대한 수급분석,⁷⁾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⁸⁾ 관광진흥개발기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등에 따라 관광개발과 지역관광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을 부제로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였고, 그 전인 2020. 9. 4. 시 · 도지사에게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안)」(2022~2026년)을 시달하는 등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게 하였다.

5) 외래관광객 수가 가장 많았던 2019년 1,750만 명보다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에 해당

6)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산업이 정상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광 불거리를 늘리고 교통 · 쇼핑 등 관광객 편의를 높이는 정책과제 등을 포함

7)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시설을 관광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2018년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매년 숙박시설 수급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음

8)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기본법」 제2조에 따라 1974년부터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 매년 “외래관광객 및 국민여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1974년 외래관광객 여론조사를 최초 실시(1년 주기)한 후 1998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20년부터 외래관광객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976년부터 국민의 여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여행실태조사(반기별→매년)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부터 국민여행조사(2018~2022[월별→매년], 분석편, 통계편)로 변경하였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등에 따라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등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여 외래관광객의 수요에 필요한 숙박시설의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2) 부실한 숙박시설 수급분석을 근거로 국가 관광계획 수립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적정한 가격 · 품질을 갖춘 숙박시설에 대한 수급관리의 중요성]

“2023년 외래관광객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숙박시설(34.3%)은 교통(45.6%), 치안(41.3%) 다음으로 외래관광객들이 방한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인프라이고, 외래관광객(개별여행 및 에어텔 형태)이 방한 전에 개별 예약⁹⁾하는 항목도 숙박시설 비중이 75.7%로 가장 높으며, 1인당 지출경비 중에는 숙박비(439.1달러)가 쇼핑비(453.3달러)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한 가격 · 품질을 갖춘 숙박시설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리해야 할 핵심 인프라¹⁰⁾에 해당한다.

한편,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수요의 변동 폭이 매우 크고 객실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격의 상승 폭이 커지며, 초기 시설 비용이 큰데 그 중 고정비(인건비 등) 지출이 많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¹¹⁾되고, 엄격한 입지 규제¹²⁾ 등의 시장진입 장벽과 세계적 경기침체, 전염병 등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도 있는 등 단기간에 확충하거나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¹³⁾ 특성이 있다.

9) 이 외 국내항공권 9.5%, 철도 9.3%으로 나타남

10) 관광숙박시장 수급동향 및 향후 전망(2016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1)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중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자에 대해서만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허용하고 있어 호텔 등 다른 숙박시설은 분양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 불가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등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은 허용)이 금지됨

13) 서울특별시 숙박시설 객실수급 변화양상 및 전망 분석(송기욱 · 남진, 2018, 부동산학연구, 제24집 제2호)

이에 따라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품질을 갖춘 숙박시설의 공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숙박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최대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숙박시설 수급관리를 위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의 역할]

「관광진흥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49조 제2항, 제51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의2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5년마다 권역의 관광 여건과 동향,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권역계획을 수립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지침을 시달하고, 권역계획을 조정하며, 권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분야의 최상위 법정·행정계획이자 미래지향적인 종합계획으로서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표 8]과 같이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숙박시설 공급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그러한 대책 중에 포함되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2012년 1월 제정 후 2016년까지 시행, 이하 “관광숙박시설법”이라 한다)의 제정·시행에 따라 관광호텔이 2013년 896개(8만 8,958실)에서 2018년 1,883개(15만 3,508실)로 110.2%(객실 72.6%)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다.

[표 8]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숙박시설 공급대책

관광개발기본계획	주요 내용
2001년 제2차 (2002~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외래관광객 유치목표 1,050만 명을 달성하는 데 숙박시설 부족이 예상 ▪ 관광숙박단지 조성, 관광호텔 확충, 중저가 숙박시설 지정 및 육성 등 숙박시설 육성대책, 관광호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관광숙박업 지원법」 제정 등 숙박 인프라 공급대책 포함
2011년 제3차 (2012~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2016년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방한 여행만족도를 개선할 필요성 제기 ▪ 주요관광거점에 숙박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관광호텔 확충 및 제도개선 방안, 숙박시설 부족 문제 해결 및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대안형 숙박시설·전통 숙박시설의 확충방안, 의료기관 내의 숙박시설 신·증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함 ▪ ① 호텔 신축 시 용적률 완화, ② 호텔 신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③ 호텔시설로 공유지 대부 시 대부분 인하, ④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등 호텔 부대시설 허용범위 확대, ⑤ 호텔 부지에 국·공유지 포함 시 국·공유지 확보 조건부로 사업계획 승인 등 호텔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완화 실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2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세부계획인 제7차 권역계획의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시달하고 계획 시안을 조정함으로써 권역계획에 해당 권역의 숙박시설 수급분석과 중장기 대책이 포함되게 하였고, 양 계획이 상호 연계·협력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비전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의 의견과 권역계획의 방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지사에게 숙박시설 수급분석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할 때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숙박시설 수급분석 대상 등은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수급분석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가정·기준 등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시·도에서 숙박시설 객실점유율을 과다하게 적용하는 등으로 분석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등 시·도 권역계획을 충실히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계획인 제7차 권역계획과 관련하여 2020. 9. 4. 전국 16개¹⁴⁾ 시 · 도지사에게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안)”(2022~2026년)을 시달한 후 2021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권역계획 시안을 조정¹⁵⁾¹⁶⁾하는 과정에서 해당 권역별 수급분석과 중장기 대책을 포함한 권역계획을 수립¹⁷⁾¹⁸⁾하도록 하였으나, 숙박시설 수급분석에 관한 가정 · 기준 등 분석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급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이를 검증하지도 않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시설을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판단하여 2018년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매년 수급분석을 하고 있는데, 2023년 1월에 공개한 “2022 숙박시설 수급분석”¹⁹⁾(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이라 한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 · 도에 동일한 분석방법(객실점유율 70% 등)이 적용되었다.

-
- 14) 제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므로 수립대상에서 제외
 - 15) 2021년 5월경 제1차 시안을 제출받아 조정 및 연구협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경 최종 조정의견을 전달하였으며, 각 시 ·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의견을 근거로 2021년 12월 권역계획을 수립
 - 16) “권역계획 조정지원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권역계획 조정 관련 사항을 위임받아 “권역계획 조정위원회”(민간전문가 28명)를 구성 · 운영. 지원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위원회의 업무 등을 지원하고, 시 · 도 권역계획 수립반(시 · 도 담당자 및 권역계획 수립수행기관, 권역계획 수립주체)과 권역계획 조정에 대한 협의 진행
 - 17) 권역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권역계획을 작성하되, 관광객의 방문시기 · 주요 활동 등 수요적인 측면과 관광자원 및 시설현황 등 공급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분석을 실시하고, 관광수요 제시 결과와 비교하여 관광공급의 과잉 · 부족 등과 목표 수요와 공급의 변화추세 분석결과 등을 제시하며 해당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적정한 공급계획을 제시하도록 함
 - 18)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검토 및 조정 방안”(2021년 12월)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계획을 조정하면서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적정한 공급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향후 해당 권역의 숙박시설 수급분석에 따라 신규 및 기존 관광개발사업 조정의 근거로 이용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일 단위로 추정한 국내 및 외래관광객 수요를 숙박시설 수급분석에 활용하여 중장기 수급분석 결과를 제시하도록 함
 - 19) 포스트 코로나의 회복과 2022년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광산업 정책 전반의 변화 전망 등 정책환경을 고려한 숙박정책 방향을 검토할 목적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연구 범위는 전국(기본분석)과 6개 권역(서울 · 부산 · 인천 · 경기 · 강원 · 제주)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를 예측

<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의 숙박시설 수급 분석방법 >

- 호텔 수요=외래관광객 숙박 수요+내국인 숙박 수요
 - 호텔 수요 결정요인: 방한 외래관광객 수, 내국인 국내 숙박 여행일수, 지역 내 수요
 - 분석모형: “호텔업 운영현황”을 통해 시·도 단위 패널데이터¹⁾를 구축하여 고정효과 모형²⁾으로 분석
 - 회귀분석과 시나리오 분석³⁾(낙관·중립·비관)을 결합하여 호텔 객실 수요를 전망
 - 객실 증가율: 기본모형1(2017~2021년 기간 16개 시·도별 연평균 객실 증가율)과 추가모형[시계열모형 AR(1)⁴⁾을 활용]
 - 호텔 객실점유율[(판매된 객실 수/총 객실 수)×100] 가정: 70%
 - 수급분석=공급량-수요량

주: 1. 패널데이터(panel data)는 종단자료라고도 하고, 여러 개체들을 복수의 시간에 걸쳐 추적하여 얻는 데이터
2.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은 각 개체의 시간 불변적 특성이 설명변수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모형
3. 2027년 외래관광객: 낙관모형 2,992만 명, 중립모형 2,151만 명, 비관모형 898만 명
4. 어떤 변수에 대해 1기 전 수치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모형(추세가 안정적일 때 적합)
5. 객실점유율은 일정기간 숙박시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객실 공급량이 포화상태인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객실점유율이 높으면 추가 공급 필요성이 제기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숙박시설 수급분석” 자료 재구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숙박시설 수급분석” 자료 재구성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16개 시·도(권역계획을 미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가 제7차 권역계획에서 실시한 숙박시설 수급분석의 객실 공급량 분석방법을 확인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등과 비교·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부 시·도가 숙박시설 수급분석을 부실하게 수행

각 시·도가 숙박시설 수급분석을 할 때에는 분석 시점의 숙박시설 객실 수, 객실점유율(지역별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정), 추가 공급이 가능한 객실 수 증가율 등의 분석가정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객실 공급량을 추정하고, 그 가정 등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16개 시·도가 제7차 권역계획에서 실시한 숙박시설 수급분석 방법 등을 검토한 결과, [표 9]와 같이 인천광역시는 숙박시설의 수급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대전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경상남도·충청북도는 설정한 객실점유율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충청남도는 분석에 활용된 통계의 기준시점·객실점유율·추가 공급이 가

능한 객실 수 규모를 산정한 근거 등 수급분석에 적용한 분석가정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9] 제7차 권역계획의 숙박시설 수급분석¹⁾ 중 객실공급 관련

구분	분석방법	구분	분석방법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10년간 객실 수 평균 증가율을 2019년 객실 수에 곱하고 객실점유율 100% 적용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기준 객실 수 적용(객실점유율 가정 미표시) 2022~2026년 공급량을 제시했으나 근거는 불분명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기준 객실 수와 객실점유율 60.3%, 평균 투숙인원을 적용하여 연간 수용인원을 추정한 후 2022~2026년 수요와 비교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기준 객실 수(객실점유율 가정 미표시)와 평균 투숙인원을 적용하여 연간 수용인원을 추정하였으나 수급분석은 미실시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시설 공급분석을 위한 관련 통계 기준시점이나 객실점유율 등 공급 가능 규모 산출정보는 미제공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2019년 객실 수(최소, 평균)를 기준으로 분석 향후 공급 증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나 근거는 불분명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시설 공급분석을 위한 관련 통계 기준시점이나 객실점유율 등 공급 가능 규모 산출정보 미제공 1안(1~4성 관광호텔), 2안(1~4성 관광호텔, 일반호텔, 호스텔), 3안(1~4성 관광호텔, 일반호텔, 호스텔, 여관업)의 3개 안으로 구분하여 분석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기준 객실 수와 객실점유율 80%를 적용하여 연간 수용인원을 추정한 후 2022~2031년 수요와 비교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기준 객실 수(객실점유율 가정 미표시)와 평균 투숙인원을 적용하여 연간 수용인원을 추정한 후 2026년 수요와 비교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기준 숙박시설별 평균 투숙인원, 객실점유율(최대 62%)을 토대로 연간 수용인원은 추정하였으나 수급분석은 미실시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기준 객실 수와 시설별 객실점유율을 54.5~70.4% 적용 2026년까지 추가 공급이 가능한 객실 수는 제시했으나 근거는 불분명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기준 객실 수(객실점유율 가정 미표시)와 평균 투숙인원을 적용하여 연간 수용인원을 추정한 후 2026년 수요와 비교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실점유율 80%를 적용하여 2026년에 필요한 객실 수만 산정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기준 객실 수(객실점유율 가정 미표시)와 과거 10년간 객실 수 평균 증가율을 적용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기준 객실 수(객실점유율 가정 미표시)와 평균 투숙인원을 적용하여 연간 수용인원을 추정한 후 2026년 수요와 비교 		

주: 1. 인천광역시는 관광특구, 테마파크 사업 등 다양한 관광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관광 공급능력을 추정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공급 및 수급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2.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업 중에 관광호텔업, 호스텔업을 제외한 가족호텔 등 호텔 5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서울특별시는 객실점유율을 100%로 가정하였는데, 한국호텔업협회가 발표한 2010~2023년 호텔업 객실 점유율 평균이 60.25%²⁰⁾인 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²¹⁾²²⁾을 종합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시·도가 수립한 권역계획의 내용으로는 숙박시설 수급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합리적 가정에서 도출된 결과인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²³⁾의 수급분석 결과를 제7차 권역계획과 비교한 결과, [표 10]과 같이 부산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숙박수요의 중요 변수인 “외래관광객 전망”과 관련하여 권역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간에 큰 차이 없이 예측하였는데 숙박수요 대비 공급량에 대해 각 권역계획에서는 계획연도(2026년)에 숙박시설 부족을 예상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에서는 같은 시기에 초과 공급 상태라는 정반대의 예측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외래관광객 전망을 권역계획에서 1,912만 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1,510만 명 대비 초과 예측하였음에도 숙박수요 대비 공급량에 대해 권역계획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은 해가 지날수록 여유 객실이 감소하다가 2027년부터는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 한국호텔업협회가 발표한 전국 평균 객실 이용률은 2010년 63.94%, 2011년 65.15%, 2012년 64.65%, 2013년 62.85%, 2014년 63.52%, 2015년 59.75%, 2016년 64.15%, 2017년 60.71%, 2018년 62.44%, 2019년 67.05%, 2020년 39.1%, 2021년 45.35%, 2022년 58.79%, 2023년 66.03%

21) 호텔업 관계자 의견에 대한 보도자료(호텔아비아, AC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금융권 연구소 등이 숙박시설 수급분석에 활용하는 변수가 모두 다르며, 객실점유율의 경우 약 65%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정하고 80%는 거의 만실(예약변경 대비, 유지보수, 객실 점검 등을 위해 통상 일정 객실은 공실로 유지되고, 스위트룸 등은 남아있더라도 일반 객실 유형은 만실)이므로 8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다 가정이라는 의견 제시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호텔업 객실 점유율은 72.6%

23)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권역을 분석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에 따라 권역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고, 인천광역시는 제7차 권역계획에서 숙박시설 수급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

[표 10] 숙박시설 수급분석 결과 비교: 제7차 권역계획¹⁾과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구분	제7차 권역계획(2022~2026년)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점유율 가정: 100%²⁾ ▪ 외래관광객 전망: 지속 증가, 2026년 1,912만 명 ▪ 2026년 수급분석 결과: 16,526실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객실 수가 1만실 이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0,771실, 2023년 15,080실, 2024년 13,316실, 2025년 17,950실, 2026년 16,526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점유율 가정: 70% ▪ 외래관광객 전망: 지속 증가, 2026년 1,510만 명 ▪ 2026년 수급분석 결과: 513실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초과객실 수 규모가 감소하다가 2027년부터 객실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점유율 가정: 85%³⁾ ▪ 외래관광객 전망: 지속 증가, 2026년 253만 명 ▪ 2026년 수급분석 결과: 16,631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부족객실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점유율 가정: 70% ▪ 외래관광객 전망: 지속 증가, 2026년 280만 명 ▪ 2026년 수급분석 결과: 2,617실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초과객실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점유율 가정: 관련 정보를 제시하지 않음 ▪ 외래관광객 전망: 지속 증가, 2026년 281만 명 ▪ 2026년 수급분석 결과: 13,942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추이는 제시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점유율 가정: 70% ▪ 외래관광객 전망: 지속 증가, 2026년 290만 명 ▪ 2026년 4,939실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초과객실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점유율 가정: 관련 정보를 제시하지 않음 ▪ 외래관광객 전망: 지속 증가, 2026년 148만 명 ▪ 2026년 수급분석 결과: 3,101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부족객실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점유율 가정: 70% ▪ 외래관광객 전망: 지속 증가, 2026년 150만 명 ▪ 2026년 수급분석 결과: 1,070실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객실 수가 2026년까지 감소하다가 2027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

주: 1.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을 대상으로 공급량을 추산한 반면, 권역계획은 [표 9]와 같이 일반·생활 숙박업 등 다양한 숙박시설 종류를 포함하여 공급량을 추산하였으므로 공급량이 더 많은데도 객실 부족을 예상
 2. 객실점유율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70%)보다 30%p 높게 가정하여 수요 대비 객실 수 초과를 예상
 3. 객실점유율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70%)보다 15%p 높게 가정하였는데, 그럼에도 수요 대비 객실 수 부족을 예상한 것은 2026년까지 추가 공급되는 객실이 없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2) 외래관광의 핵심인 서울특별시는 분석오류로 숙박시설을 과다 예측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의 80%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등 관광집중도가 높은 점, 외래관광객의 70% 이상은 호텔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에서의 호텔 인프라 관리는 우리나라 관광숙박시설 관련 정책 수립의 핵심 사항이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제7차 권역계획을 수립²⁴⁾하면서 과거(2011~2019년)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방문 외래관광객이 2026년 19,116천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아래와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숙박시설 수급분석을 하였다.

24) 실무 계획수립기관은 서울특별시 출연 지방공공기관인 서울연구원(용역비 96백만 원)

< 서울특별시 숙박시설 수급 분석방법 >

- 관광호텔 객실 수요=외래관광객의 1일 관광호텔 객실 수요+국민 국내관광 1일 관광호텔 객실 수요
 - 외래관광객 1일 관광호텔 객실 수요=(외래관광객 수×평균체재일 수×호텔이용률)÷(365일×객실당 투숙 인원)
 - 국민 국내관광 1일 관광호텔 객실 수요=(지역별 내국인 숙박여행 총량×호텔이용률)÷(365일×객실당 투숙 인원)
- 관광호텔 객실 공급: 현재 총 객실 수+신규 발생 객실 수[과거 10년간(2010~2019년) 매년 관광호텔 객실 수의 증가율을 산출하고 평균값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되, 관광숙박시설법 시행(2012~2016년)의 영향을 반영하여 2012~2018년의 증가분은 분석에서 제외]
- 수급분석=공급량-수요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항 나) (1)”과 같이 서울특별시는 제7차 권역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과 달리 외래관광객이 늘어나더라도 1만 실 이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서울특별시가 제7차 권역계획 수립 시 수급분석에 적용한 분석가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우선 서울특별시는 향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가 공급될 객실 수(전년도 객실 수×연평균 객실 수 증가율)를 예측하기 위해 객실 수 증가율을 산정하면서 [표 11]과 같이 2010년부터 2019년(2012~2017년 증가율은 제외)까지의 ‘객실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고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객실 수 증가율이 너무 낮게 나타난다는 사유로 임의로 ‘호텔 수’ 증가율로 변경 적용하여 추가 공급될 객실 수를 예측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객실 수 증가율은 약 1%인데도 호텔 수 증가율인 4.79%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서울특별시 관광호텔 객실공급 현황(2010~2019년)¹⁾

(단위: 개, 실,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¹⁾
호텔 수	139	146	161	195	233	291	348	399	440	460	-
호텔 수 증가율	-	5.0	10.3	21.1	19.5	24.9	19.6	14.7	10.3	4.5	4.79 ²⁾
객실 수	23,942	23,703	27,156	30,544	34,551	41,640	46,947	53,454	58,248	60,044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¹⁾
객실 수 증가율	-	-1.0	14.6	12.5	13.1	20.5	12.7	13.9	9.0	3.1	1.02 ³⁾

주: 1. 서울특별시 권역계획의 분석가정을 적용하여 관광숙박시설법의 영향을 받아 객실 수가 증가한 2012~2017년 증가율은 제외(2010~2011년, 2018~2019년의 증가율 등 2개를 대상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

$$2. \text{호텔 수 연평균 증가율: } \sqrt{(146 \div 139) \times (460 \div 440)} = 1.0479$$

$$3. \text{객실 수 연평균 증가율: } \sqrt{(23,703 \div 23,942) \times (60,044 \div 58,248)} = 1.01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서울특별시²⁵⁾는 [표 12]와 같이 객실점유율을 100%로 가정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에서 적용한 객실점유율은 70%인 점, 한국호텔업협회가 발표한 2010~2023년 호텔업 객실 점유율 평균이 60.25%²⁶⁾인 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²⁷⁾²⁸⁾을 종합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서울특별시 숙박시설 수급 분석 전망(2022~2026년)

(단위: 만 명, 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관광 수요	국내 숙박관광객 수	661.6	694.5	727.5	760.4	793.3
	외래관광객 수	1,518.8	1,640.1	1,791.1	1,760.6	1,911.6
	계	2,180.4	2,334.6	2,518.6	2,521	2,704.9
전체 숙박수요(A)		58,321	57,321	62,554	61,554	66,786
객실 점유율 100%	공급가능 규모(B) (객실 증가율 4.79%)	69,092	72,402	75,870	79,504	83,312
	과부족(B-A)	10,771	15,081	13,316	17,950	16,526
	공급가능 규모(C) (객실 증가율 1.02%)	61,900	62,532	63,169	63,814	64,465
	과부족(C-A)	3,579	5,211	615	2,260	-2,321
객실 점유율 70%	공급가능 규모(D) (객실 증가율 1.02%)	43,330	43,772	44,219	44,670	45,125
	과부족(D-A)	-14,991	-13,549	-18,335	-16,884	-21,661

자료: 서울특별시 권역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22 숙박시설 수급분석 연구 자료 재구성

25) 수급분석을 실시하던 시기(2020년 9월~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숙박이 과잉공급된 상황이었는데 평균 객실 점유율(72.6%)을 적용할 경우 객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자 객실 점유율을 100%로 적용

26) 한국호텔업협회가 발표한 전국 평균 객실 이용률은 2010년 63.94%, 2011년 65.15%, 2012년 64.65%, 2013년 62.85%, 2014년 63.52%, 2015년 59.75%, 2016년 64.15%, 2017년 60.71%, 2018년 62.44%, 2019년 67.05%, 2020년 39.1%, 2021년 45.35%, 2022년 58.79%, 2023년 66.03%

27) 호텔업 관계자 의견에 대한 보도자료(호텔아비아, AC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금융권 연구소 등이 숙박시설 수급분석에 활용하는 변수가 모두 다르며, 객실점유율의 경우 약 65%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정하고 80%는 거의 만실(예약변경 대비, 유지보수, 객실 점검 등을 위해 통상 일정 객실은 공실로 유지되고, 스위트룸 등은 남아있더라도 일반 객실 유형은 만실)이므로 8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다 가정이라는 의견 제시

28)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호텔업 객실 점유율은 72.6%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숙박시설 수급분석을 연평균 객실 수 증가율 1.02%와 객실점유율 70%로 적용하여 재산정한 결과, [표 12]와 같이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이 2019년 약 1,338만 명에서 2026년 약 1,911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관광호텔 객실 수가 부족 (13,549~21,661실)해질 것으로 전망²⁹⁾되었다.

더욱이 서울특별시에서 2018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 13]과 같이 2022년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의 객실 수가 2,572실로 2018~2019년에 승인된 객실 수 4,025실의 약 64% 수준에 그치는 등 향후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객실 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표 13] 서울특별시 관광숙박업^{주)} 사업계획 승인 객실 수 현황(2018~2024년 6월)

(단위: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객실	2,836	1,189	916	1,914	676	997	899
전년 대비 증감	-	-1,647	-273	998	-1,238	321	-98
증감률	-	-58.1%	-23%	109%	-64.7%	47.5%	-9.8%

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 수립지침(안)”에서 관광수요와 비교한 관광공급의 과부족 등을 제시하고 적정한 공급계획을 제시하도록 하였지만, 향후 숙박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서울특별시의 권역계획에는 적정한 숙박시설 공급계획이나 대책이 제대로 검토·포함되지 않았다.

29)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숙박시설 수급분석 연구에서도 객실 공급은 연평균 3.5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객실점유율 70%를 적용한 결과 2027년부터는 서울특별시의 관광호텔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시·도에 숙박시설 수급분석을 하도록만 하고 수급분석의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51조 제2항 등에 따라 권역계획을 종합·조정할 권한이 있는데도, 각 시·도에서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을 제각각으로 적용하여 제출한 권역계획의 시안을 제출받고 이를 조정하면서 [표 14]와 같이 관광수요의 예측방법이나 숙박시설 수급분석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만을 제시하였다. 각 시·도에 숙박시설 수급분석에 관한 가정·기준 등 분석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 14] 관광자원의 수요와 공급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조정의견

구분	조정내용	구분	조정내용
서울	▪ 추세 수요와 목표 수요 구분 제시 필요	경기	▪ 기준 수요 수정 필요 ▪ 숙박시설 수급분석 필요
부산	▪ 외래관광객과 국내관광객 수요추정의 일관성 확보 필요(시계열분석 vs 연평균증가율) ▪ 분석방법의 구체적인 제시	강원	▪ 모형별 시나리오 설명 필요 ▪ 제4차 관광개발계획 기준 수요와의 비교·검증 결과 차이가 나는 사유 작성
대구	▪ 제4차 관광개발계획 기준 수요와의 비교·검증결과 작성 ▪ 제4차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공급분석 시행 필요	충남	▪ 관광수요 예측값의 단위 확인 ▪ 제4차 관광개발계획상 기준 수요 대비 외래관광객은 과다 추정되고, 국내관광객은 과소 추정되어 부가 설명 필요
인천	▪ 과소추정 시정 필요	충북	▪ 기준 수요 수정 필요 ▪ 제4차 관광개발계획 시설유형을 따라 수정
광주	▪ 목표 수요 추가 필요 ▪ 유형에 따른 시설을 가감했을 경우, 특성을 맞춘 사유에 대한 설명 제시	전북	▪ 제4차 관광개발계획 추정방법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 ▪ 국내 관광수요 재추정 후 중장기 숙박시설 수급분석 제시 필요
대전	▪ 모형에 의한 추정치가 타당한지 추가 기술 ▪ 제시한 수요가 목표 수요인지 제시 ▪ 숙박시설 수급분석 필요	전남	▪ 외래관광객 수요 도출과정을 상세히 기술할 필요 ▪ 중장기 숙박시설 수급분석 필요
울산	▪ 추세 수요 대비 별도의 목표 수요를 제시	경북	▪ 숙박시설 수급분석 상세히 기술 필요
세종	▪ 내·외국인, 숙박 및 당일 누락 비교 불가 ▪ 수요 대비 공급 규모 과다	경남	▪ 연도별(2022~2026년) 내국인 관광수요와 외국인 관광수요를 제시할 필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특별시 권역계획을 조정하면서도 [표 15]와 같이 수요분석의 단위 조정 등을 요구하였을 뿐 분석오류가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수급분석이 제대로 됐다면 [표 12]와 같이 향후 숙박시설 부족이 예상된다는 결론이 도출됐어야 하나, “2)항 나) (2)”와 같이 숙박시설 수급분석 결과에 오류(숙박시설 공급량이 충분함)가 있는 권역계획이 그대로 수립되게 하였다.

[표 15] 서울특별시 숙박시설 수급분석 관련 조정의견 제시 내용

조정 일자	주요 조정내용
2021.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관광객과 국내관광객의 숙박수요에 대해 평균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일 단위로 전환하여 숙박시설 수급 분석에 활용하고, 숙박시설 수급분석을 실시할 필요
2021.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단위 수요예측치로의 전환과정을 추가하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의 공급 부분을 종합 분석, 기본구상과 신규 개발계획에 연계 활용을 권고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숙박시설에 대한 중장기 대책으로 숙박시설 관광 명소화나 이색 테마형 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숙박시설의 체험공간화 정책 등만 포함하였을 뿐 전국 단위의 숙박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수급분석을 하거나 숙박시설 수급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2023년 1월 공개)에서 서울특별시는 2027년부터 관광호텔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3년 10월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 검토자료³⁰⁾³¹⁾에서도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정책목표대로 2027년 외래관광객 3,000만 명이 유치될 경우 서울특별시의 숙박³²⁾ 인프라 공급은 32,500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정책목표상의 외래관광객 수요 대비 숙박시설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0)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수급대책 방안(안)”

31)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12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면서 2027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정책목표로 수립

32)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시설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대체숙박시설을 포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래관광객 유치목표·숙박수요 등에 부합하게 숙박시설의 수급을 관리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도에 숙박시설 수급분석에 관한 가정·기준 등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등 숙박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수급분석을 토대로 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3)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조건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조 등에 따라 [표 16]과 같이 「관광진흥법」상 관광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일반·생활숙박업 시설 등 관광시설에 대해 매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응자지원지침」을 제정·시달하는 등으로 기금을 대여하고 있다.

[표 16]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업종 및 지원 조건 등

자금 종류	지원 업종	지원 조건 및 유의사항	융자 규모 ^{주)}
운영자금	▪ 호텔업, 숙박업 등 33개 업종	▪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 ▪ 숙박업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	▪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30억 원 이내)
건설 (신축)	▪ 호텔업	▪ 준공 후 업종등록 ▪ 등급 결정 신청	▪ 해당 반기 소요자금의 100% 이내(150억 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70% 이내(75억 원 이내)
	▪ 관광펜션업, 야영장업 등 6개 업종	▪ 준공 후 업종등록, 허가	
	▪ 공공법인 등의 관광사업	-	
시설 자금 개보수	▪ 호텔업	▪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 ▪ 준공 후 업종등록 ▪ 등급 결정 신청	▪ 해당 반기 소요자금의 100% 이내(80억 원 이내) ▪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 신고 시 5억 원 이내
	▪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등 24개 업종	▪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식당업	▪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이거나 해당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 준공 후 업종지정	

자금 종류	지원 업종	지원 조건 및 유의사항	융자 규모 ^{주)}
시 설 자 금	▪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10개 업종	▪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반기 소요자금의 100% 이내(150억 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70% 이내(75억 원 이내)
	▪ 한옥체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등 7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 ▪ 숙박업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 ▪ 준공 후 업종등록, 지정 	

주: 2024년 상반기의 경우 총 융자 규모가 3,500억 원 이내

자료: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재구성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된 기금 4.7조 원에 대해 지원받은 업체(10,990개)의 업종과 집행액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8.9%(3.7조 원)가 숙박업에 지원되는 등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주로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외래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특별시의 관광호텔 확충의 어려움]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의 80%가 방문하는 지역이고, 외래관광객의 70% 이상은 호텔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므로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호텔 객실 수 관리는 중요하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관광호텔 객실 비중은 [표 17]과 같이 전국 관광호텔 객실(139,474실) 중 39.2%(54,673실)에 이르고 있으나, “2)항 나) (1)”과 같이 2027년부터는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신규 호텔을 공급할 유 휴부지도 적을 뿐만 아니라³³⁾ [표 13]과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객실 수도 감소하고 있어 관광호텔 객실 수의 추가적인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33) 서울특별시는 인구밀도(2022년 기준 인구밀도 15,973명/km², 2021년 산림면적 25.3%)가 높으며 산지 비중도 높아 부동산 개발 가능면적이 작고, 유 휴부지는 2023년 6월 기준 147개소이며 평균 면적도 40.43m²에 불과

[표 17] 서울특별시 호텔업 객실 수 구성 현황(2022년)

(단위: 개, %)

구분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1성급	미등록	합계
서울(A)	10,832	11,061	14,899	4,862	2,239	10,780	54,673
전국(B)	26,190	24,611	29,385	18,423	7,676	33,189	139,474
비율(=A÷B×100)	41.4	44.9	50.7	26.4	29.2	32.5	39.2

자료: 2023 숙박시설 수급분석(문화체육관광부) 재구성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 활용의 필요성]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일반·생활) 시설은 [표 18]과 같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숙박시설 객실의 68.1%³⁴⁾³⁵⁾에 이르고 있다.

[표 18] 숙박시설의 종류 및 현황(2018~2023년²⁾)

(단위: 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관광진흥법」상 호텔업(등급제)	167,749(16.4%)	168,550(19.4%)	169,026(16.1%)
「관광진흥법」상 호텔 외 숙박업 ¹⁾	157,415(15.4%)	149,326(17.1%)	166,534(15.8%)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소계	697,070(68.2%)	553,126(63.5%)
	일반숙박업	610,316(59.7%)	465,005(53.4%)
	생활숙박업	86,754(8.5%)	88,121(10.1%)
총계	1,022,234(100%)	871,002(100%)	1,050,661(100%)

주: 1. 연말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기준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를 위한 자료이므로 소관부처 관리 데이터 및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고 중복 가능성 있음
 2.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은 관광펜션업으로 등록한 후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통계에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9년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을 위한 기초연구”(한국관광공사, 2019년 12월)에 따르면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에 투숙한 이용객 중 67%가 해당 시설을 등급제 호텔업 시설로 인지³⁶⁾³⁷⁾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서울에서 높게 나타

34) 2023년 기준 (일반·생활숙박업 객실 수 715,101개÷숙박시설 전체 객실 수 1,050,661개)×100=68.1%

35) 서울특별시에서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생활숙박업 객실이 전체 숙박시설 객실의 43.3%(2021년 전체 숙박시설 객실 수 115,288실 중 49,961실)~68.8%(2012년 전체 숙박시설 객실 수 89,549실 중 61,636실)에 해당

36)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숙박유형 외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숙박유형(일반·생활숙박업 등)이 다수 존재하고, 이러한 제도적 분류와 실제 소비자가 인지하는 숙박유형 간에는 차이가 있음

나는 등 서울의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은 규모³⁸⁾, 위생, 서비스 수준 등을 갖추고 있어 외래관광객에게 관광호텔로 인식되는 등 선호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에 대한 품질관리 제도와 연계할 필요성]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에 대하여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년마다 위생 및 서비스 기준을 평가³⁹⁾하고 인센티브를 부여(The Best 우수숙박업소)하고 있고, 신고 및 위생서비스 평가의 주체(「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4조)인 지방자치단체 등도 등급결정 또는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 등 [표 19]와 같이 일반·생활숙박업에서도 우수 시설을 관리하는 품질관리 체계가 있다.

[표 19] 일반·생활 숙박업 시설 관련 등급결정·인증제도 현황(2023년)

(단위: 개)

연번	명칭	기관	인증·평가 대상	시행연도	업소 수
1	크린숙박업	광주광역시	▪ 일반/생활 숙박업	2008년	100
2	I-STAY	인천광역시	▪ 일반/생활 숙박업	2014년	117
3	더굿나잇	대구광역시	▪ 일반/생활 숙박업	2009년	18
4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	부평구	▪ 일반/생활 숙박업	2010년	32
5	The Best 우수숙박업소 ²⁾ (위생서비스 평가)	보건복지부	▪ 일반/생활 숙박업	2009년	24,715

주: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2년마다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에 대해 위생서비스기준을 평가(3등급: 녹색→황색→흰색)한 후 최우수업소(녹색등급) 중 10%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등 부여

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 품질관리 제도 현황 분석」(2023년 9월) 자료 재구성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광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2018. 3. 13.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을 신설하여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한국관광공사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면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공중위생관리법」상

37) 일반숙박업 시설에 투숙하고도 등급제 관광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호스텔업 등으로 인식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는 일반숙박업은 숙박유형으로서 경계가 모호함

38)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일반·생활 숙박업은 27,334개, 697,090실 규모이며 이 중 100실 이상의 대규모 시설도 327개(1.2%), 79,539실(11.4%)이 있음

39) 녹색, 황색, 흰색 등 3개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면서 상위 10%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의 일반·생활숙박업 업체⁴⁰⁾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품질인증을 부여하면서 6가지 필수사항⁴¹⁾과 시설·인력의 전문성·안전관리 등 3개 분야⁴²⁾를 종합 평가(일반·프리미어 등급)⁴³⁾하였는 등 기금을 지원받은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에 대해서는 외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을 갖추도록 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계획,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등을 수립·확정할 때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품질을 갖추어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에 대해 기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 생활숙박업 시설이 분양을 통해 주거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거용 생활숙박업 시설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숙박업에 집행된 관광진흥개

40) 2024년 6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 중인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은 247개

4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6 관련 [별표 17의5]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의 경우 “관광객 응대를 위한 안내 데스크가 개방형 구조일 것” 등 6가지 필수사항 (① 객실·침구·욕실·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② 관광객 응대를 위한 안내 데스크가 개방형 구조일 것, ③ 주차장에 가림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④ 시간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 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방송 제공을 제한할 것, ⑥ 요금표를 게시할 것)을 갖추었는지가 평가지표

42) ① 시설(건물의 외관·내부시설의 유지·관리,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서비스(매뉴얼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규정에 따른 서비스이행표준의 준수), ② 인력의 전문성(관광객 응대에 필요한 종사원의 전문성,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한 외국어 능력,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훈련 이수 결과), ③ 안전관리(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관리,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관리,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체계 구비)의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

43) 한국관광공사는 숙박업 등 관광사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1차(54개 지표, 400점 만점)·2차(25개 지표, 200점 만점) 현장평가 등을 통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일반 등급”을, 90점 이상인 경우 “프리미어 등급”을 부여하는데, 특히 프리미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을 갖춘 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하는 등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갖추어야 하고, 다양한 고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3종류 이상의 객실(싱글·더블·트윈 등)을 보유해야 하며, 조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관광숙박시설에 준하는 품질을 갖춤

발기금의 세부 업종과 집행액 등을 분석한 결과, [표 20]과 같이 숙박업에 집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총 3.74조 원 중에 79.4%(2.97조 원)가 「관광진흥법」상 등급제 호텔업에 집행되었고, 등급제 호텔업 외 숙박업 시설에 집행된 것은 20.6%(0.77조 원)에 불과하였는 등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등급제 호텔업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었다.

[표 20] 숙박업에 집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세부현황(2015~2023년)

(단위: 백만 원)

호텔업 (등급제)	호텔업(등급제) 외 숙박업					소계	총계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기타 법령상 숙박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체숙박업 (호스텔업 포함)	기타 ¹⁾	일반·생활숙박업 ²⁾ (한국관광 품질인증)	관광 특구 등				
2,969,036 (79.4%)	43,827 (1.2%)	505,904 (13.5%)	153,037 (4%)	51,244 (1.5%)	17,200 (0.5%)	771,112 (20.6%)	3,740,148 (100%)		

주: 1. 사업장 내 숙박시설이 존재하나 숙박시설로 분류하지 않은 야영장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2.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과 2016년 하반기 경주 지진으로 일반·생활숙박업에 지원된 금액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특히 등급제 호텔업 외 숙박업 시설 중에서도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외 숙박업 시설(호스텔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에 집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비중은 18.7%(0.7조 원)였으나,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일반·생활숙박업 시설⁴⁴⁾은 [표 18]과 같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숙박시설 객실 비중의 68.1%를 차지하는데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비중은 1.5%(51,244백만 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표 21]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에 지원된 관광진흥개발기금 136억 72백만 원 중 증축·증설 관련 지원은 1.3%(1억 76백만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보수 및 운영자금 용도로 98.7%(134억 97백만 원)가 지원되고 있다.

44) 일반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호텔(등급제) 외에 사업자들이 “호텔”이라는 명칭으로 영업하고 있는 일반호텔을 비롯하여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이고 생활숙박업은 취사가 가능한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설을 의미

[표 21] 일반·생활숙박업 시설 기금 지원 현황(2021~2023년)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합계	13,672	4,083	1,626	2,542	710	2,821	1,890
시설 자금	증축·증설	175	0	0	0	175	0
	개보수	3,127	2,251	76	600	0	200
운영자금	10,370	1,832	1,550	1,942	710	2,446	1,89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통해 지정한 호텔업과 일반·생활숙박업의 지원용도 및 신청자격 등을 비교한 결과, [표 22]와 같이 시설자금의 경우 호텔업에 대해서는 증축·증설뿐만 아니라 신축도 준공 후에 등급결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에 대해서는 증축·증설에 대해서만 대여하고 신축은 준공 후 품질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한국관광 품질인증(「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이 법령상 대여조건이라는 사유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표 22]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업종 및 지원 조건 등

구분	호텔업	일반·생활숙박업
지원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건설/개보수) ▪ 운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개보수) ▪ 운영자금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건축 허가,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 (개보수·운영자금)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융자조건 (회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준공 후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축 및 증설) 준공 후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자료: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재구성

그러나 일반·생활숙박업 시설과 호텔업 시설 모두 기금 대여조건(호텔업은 등급결정, 일반·생활숙박업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반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외래관광객 등 수요자 관점에서는 품질이 관리된 일반·생활숙박업 시설과 호텔업 시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에 신축을 위한 기금 지원을 제외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에 대해 기금 지원체계를 불리하게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2. 27.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인증규제 정비 방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신규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래관광객 유치목표·숙박수요 등에 부합하게 숙박시설을 공급하려면 “3)항 (가) (1) 및 (2)”와 같이 호텔업 시설의 확충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향후 일반·생활숙박업 시설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품질이 관리되는 일반숙박업 시설⁴⁵⁾에 대해 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결과 검토사항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문 “2)항”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제8차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할 때 권역계획 수립권자인 시·도지사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45) 현재 일부 생활숙박업 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일반숙박업 시설에 대해서만 기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숙박시설 수급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서울특별시의 제7차 권역계획과 같이 숙박시설 객실점유율을 과다 적용하는 등의 분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면서 감사결과를 수용하였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숙박시설 공급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10년 단위 숙박 수급전망 및 대책이 유효할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개발과 지역관광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관광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10년 후 바람직한 관광개발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국가적 장기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점, 정책목표를 수립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이행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7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려면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공급대책도 병행돼야 하는 점, 숙박업은 시설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집약적 산업이고 부동산 시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수급분석을 통해 합리적·객관적인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은 상호 연계하여 수립되므로 권역계획에 숙박시설 수급분석과 부족에 따른 적정한 공급대책을 포함하게 했으면 이를 토대로 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숙박공급 부족 시 국가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 등 법정계획 간의 일관성을 위해 타당한 점, 본문 “2)항 가) (2)”와 같이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년)과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년) 사례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목표 달성에 필요한 숙박 인프라 공급대책을 포함한 바 있는 점, 본문 “2)항 나) (1)”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도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특별시는 2027년부터 관광호텔 객실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적·장기적 관점의 숙박시설 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본문 “3)항”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관광진흥법」상의 숙박업 시설 외에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일반숙박업 시설 등 타 부처 소관의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성·타당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도개선 등이 선행돼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련부처 회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2)항”과 관련하여] 핵심 관광자원인 숙박시설에 관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목표·숙박수요 등에 부합하게 공급하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할 때 숙박시설 수급분석에 관한 가정·기준 등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등 숙박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수급분석을 토대로 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3) 항”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품질을 갖춘 일반숙박업 시설에 대해 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에 대한 실태 분석

1) 분석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관광기본법」 제7조 등에 따라 외래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관광진흥기본계획(「관광기본법」 제3조), 국가관광전략회의(「관광기본법」 제16조)⁴⁶⁾ 등을 통해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증⁴⁷⁾⁴⁸⁾을 발급받아야 하나, 출입국 관리업무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외래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표 23]과 같이 사증 발급 없이도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는 “관광·통과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10종을 운영하고 있다.

[표 23] 관광·통과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B-2)의 세부 유형(2024년 6월)

연번	세부 유형	체류기간	대상 국가	근거 규정
1	일반적 무사증	30일 또는 별도 기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45개국 (일반여권)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2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30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32개국 사증 소지자	
3	인천공항 일반환승객 무사증	3일	입국불허 23개국 제외 모든 국가	
4	승무원과 동승 가족 무사증	30일	제한 없음	

46)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원이자 간사임

47)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체류자격별 서류심사 등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져야 함. 전 세계 193개국 중 2024년 7월 현재(2022. 9. 22. 기준) 사증면제협정(B-1)에 따른 무사증 입국국가 67개국,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일반적 무사증 입국국가 45개국 등 112개국을 제외하면 관광·통과 등 목적의 입국에 사증이 필요한 국가는 81개국임

48)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단기체류자격” 등에 따라 관광·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외래관광객은 단기방문 사증(체류자격: C-3, 90일 이내 체류)을 발급받아야 함

연번	세부 유형	체류기간	대상 국가	근거 규정
5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30일	중국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6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15일	중국	
7	제주 무사증 ^{주)}	30일	입국불허 23개국 제외 모든 국가	
8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15일	중국	
9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15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양양국제공항 및 무안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통합지침」
10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15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음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이와 같이 “관광·통과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10종 중에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등 3종(이하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라 한다)은 [표 24]와 같이 관광가능 지역과 출국공항을 지방 및 지방공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표 24]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

제도명	국가	인원	입국공항	관광가능지역	출국공항	도입시기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중국	3명 이상	인천, 김포	수도권,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김포, 제주, 양양	2012년 10월
			김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수도권	김해, 인천, 김포, 제주	2013년 5월
			대구		대구, 인천, 김포, 제주	2014년 9월
			청주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수도권	청주, 인천, 김포, 제주	2014년 4월
			양양	수도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인천, 김포, 제주	2014년 4월
			무안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수도권	무안, 인천, 김포, 제주	2014년 4월
양양·무안 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몽골	5명 이상	양양	강원특별자치도, 수도권	양양	2022년 10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5명 이상	양양	강원특별자치도, 수도권	양양	2018년 1월
			무안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수도권	무안	2023년 3월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2)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

[관련 법령 및 규정]

「관광기본법」 제7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⁴⁹⁾하도록 되어 있고, 외래관광객의 출입국 절차 개선은 관광진흥의 주요 시책에 해당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16조 및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범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구성(간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하여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⁵⁰⁾ 외래관광객의 약 80%는 수도권공항(인천·김포)으로 입국⁵¹⁾하는 등 지방공항의 이용률은 3.6~9.6%에 불과하고 [도표 5]와 같이 서울 방문율은 80% 이상⁵²⁾인 반면 지방은 20~40%수준⁵³⁾인 등 수도권공항 및 서울관광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49)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진흥시책 및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부처 간 쟁점 사항 등을 심의·조정

50)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고 분석

51) 2023년 전체 외래관광객(11,031,665명) 중 80.5%(8,882,699명)가 수도권공항으로 입국했는데 이는 2015년 65.3%(13,231,651명 중 8,639,854명)에 비해 15.2%p 상승한 수치인 등 수도권공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반면, 같은 기간 지방공항 입국자 비율은 3.6~9.6%이고, 김해공항 외 나머지 4개 지방공항 입국 비율은 0.5~2.5% 수준

52)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고 2015년 이후 외래관광객의 76.4~82.4%가 서울을 방문

53)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제주를 제외한 지방 방문 비율(경상, 강원, 충청, 전라 방문율 합, 중복응답)은 23.6%(경상 12.5%+강원 6.4%+충청 2.5%+전라 2.2%)~46.6%(경상 27.6%+강원 6.4%+충청 6.4%+전라 6.2%) 수준

[도표 5] 외래관광객 여행 중 방문 권역



주: 중복응답을 허용하므로 수도권 방문율과 지방 방문율의 합이 100%가 넘을 수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표 25]와 같이 2019. 12. 12.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서울과 지방 간의 관광 불균형과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래관광객의 지방공항 입국기반 조성’ 과제를 계획⁵⁴⁾하였고, 2022년 12월 수립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요 회복을 목표로 외래관광객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항을 통한 입국을 확대하는 등 의 ‘국제공항·국제항 연계 한국관광 수요 복원 촉진’ 과제를 추진하면서 2023년 3월부터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는 등 지방공항 등을 활용하여 외래관광객의 지방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5] 지방공항을 활용하여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연번	계획	주요 내용	관계기관
1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2019.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관광객의 입국 편의 강화 및 지방 입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지방분산을 위해 외래관광객의 지방공항 이용 확대 전략 수립 및 관련 상품 개발 등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2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항·국제항 연계 한국관광 수요복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비자 특례 마련, 코로나19로 중지된 환승 무사증 제도 복원 등 지방공항 입국 확대 및 환승관광 활성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54) ① 비자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하고, 단체전자비자 대상을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3국으로 확대, ② 김해공항에 주차빌딩, 무안공항에 환승시설 등을 설치하고 국제항공노선을 추가 배분, ③ 183개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방한관광 홍보 약 700회 실시 등 성과

[사증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유]

2023년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 상위 20개국(방한 비중 92.4%)은 [표 26]과 같 은데, 우리나라는 이 중 일본·미국 등 14개국에는 이미 무사증⁵⁵⁾ 입국·체류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국가 국민들은 출입국이 자유롭다.

[표 26] 방한 상위 20개국(2023년 기준)의 지방 방문 비율^{주)}

(단위: %)

2023년 방한 순위	2023년 방한 비중 합계	2019년 지방 방문 평균	2023년 지방 방문 평균	사증국가 여부
전체	100.0	31.9	33.5	-
1 일본	21.0	24.5	18.8	X
2 중국	18.3	18.6	18.3	O
3 미국	9.8	38.8	44.4	X
4 대만	8.7	45.9	34.9	X
5 베트남	3.8	50.1	45.7	O
6 홍콩	3.7	26.3	22.2	X
7 태국	3.4	39.6	33.5	X
8 싱가포르	3.2	56.0	50.5	X
9 필리핀	3.1	64.7	54.4	O
10 말레이시아	2.4	56.3	45.3	X
11 인도네시아	2.3	75.9	58.5	O
12 중동	1.8	33.3	39.4	X
13 캐나다	1.8	41.0	51.2	X
14 호주	1.8	44.8	58.1	X
15 러시아	1.4	39.8	46.9	X
16 몽골	1.2	33.7	32.8	O
17 프랑스	1.2	62.3	65.1	X
18 독일	1.2	57.8	62.6	X
19 인도	1.1	39.5	52.6	O
20 영국	1.1	49.7	49.6	X
기타	7.7	-	-	-

주: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및 제주를 제외한 경상, 강원, 충청, 전라 권역 방문율의 단순 합(중복응답)

자료: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2019년, 2023년) 재구성

55)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은 우리나라 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국제관례·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 국적 차원에서 무사증 입국허가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 우리나라 입국자가 많고 불법체류 비율이 낮은 국가의 국민 등이며 2024년 7월 기준 전 세계 193개국 중 사증면제 협정(B-1) 67개국과 일반적 무사증(B-2-1) 45개국 등 112개국(약 58%)

반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인도 등 나머지 6개국⁵⁶⁾(방한비중 29.8%⁵⁷⁾)은 사증국가여서 정책적으로 무사증 제도가 적용돼야 자유로운 방한 입출국이 가능해지므로 출입국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 방문을 촉진하는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는 이 중 인도를 제외한 5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중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은 [표 26]과 같이 지방 방문 비율도 상위 20개국 평균에 비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는 외래관광객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지방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 촉진하려는 국가 시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 실태 분석

가) 운영실태 분석: 관리체계, 무단이탈률, 기여도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 3종과 기타 무사증 제도[사증면제협정(B-1)⁵⁸⁾·일반적 무사증(B-2-1)⁵⁹⁾], 입국목적이 관광·통과로 유사한 단기사증 제도[단기방문사증(C-3),⁶⁰⁾ 단체전자사증(C-3-2)⁶¹⁾] 등 유사 입국

56) 2023년 방한 상위 20개국 중 7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은 사증면제협정(B-1)을 맺었고, 6개국(일본, 대만, 미국, 홍콩, 캐나다, 호주)은 일반적 무사증(B-2)을 통해 사증 발급 없이도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가 아닌 중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한 비중 순위가 높음에도 이러한 무사증 입국·체류 제도가 없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인도 등 6개국이 출입국 편의 제고 정책의 대상이 됨

57) 중국(18.3%), 베트남(3.8%), 필리핀(3.1%), 인도네시아(2.3%), 몽골(1.2%), 인도(1.1%) 방한 비중 합계

58)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협정상의 활동 범위 내 무사증 입국을 허용, 2024년 7월 현재 전 세계 67개국 대상(일반여권 기준)

59)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 2024년 7월 현재 전 세계 45개국 대상(일반여권 기준)

60)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단기체류자격” 등에 따라 관광·통과 등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려는 자에 대해 발급하는 사증

61)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가 단체관광객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발급하는 사증. 2016년 3월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전면 시행 후 2023년 6월 동남아시아 3개국 단체관광객까지 확대, 2024년 6월 기준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4개국

허가 제도 간의 관리체계, 무단이탈률, 기여도 등을 비교하였다.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는 [표 27]과 같이 ① 입국 전에는 지정된 전담 여행사만 모객을 할 수 있고, 모객 여행사로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여권 정보 등), 여행 상세일정표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출받아 입국규제자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등 단기사증 제도에 준하는 입국절차를 거치고, ② 입국 후에는 여행 기간에 환승안내 · 준법도우미를 의무 동행시키고 무단이탈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등 유사 입국허가 제도들보다도 엄격한 관리 ·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표 27]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와 유사 입국허가 제도의 비교

구분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B-2-7, B-2-94)	단체관광 등 전자사증 (C-3-2)	기타 무사증 제도 (B-1, B-2-1)
사전 서류심사	○	○	X
전담여행사 지정 · 제재	○	○	X
환승안내 · 준법 도우미 동행	○	X	X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의 입국 전 · 후 관리체계: 유사 제도와 비교 >

① 입국 전 관리체계

- ①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B-2-7, B-2-94):** 외래관광객은 최소 입국 24시간 전까지 환승안내 · 준법 도우미 운영단체에 전담 여행사를 통해 여권 정보, 입 · 출국 정보, 여행 상세일정 등을 제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입국 금지 및 입국규제자 여부, 제도별 무사증 입국허가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사전 심사하여 여행사에 통보, 사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국하는 항공기 · 선박 탑승부터 불가
- ② **기타 무사증[사증면제협정(B-1), 일반적 무사증(B-2-1)]:** 2021년 9월부터 사전정보입력절차로 일부 국가에 적용되는 K-ETA를 통해 입국 적격 여부를 확인하나,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와 같이 여행 상세일정(일시, 장소, 세부일정 등)이나 입출국 예정일(선택사항), 예정시간, 편명 등 외래관광객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하고 있지는 않음
- ③ **단체전자사증(C-3-2):** 고객여행사를 통해 출발 전 신청서류를 입력 · 제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 심사 및 결과 출력을 거쳐 입국하며, 사전 제출 사항도 관광객 인적사항, 여행 일정인 등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와 사실상 동일

구분	공통 제출 사항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① 국내/국외 전담여행사 정보: 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② 방문 정보: 입출국항(제주 입출항 공항 포함), 입출국 예정일자 및 시간, 편명 등 ③ 단체 명단: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④ 여행 상세일정: 일시, 장소 등
단체전자사증	

② 입국 후 관리체계

- ①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B-2-7, B-2-94):** 법무부는 “환승안내 · 준법 도우미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우미 운영단체를 선정(한국이민재단)하였고, 도우미는 외래관광객의 출입국 수속을 지원하고 여행 일정에 동행(단체관광객 13명당 도우미 1명)하여 활동지역, 체류기간 등 입국조건 위반이나 이탈자 발생 시 감독기관에 보고⁶²⁾
- 국내 전담여행사⁶³⁾를 지정하여 이탈자 발생 방지 역할⁶⁴⁾을 부과하고,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 주기별 누적 무단이탈률⁶⁵⁾에 따라 전담여행사에 행정제재⁶⁶⁾⁶⁷⁾를 부과
- ② **기타 무사증[사증면제협정(B-1), 일반적 무사증(B-2-1)], 단체전자사증(C-3-2):** 별도 입국 후 관리체계 없음

이처럼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는 [표 27]과 같이 사증을 발급받은 여행 보다 입국 전·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전국이 사증면제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표 28]과 같이 실제 무단 이탈률은 0.18%(무단이탈자 474명⁶⁸⁾) 수준으로 기타 무사증 제도(일반적 무사증 0.17%, 사증면제협정 1.54%)나 단기사증 제도(단체전자사증 0.09%, 단기방문사증 0.36%)와 비슷하거나 일부 낮은 수준인 등 적정⁶⁹⁾하게 관리되고 있다.

- 62)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안내도우미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양양국제공항 및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단체관광객 준법도우미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63)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중국전담여행사, 양양·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은 광역자치단체가 선정(2024년 6월 기준 양양공항 16개, 무안공항 13개)한 전담여행사
64)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제9조, 「양양국제공항 및 무안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통합지침」 “6. 국내전담여행사의 책임”
65) 무단이탈률 집계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이탈자 현황을 바탕으로,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제11조 [별표 1]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분기별 평균이탈률’을 기준으로 하고, 양양·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은 「양양국제공항 및 무안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통합지침」에 따라 ‘월 누적 이탈자 발생률’ 및 ‘누적 회차’(회차 개수에 관한 별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를 기준으로 함
66)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의 경우 법무부(출입국심사과)가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결정하고, 특히 중국 측 전담여행사는 주중공관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하도록 하며, 양양·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의 경우 법무부가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결정하면 이를 통보받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해당 재외공관에서 각각 조치하도록 함
67) 법무부는 「양양국제공항 및 무안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통합지침」 “8. 행정제재 조치”에 따라 ‘이탈자 발생률 5% 이상’인 경우 유관기관과 상의하여 국가별 제도 정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탈자 발생률 3% 이상’인 경우 여행사별 행정제재(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를 가중하여 적용

【 전담여행사 행정제재 사례 】

-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전담여행사 행정제재(2022. 12. 23.)
 - 여행사 및 기간: (주)마라, 2022. 10. 17.~12. 17.
 - 이탈자 발생률: 3.01%(입국 795명 중 24명 이탈)
 - 조치사항: 해당 전담여행사 경고 및 무사증 입국자 이탈방지 강화 대책 제출
-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정지 여부 검토(2023. 5. 9.)
 - 대상국가: 베트남
 - 기간: 2023. 4. 3.~4. 29.
 - 이탈자 발생률: 7.4%(입국 352명 중 26명 이탈)
 - 조치사항: 유보[시행 초기인 점, 특정여행사(1개월 업무정지 기시행)에서만 발생한 점, 관계기관 의견 고려]

- 68)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입국자 255,599명 중 이탈자 233명, 양양·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자 10,688명 중 이탈자 241명(양양공항 174명, 무안공항 67명)
69) 법무부는 2018년 11월 ‘양양공항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의 시행 기간(2018. 1. 22.~2018. 12. 31.)을 2019. 12. 31.까지 연장하면서 ‘입국자 대비 이탈자가 1%’인 경우를 “적정한 수준”으로 판리하고 있다고 평가

[표 28] 체류자격별 무단이탈률 비교(2015~2023년)

구분	입국 및 체류자격	입국 외국인(A)	무단이탈자(B) ¹⁾²⁾	무단이탈률 (=B÷Ax100)
무사증	시증면제협정(B-1)	10,997,090	169,283	1.54
	일반적 무사증(B-2-1)	20,128,582	33,323	0.17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B-2-7, B-2-94)	266,287	474	0.18
사증	단기방문사증(C-3)	24,245,701	87,067	0.36
	단체전자사증(C-3-2)	4,817,114	4,451	0.09

주: 1.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B-2-7, B-2-94), 일반적 무사증(B-2-1), 단체전자사증(C-3-2): 해당 기간에 입국 하였다가 무단이탈한 총 외국인 수(유량)
 2. 사증면제협정(B-1), 단기방문사증(C-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상의 2023년 말 기준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저량)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및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특히 중국인 불법체류 문제는 무사증 제도가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것도 아닌 데다⁷⁰⁾ 제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입국자의 무단이탈률은 [표 29]와 같이 단체전자사증의 무단이탈률과 동일한(0.09%) 수준이다.

[표 29] 중국인 단체관광객 체류자격별 무단이탈률 비교(2015~2023년^{주)})

구분	입국 및 체류자격	입국 외국인	무단이탈자	무단이탈률
무사증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B-2-7)	255,599	233	0.09
사증	단체전자사증(C-3-2)	4,602,844	4,001	0.09

주: 코로나19로 중국인의 해외 단체관광이 금지된 시기(2020~2022년)는 입국자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 중 2023년에 이용현황이 있는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무안공항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를 대상으로 2023년 입국 현황을 검토한 결과, [표 30]과 같이 양양공항으로 입국한 전체 외국인의 43.9%(8,842명 중 3,885명),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전체 외국인의 39.1%(5,104명 중

70) 「무사증 입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민정책연구원, 2019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무사증 입국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을 비교하였는데, 제주의 경우 2018년 7월까지 대부분의 국가(12개국 제외)를 대상으로 무사증입국을 허용하였음에도 2016년도까지 오히려 전국 평균에 비해 불법체류율이 낮았고(1% 미만), 사증 입국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여 2018년 8월부터 12개국에 대해 추가로 무사증입국을 불허했으나 불법체류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었음

1,997명)가 이 제도를 통한 입국자인 등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가 특정 지방 공항 이용을 전제로 함으로써 해당 지방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양양·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의 외래관광객 유치 기여도(2023년)

(단위: 명, %)

구분	입국 외국인 수(A)	무사증 입국자 수(B)	기여도($=B \div A \times 100$)
양양 공항	8,842	3,885	43.9
무안 공항	5,104	1,997	39.1
계	13,946	5,882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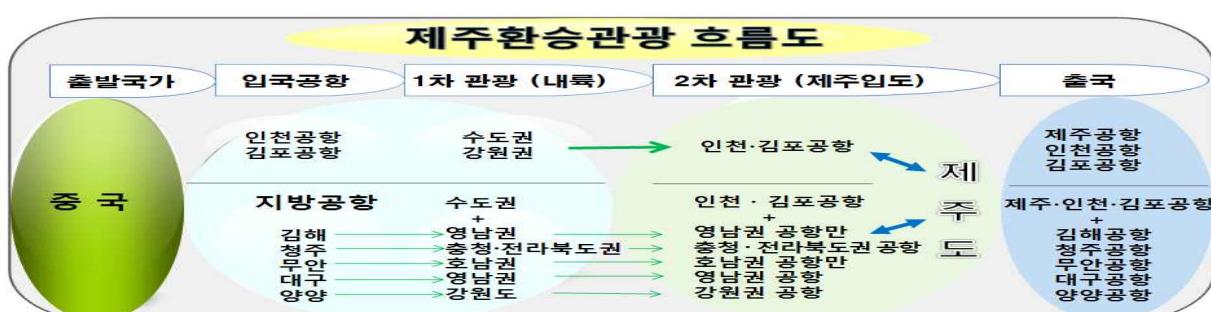
자료: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및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관광가능지역 및 입·출국 공항 등 제도 설계 관련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는 [표 24]와 같이 관광가능지역과 출국공항을 지방 및 지방공항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수도권공항(인천·김포)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공항인 수도권공항과 양양공항, 제주공항에서의 출국만 허용하고 관광가능지역은 수도권과 강원특별자치도 방문만 허용하는 반면,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공항에 더해 수도권공항에서의 출국도 허용하고 관광가능지역도 이용공항 근처인 지방 광역권에 더해 수도권도 방문을 허용하도록 설계·운영되고 있다.

[그림 1]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주)}



주: 법무부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개정 2023. 4. 30.) [붙임 5] “제주행 환승 중국인 단체관광 흐름도”(인천·김포공항 입국자의 출국공항 중 양양공항이 누락)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이처럼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가 복잡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경위를 검토해 보았다.

법무부는 2012. 2. 1. 제주 직항노선 미개설지역 외국인의 제주 방문 편의⁷¹⁾를 위해 인천공항 도착 승객이 제주행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여 입도할 수 있도록 환승제도 도입을 요청한 제주도지사의 건의를 계기로 2012. 10. 29.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제주로 환승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2013. 5. 1.부터 전면 시행하면서, 무사증 입국에 따른 무단이탈자 발생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경우 관광가능지역은 이용공항 근처 광역권인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제주만 허용하고, 출국은 입국공항인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만 이용하게 하는 등 관광가능 지역과 출국공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2014년 4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 확대회의⁷²⁾에서 논의된 “환승관광무비자 입국프로그램 지방공항 확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적용공항을 양양·청주·무안공항까지 확대하였고,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구광역시의 요청을 받고 대구공항을 추가하였으며, 2016년 3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요청을 받고 수도권공항(인천·김포공항) 입국자의 관광가능지역을 수도권 외에 강원특별자치

7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부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무사증 입국을 허용

72) 관광진흥확대회의는 2013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된 대통령 주재 회의로 13개 부처 장·차관, 청장, 관광업계 대표 및 종사원, 외국인, 학계 전문가, 학생 등 18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1차 회의가 2013년 7월, 제2차 회의가 2014년 2월 개최됨

도까지 확대하였고, 2016년 8월 충청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요청을 받고 청주 공항 입국자의 관광가능지역을 충청권 외에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등 [표 31]과 같이 제도 도입 이후 5차례에 걸쳐 국제행사 지원 등 정책적 요구와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그때그때 출국 공항과 관광가능지역을 추가하는 등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⁷³⁾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의 확대추진 경과

연번	확대 시기	주요 내용	건의주체
1	2012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제주 직항노선 미개설지역 외국인의 방문 편의 제고 및 내수진작 ▪ (도입) 인천공항에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 시범도입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기관 회의
	2013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 전면 시행 	
2	2014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지방공항 및 지방경제 활성화 ▪ (확대) 양양·청주·무안공항 ▪ (검토내용) 기대효과(지방공항 및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중국관광객 유치 촉진), 지방공항 운영현황 	관계기관 회의
3	2014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인천아시안게임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방공항 활성화 ▪ (확대) 대구공항 ▪ (검토내용) 기대효과(지방공항 및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인천아시안게임 관람 등 다양한 상품구성으로 중국관광객 유치 촉진), 지방공항 운영현황 	대구광역시
4	2015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국내 경기회복 지원 ▪ (확대) 김포공항 ▪ (검토내용) 기대효과(서울 중심 접근도가 높아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 촉진), 김포공항 출입국자 현황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회의

73) 이 외에도 2017년 9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건의를 받고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2022년 3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관련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건의를 받고 적용국가를 추가하였으며, 2022년 8월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한 전라남도의 건의를 받고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도입하였음

연번	건의 시기	주요 내용	건의 주체
1	2017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올림픽유산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양양공항에 동남아시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강원특별 자치도
2	2022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양양공항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3	2022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무안공항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동남아시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전라남도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연번	확대 시기	주요 내용	건의주체
5	2016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 및 강원특별자치도 연계 외래관광객 유치 ▪ (확대) 수도권공항 입국자의 관광가능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확대 ▪ (검토내용) 불법체류 관리방안, 관계기관 협의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관계기관 회의(대통령 주재)
6	2016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 ▪ (확대) 청주공항 입국자의 관광가능지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확대 ▪ (검토내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충청북도의 동의를 받아 재요청한 사항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만, 지난 2019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및 제5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18~2022년)의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대해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실행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 및 여행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보았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⁷⁴⁾⁷⁵⁾는 [표 32]와 같이 양양·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관광혁신민관협의회⁷⁶⁾를 통해 적용국가, 출국공항 및 관광가능지역 확대 등을,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와 관련하여 출국공항 완화 등을 법무부에 건의⁷⁷⁾하고 있었다.

74) 외래관광객 최대 규모를 기록한 2019년 국내 공항별 입국자 수는 김해공항이 1,350,263명(7.7%)으로 인천공항(11,672,601명, 66.7%)에 이어 2위였으며, 코로나19 회복세에 접어든 2023년에는 754,524명(6.8%)으로 인천공항(8,083,521명, 73.3%), 김포공항(799,178명, 7.2%)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지방공항 가운데 매년 가장 많은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

75) 부산광역시는 2017~2019년 방한 중국인 약 500만 명 중 부산 방문자가 35만 명에 달하고, 1인 평균 지출 경비가 1,876달러로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가 지역경제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함

76) 2023년 12월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 2024. 3. 20.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관광혁신민관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

77)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국의 사증면제화, 불법체류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건의를 수용하지는 않았음

[표 32]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 관련 제도 확대 · 개선 건의(2018~2024년)

연번	제도	건의주체	주요 내용	건의시기
1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시 · 도지사 제39차 협의회 -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제주행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출국공항을 김해공항으로 확대 요청 	2018년 8월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 제주행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출국공항 자율화 요청 	2024년 2월
3	양양 ·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혁신민관협의회^(주) - 양양 ·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의 대상국(중국) 확대, 관광가능지역 전국 확대, 동일 공항 입출국 조건 폐지 요청 	2024년 3월

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광분야 정례 민관협의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여행업계는 [표 33]과 같이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가 지속 운영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를 중국 이외 사증국가로 확대한다거나 출국공항 확대 등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의 수정 ·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33]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에 대한 관계자 의견

구분	의견
(주)국내 (베트남 전담여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시장은 “서울관광”的 중복 · 유사 상품만 판매되어 재방문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의 확대에 대한 지방 여행업계의 충분한 수요와 기대가 존재함 ▪ 무안은 중국과 1~2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고 여행사는 관광동선을 지방으로 확대하여 기존과 차별화된 여행상품을 기획 · 판매 가능 ▪ 부정기편(전세기)을 이용하는 지방 여행업계는 출발 직전까지 모객을 하여 좌석을 채워야만 하는데,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는 단체전자사증보다 모객 기간이 길어서 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존재함
(유)국내여행사 (중국 전담여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서울, 부산, 제주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방 여행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 ▪ 2023년에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 유치경험(2회)이 있는데, 무사증제도는 비용과 시간이 드는 사증 발급이 면제되므로 외래관광객 모객에 유리한 제도임 ▪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는 잦은 행정제재로 유치실적이 좋은 전담여행사들이 기피할 정도이고, 지정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관광객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므로 이탈 문제는 크지 않을 것임
(주)국내투어 (한국협회 부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인천공항과 김해공항만 흑자 공항인 등 부산은 외래관광객 방문률이 높은 관광도시임 ▪ 법무부가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제도의 출국공항을 김해공항까지 확대하면 부산, 경남, 울산 등 남부권 관광산업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함

자료: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등 제출자료 재구성

다)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 등 보완 필요

법무부는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국내 여행

사를 지정하고 무단이탈률 발생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도 [표 34]와 같이 제도운영의 근거⁷⁸⁾⁷⁹⁾를 법령이 아닌 지침에만 두고 있고, 의무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처분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처분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⁸⁰⁾⁸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행정절차도 생략⁸²⁾한 채 여행사를 제재하기도 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전담여행사 지정 · 행정처분 근거 비교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양양공항 ·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12조의3⁷⁹⁾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양국제공항 및 무안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통합지침」
전담여행사 지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행정제재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II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양국제공항 및 무안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통합지침」 8. 행정제재 조치
제재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법무부가 처분 양정을 지정 · 통보)

78) 서울행정법원 2016. 7. 25. 선고 2016구합58710 판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해당 지침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79)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2024. 10. 22. 「관광진흥법」 제12조의3을 신설하여 법령상 근거를 마련(2025. 4. 23. 시행)

80) (주)간다는 “양양공항 ·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에 대해 의무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이 위반행위 회차 산입기간의 제한 없이 위반회차가 누적되는 방식이어서 오랜 기간 지정여행사로서 영업한 여행사일수록 가중된 제재를 받을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등 제재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81) (유)간다는 여행사는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는 갖은 행정제재로 유치실적이 좋은 전담여행사들이 기피할 정도라는 의견 제시

82)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키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님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제주 단체환승객 무사증	양양공항·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이탈 처분기준: 분기별 평균 가. 3% 미만: 시정명령 나. 3~4% 미만: 1개월 업무정지 다. 4~5% 미만: 2개월 업무정지 라. 5% 이상: 지정취소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이탈 처분기준: 월 누적 가. 3~5% 미만: 경고 나. 5% 이상(1회): 1개월 업무정지 다. 5% 이상(2회): 2개월 업무정지 라. 5% 이상(3회): 3개월 업무정지 마. 5% 이상(4회): 지정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동일 의무를 위반한 누적횟수에 따라 제재 (예시) 결과보고 누락 시 시정명령 (1차), 15일 업무정지(2차), 1개월 업무정지(3차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기준 없음 - 의무위반 시 자격 상실 또는 제한 (예시) 여행사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자격 상실 또는 제한
행정절차 준수	O	사례 없음	X

주: 전담여행사 지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4. 10. 22. 규정 신설(2025. 4. 23. 시행)
 자료: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제출자료 재구성

라) 종합결론

이처럼 본문 “3)항”과 같이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법무부가 엄격한 출입국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무단이탈률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면서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 접근성 개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 성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사들은 대상 국가 확대나 관광가능지역·출국공항 유연화 등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도 운영상 여행사 영업제재의 법령상 근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무부가 보완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법무부

법무부는 현재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와 협력하고 국민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를 수정·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과 함께 그 논거로 수도권 관광집중의 해소는 교통·편의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매력을 개발 등 지방관광의 체계 개선을 통해 해결할 사안인 점, 최근에는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양양·무안공항 등에 입국한 외래관광객이 거의 없는 등 실적이 저조한 점, 제도 시행 초기여서 지방관광에 기여한 정도나 무단이탈률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점, 불법체류가 많은 중국인에 대한 무사증 제도 확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광기본법」 제7조 등에 따르면 지방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인프라 구축·관광매력을 개발 등의 시책 추진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출입국 절차 개선도 법정 의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수도권관광을 지방관광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상품 개발, 관광교통기반 마련 등 지방관광 체계 개선과 외래관광객의 지방공항 입국기반 조성 등 출입국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된 점, 제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최근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주요 항공사⁸³⁾,

83)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주)코리아~~가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2023년 5월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면서 공항 이용률 자체가 급감

여행사⁸⁴⁾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영향도 있고 [표 27] 및 [표 33]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등 제도운영 주체들이 제도의 개선·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등 제도 자체의 불편함이 미치는 영향도 있어 보이는 점, 이전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은 있지만 [표 32]와 같이 2023년 양양·무안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42.2%가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것인 등 지방관광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3) 항 나)”와 같이 입국 전에는 단체관광객 정보와 여행 정보 등을 제출받아 사전 심사하고, 입국 후에는 환승안내·준법도 우미 등을 의무동행하는 등 사증발급 이상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무단이탈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먼저 제도를 확대하고 이후 무단이탈자 발생 경과에 따라 제도의 확대·축소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므로 제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단체관광의 수요가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도 건전하고 안정적인 여행 시장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향후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법무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법무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현행 지방공항 연계 무사증 제도에 관한 운영실태 및 출입국 관리체계 등을 분석한 결과를 외래관광객의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84) 2023년 기준 무안공항 무사증 제도의 업무실적(입국자 수) 1위였던 여행사[주(주)가]가 법무부의 엄격한 행정제재 기준에 따라 2024년 3월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2024년 상반기 실적 전무

다

관광 숙박시설 영업주의 성범죄 등 관련 영업제재 방안 마련 필요

1) 업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5조, 제3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3조 등에 따라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등 관광 숙박시설의 등록기준을 관리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으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광 숙박시설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숙박업자의 성범죄 등 관련 영업제재 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르면 숙박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 영업⁸⁵⁾ 중 하나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며 그 종류에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취사 가능)이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제11조 및 제1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⁸⁶⁾ 등에 따르면 숙박업자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성폭력범죄의

85)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86) ①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 대상, ②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 대상, ③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 대상, ④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 대상, ⑤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폐쇄명령 대상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 등을 설치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⁸⁷⁾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청소년⁸⁸⁾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고,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동종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과의 관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펜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의 관광 숙박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관광 숙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관광 숙박시설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서 소규모 민박사업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부 숙박업 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의

87)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해당

8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및 한옥체험업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숙박시설에서의 불법카메라 설치,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필요]

한편, 지난 2018. 11. 21.부터 2019. 3. 3.까지 영남·충청권 등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 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로 4명이 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이 숙박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와 같이 2018. 12. 11. 불법카메라 설치와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⁸⁹⁾가 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모텔 영업주가 2020년 7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는가 하면, 2023년 2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게스트하우스 영업주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는 등 투숙객의 사생활 관련 안전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에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설치 등 성풍속범죄가 611건에 달하는 등 숙박시설에서의 성범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숙박시설에서의 성범죄 등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재 영업주의 성범죄 등으로부터 투숙객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는 숙박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 밖에 없으며, 더욱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영업의 특성상 투숙객이 성범죄

89)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도 영업주의 불법카메라 설치, 성범죄 등 관련 법률 위반 발생 시 영업제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총 5종의 관광 숙박시설은 모두 관광객에게 숙식이나 숙박 체험 등을 제공하므로 영업주의 성범죄 등으로부터 투숙객의 사생 활이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호텔업·휴양 콘도미니엄업·관광펜션업과 달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영업주의 불법카메라 설치, 성범죄 등 관련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영업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숙박시설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외에도 농어촌민박업⁹⁰⁾이 있는데, 농어촌민박업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함께 영업주가 “거주”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등을 제공하는 업종이어서 투숙객과 영업주가 동거하게 되므로 투숙객이 영업주의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는 공통점이 있고, 실제로 2018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인의 투숙객 대상 성범죄⁹¹⁾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업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⁹²⁾ 「농어

90)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91) 2018. 2. 8. 제주시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인이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가해자는 2017년 7월에도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만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는 등 해당 사건은 농어촌민박 영업주의 성범죄에 대한 영업제재 규정 마련의 계기가 됨

「촌정비법」에 영업주의 성범죄에 대한 숙박업 폐쇄·영업정지, 동종 영업 금지 등 의 규정을 도입⁹³⁾⁹⁴⁾하였고, 2021년에는 농어촌민박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 시설과 달리 불법 촬영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 정처분 규정을 도입⁹⁵⁾하였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을 최소한의 규제에 방점을 두고 운영해 왔다는 등의 사유로 위 2개 소관 숙박시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 험업) 영업주의 성범죄 등 관련 영업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상당수 외래관광객 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서 2021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숙박시설 중 53.2%(6,367개 중 3,389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표 35]와 같이 유사 숙박시설인 민박·게스트하우스 등의 외래관광객 이용률이 6.5(2023년)~13.3% (2019년), 관광객 수가 67만(2023년)~219만여 명(2019년)⁹⁶⁾에 이르는 점을 볼 때, 유사 숙박시설인 농어촌민박업과 마찬가지로 영업주의 성범죄 등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92) 2019. 12. 10. 게스트하우스는 대부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운영되고, 민박 주택은 특성상 여성 등 투숙객의 성범죄 등 노출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가 발생한 민박시설의 운영과 성범죄자의 취업 등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공중위생관리법」과 동일하게 제재규정이 도입되었음

93)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4,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4]

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월, 2차 위반 시 사업장 폐쇄명령 대상

95)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월, 2차 위반 시 사업장 폐쇄명령 대상

96) 2019년의 경우 $13.3\% \times 1,646.3$ 만 명 ≈ 219만 명, 2023년의 경우 $6.5\% \times 1,027.6$ 만 명 ≈ 67만 명으로 추정함

[표 35] 외래관광객의 민박 등 이용 현황

(단위: %, 만 명)

구분	2019년			2023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민박/공유숙박 등(A)	6.5	5.5	7.2	1.9	1.0	2.5
게스트하우스 등(B)	6.8	6.4	7.1	4.6	3.8	5.2
소계(A+B)	13.3	11.9	14.3	6.5	4.8	7.7
호텔	72.2	73.4	71.4	79.6	83.2	77.2
외래관광객 입국자 수	1,646.3	676.8	969.5	1,027.6	423.3	60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에 대하여 영업주의 성범죄에 대한 영업제재 규정 등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의 영업주가 불법 카메라의 설치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1) 업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조,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및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등의 용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대여하고 있고, 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⁹⁷⁾을 설치하여 기금 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07. 10. 19. 한국산업은행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하약정서”를 체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한 기금의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또는 시중은행⁹⁸⁾을 통해 [표 36]과 같이 실수요자에게 기획재정부가 공지하는 금리로 대여하고 있는데, 특히 호스텔업 등 호텔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25%p 우대금리⁹⁹⁾를 적용하여 낮은 금리로 기금을 사

97)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 인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2024년 6월 현재 5명을 채용하여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금 수입 징수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98)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99)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는 아래 표와 같은데,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는 각각 2.25%, 4.01%로서 호스텔업 등 호텔업자에 대한 우대금리 1.25%p를 차감하면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는 각각 1.00%, 2.76%임

(단위: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9~2021년	2.25	2.25	2.25	2.25
2022년	2.25	2.34	3.20	3.44
2023년	4.01	3.51	3.33	3.7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36]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기간 및 대출금리(2023년 하반기)

구분		대여 기간	대출금리
시설자금	신축, 증축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중소기업, 공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호스텔 등 호텔업 시설자금은 1.25%p 우대
	개보수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현황을 보면, [표 37]과 같이 시설자금(건설, 개보수) 1조 3,009억 원(1,301건), 운영자금 1조 1,322억 원(6,356건), 계 2조 4,331억 원(7,657건)을 대여하였다.

[표 37]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현황(2019~2023년)

(단위: 억 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657	24,331	811	4,325	2,967	6,400	1,301	4,417	1,461	4,726	1,117	4,463
시설자금	1,301	13,009	287	3,339	188	2,234	237	2,281	269	2,720	320	2,432
운영자금	6,356	11,322	524	985	2,779	4,165	1,064	2,135	1,192	2,005	797	2,031

주: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날 수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2) 호스텔업 등록 후 기금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 미흡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8조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을 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용도로 대여할 수 있고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에 관한 지시명령이나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시명령이나 감독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금의 미상환액을 회수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관광숙박업자가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서 영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¹⁰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호스텔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르면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호스텔업 등록기준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한편,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호텔업¹⁰¹⁾에 포함되어 기금 대여 시 다른 업종에 비해 1.25%p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호스텔업은 호텔업으로 분류되면서도 「관광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10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사업정지 2개월, 3차 사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

10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 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호텔시설 현장평가¹⁰²⁾ 등을 받지 않게 되므로 호스텔업으로 등록한 이후에는 기금을 대여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산업은행 등 대여은행을 통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호스텔업자가 기금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용도 외 사용 적발시 적기에 조치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한국산업은행 등 대여은행(14개 시중은행)에 기금 대여금에 관한 실태조사를 요청하면서 전년도 대여금이 집행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증빙자료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 사업체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서면자료를 통해 한정적으로 점검하고 있을 뿐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의 실질적인 점검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등 대여은행들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호스텔업자가 숙박시설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호스텔업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이후에는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호스텔업 용도로 기금을 대여한 130개 사업장¹⁰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

102)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에 따라 현장평가(사업자에게 사전통지 후 조사), 불시평가(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 조사), 암행평가(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 실시

검한 결과, A 등 3명은 2020년 기금 50억 원을 시설자금으로 대여받아 2021.

11.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97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준공한 후 같은 해 12.

20. 영등포구에 “[기민]”라는 상호로 호스텔업을 등록하였으나 2021. 12. 13.부터

2024. 5. 10. 현재까지 159명과 임대차 기간을 1~2년으로 하여 보증금(1천만~1

억 6천만 원) 및 월세(10만~95만 원)를 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로

호스텔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기민] 등 19개 사업체는 [별표 1] “호스텔업 기금 대여 및 등록 현황”과 같이 호스텔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기금 계 332억 71백만 원을 대여받는 등¹⁰⁴⁾으로 숙박시설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호스텔업으로 등록한 후 [별표 2] “호스텔업 용도 외 운영 현황”과 같이 호스텔업 운영을 위한 예약시스템과 POS시스템¹⁰⁵⁾을 갖추지 않은 채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호스텔업 대신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기민] 등 11개 사업체¹⁰⁶⁾는 호스텔업 이외 부동산임대업으로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호스텔업 용도로 기금을 융자받은 위 19개 사업장이 대여 목적과 달리 부동산임대업 등 다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실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저리의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용도의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3) 기금을 대여받았으나 해당 시설을 준공하기 전인 사업장은 제외

104) [기민] 등 18개 사업체는 기금을 대여받아 호스텔을 건립하였고, [기민]는 자체자금으로 호스텔을 건립한 후 2023년 상반기 운영자금 27백만 원을 대여받음

105) 예약시스템과 POS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 팔린 상품에 대한 정보를 판매시점에서 즉시 기록함으로써 판매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은 호스텔업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임

106) [기민], [기자], [기안], [기자], [기자], [기자], [기자], [기자], [기자], [기자], [기자], [기자]

3) 폐업·사업양도 등으로 기금 대여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기금 미회수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 제8조 및 제15조 등에 따르면 호스텔업 등 관광숙박업¹⁰⁷⁾을 경영하려는 자는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로부터 관광사업 등록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받아 위 법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관광진흥개발기금 응자지원지침」¹⁰⁸⁾ III. 3. 등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허가·지정의 취소·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¹⁰⁹⁾가 발생하면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관광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련 신고 내역을 제출 받는 등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자의 자격 유지 여부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

107)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108)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반기마다 공고

10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허가·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기금을 대여받은 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광사업 폐업 및 양도 신고 내역을 제출받는 등의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관광사업을 폐업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산업은행 등 대여은행에 알리지 않거나, 폐업한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금 채무의 근저당권이 건축물에 계속하여 설정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사업 폐업 및 양도 사실을 알 수 없어 적기에 대여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해 관광사업 폐업 및 양도 등으로 인한 자격 유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점검한 결과, [내]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호텔[내]([110] [별표 3] 13번 사례)를 운영하면서 2021년 상반기 기금에서 12억 원의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후 2022. 9. 26. 호텔업을 폐업하고 한방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는데도, 호텔업 폐업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나 대여은행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폐업한 28개 사업체([별표 3] “관광숙박시설 폐업 명세” 참고)와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한 13개 사업체([별표 4] “관광숙박사업권 양도 명세” 참고) 등 41개 사업체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기금을 대여받아 관광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대여금 상환일 도래 전에 관광숙박업 자격을

110) 2015.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함

상실하였는데도 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등으로 인해 관광사업의 폐업 및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23. 12. 31. 현재 대여금 잔액 388억 3,252만 원¹¹¹⁾에 대해 회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4) 기금 대여 후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관광진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의 이용자 편의를 돋고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호텔을 신규 등록하거나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는 때¹¹²⁾에는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¹¹³⁾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제3항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II. 2.에 따르면 호텔업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자¹¹⁴⁾는 호텔업 등급인정증 사본을 공사 완료 이후 해당 은행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호텔업 등록

111) 관광사업 폐업 및 양도 관련 대여금 잔액은 각각 93억 4,958만 원, 294억 8,294만 원임

112)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11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0일, 3차 사업정지 20일, 4차 등록취소)

114) 「관광진흥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호텔업 중 호스텔업은 제외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 회수 조건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과 연계한 것은 관광호텔업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조 등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사무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대여은행으로 하여금 기금을 대여받은 사업체가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였는지 매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부터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체 정보를 제출받아 기금을 회수하는 데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 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적정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매년 9~10월 1차례 전년도 기금을 대여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만 호텔업 등급인정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호텔시설을 준공·등록하지 못하여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이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실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국)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부터 호텔업 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있는 등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하여금 호텔업 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텔업 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체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알리지 않은 채 단지 위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등급결정 신청을 요청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없는 조치만 반복하고 있고, 전국 모든 호텔에 관한 등급결정 현황과 등급평가 진행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호텔업 등급결정 현황” 자료를 공문을 통해 분기마다 지방자치단체(시·도 경유)에 송부¹¹⁵⁾하면서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을 대여받은 호텔업 등급결정신청 의무대상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였는지, 호텔업 등급결정 미신청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1) 13개 업체가 기금을 대여받고도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없이 영업 점검 결과, C 등 2명은 2016년 하반기 기금 19억 원을 가족호텔업 용도로 대여받아 2017. 10.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42실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한 후

115)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결정 현황” 자료의 비고란에 “미신청”이라고 표시

2018. 1. 5. 영등포구에 “▣”라는 상호로 가족호텔업을 등록하였고 가족호텔업이 호텔업 등급결정 대상이 된 2021. 11. 19.¹¹⁶⁾부터 2023. 6. 5. 호스텔업으로 변경등록할 때까지 영등포구에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더구나 위 업체는 2019. 2. 17.부터 2024. 6. 19. 현재까지 72명과 임대차 기간을 1~2년으로 하여 보증금(1천만~1억 65백만 원)과 월세(15만~62만 원)를 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광숙박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위 업체 등 13개 사업체는 [별표 5] “호텔업 등급결정 미신청 사업체 명세”와 같이 2024. 6. 19. 기준으로 호텔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호텔업으로 등록한 후 572~944일,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186~1,459일이 지날 때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체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위 13개 사업체에 대해 기금 대여금 잔액 290억 6,55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행정조치를 못한 채 방치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 12개¹¹⁷⁾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 13개 사업체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호텔업 등급결정 미신청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116) 가족호텔업의 경우 2019. 11. 19.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2년이 지난 2021. 11. 18.까지 등급결정 신청을하도록 되어 있음

117) 2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소재하고, 11개 업체는 각기 지자체가 다름

업무담당자들은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가 시·군·구 업무가 아닌 국가 업무여서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거나,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미신청 호텔을 포함하여 송부한 “호텔업 등급결정 현황” 자료만으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사유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항”과 관련하여 기금을 용자받은 사업체가 관광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호스텔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3)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광사업 폐업 및 양도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광사업 폐업 또는 양도로 인해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로부터 기금을 회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4)항”과 관련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자료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제출받아 기금 회수 및 행정처분에 활용하고,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2) 항”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호스텔업자 등이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용도 외 사용을 적발할 경우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목적과 달리 부동 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19개 호스텔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초 대여 목적대로 호스텔업을 영위하도록 지시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을 회수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 ② [“3) 항”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관광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련 신고 내역을 제출받는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자격 유지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숙박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한 41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 ③ [“4) 항”과 관련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부터 호텔업 등급결정 미신청 사업자 정보를 제출받아 기금을 회수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13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대여금을 회수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제3절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분야

1. 실태 및 세부 감사중점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매년 제공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분야의 실태를 확인하고 세부 감사중점을 도출하였다.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방향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12. 20. 마련한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2024~2028)”¹¹⁸⁾을 통해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028년까지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70%(2023년 62.4%),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2022년 78조 원) 등을 목표로 제시¹¹⁹⁾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 인구가 2015년 267만 명에서 2021년 474만 명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0~2021년 대중골프장 이용료 상승률이 19%에 달하는 등 과도한 이용료 인상으로 인해 이용자 불만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22. 1. 20. 골프장을 3분 체계로 개편(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하고 이용가격 등 대중화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5. 8. 공공체육시설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지자체 공

118)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119)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국가 신성장 동력, K-스포츠’,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등 5대 추진전략을 마련

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기로 하는 등 더 많은 국민이 공공체육 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요성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호 등에 따르면 생활체육이란 국민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이 동호회에 참여하는 등 주기적으로 운동을 생활화할 경우 개인은 신체적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운동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또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을 함께 하면서 사회성이 길러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민이 늘어남으로써 사회적으로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헬스클럽·레저스포츠·골프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고, 공공체육시설 등 각종 생활체육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 생활체육 활성화 실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국민생활체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10세 이상 국민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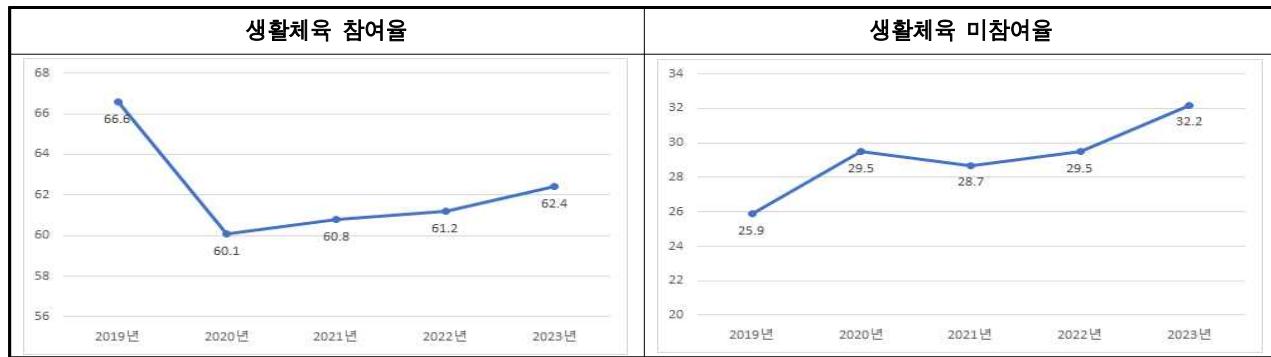
주요 결과를 보면, [도표 6]과 같이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¹²⁰⁾은 코로나19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62.4%로 나타나고 있으나

120) 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

2019년(66.6%)에 비해 4.2%p 낮아졌고, 2023년 생활체육 미참여율¹²¹⁾은 2019년 25.9%보다 6.3%p 높아진 32.2%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생활체육 참여율과 미참여율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도표 6] 생활체육 참여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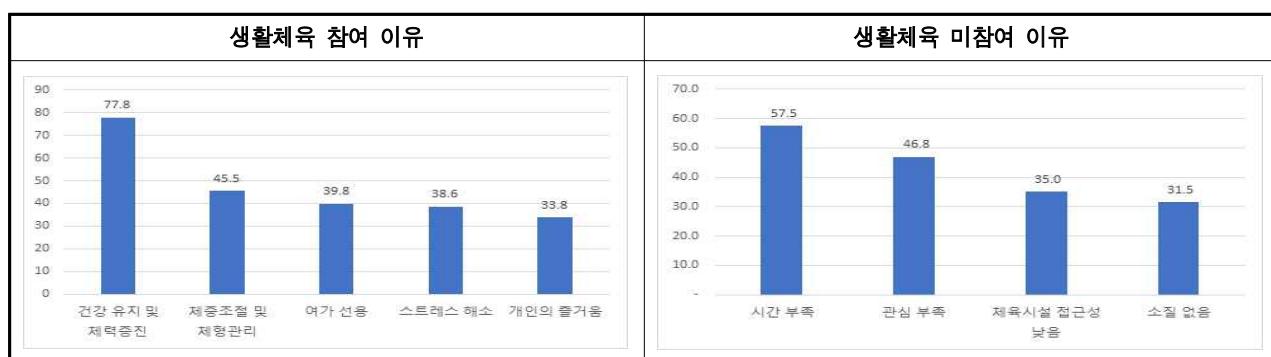


자료: 국민생활체육조사(2023)

한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도표 7]과 같이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이 77.8%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45.5%), 여가 선용(39.8%), 스트레스 해소(38.6%), 개인의 즐거움(33.8%) 순이고,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 부족이 57.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관심 부족(46.8%),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35.0%), 소질 없음(31.5%) 순이다.

[도표 7] 생활체육 참여·미참여 이유(2023년)

(단위: %)



주: 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중복 응답으로 응답 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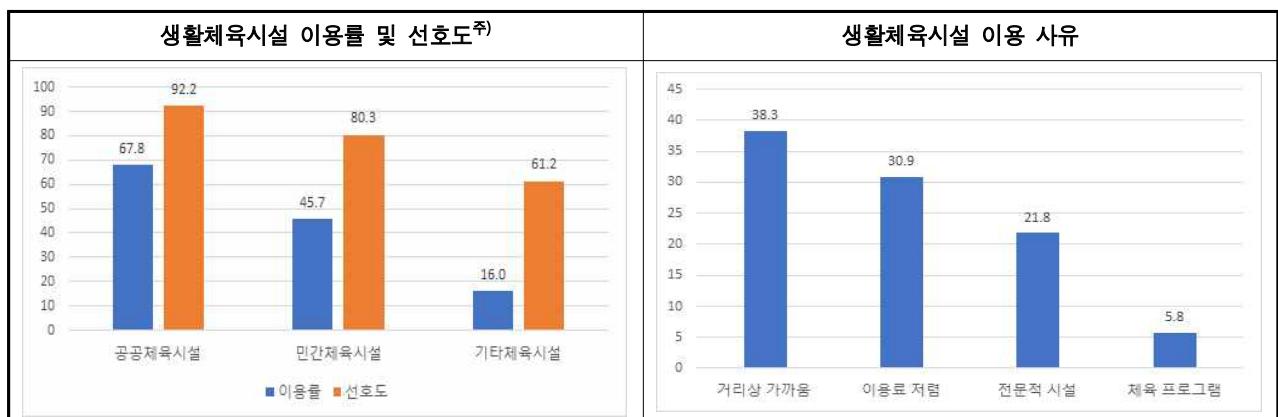
자료: 국민생활체육조사(2023)

121) 생활체육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

그리고 국민이 주로 참여하거나 희망하는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도표 8]과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이 67.8%, 선호도¹²²⁾가 92.2%로 나타나는 등 민간 체육시설 및 기타체육시설¹²³⁾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과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생활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유로는 ‘거리상 가까움’이 38.3%, ‘이용료 저렴’이 30.9%로 나타나는 등 생활체육시설의 접근성과 관련 된 사유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8] 생활체육시설 이용 특성(2023년)

(단위: %)



주: 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중복 응답으로 응답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자료: 국민생활체육조사(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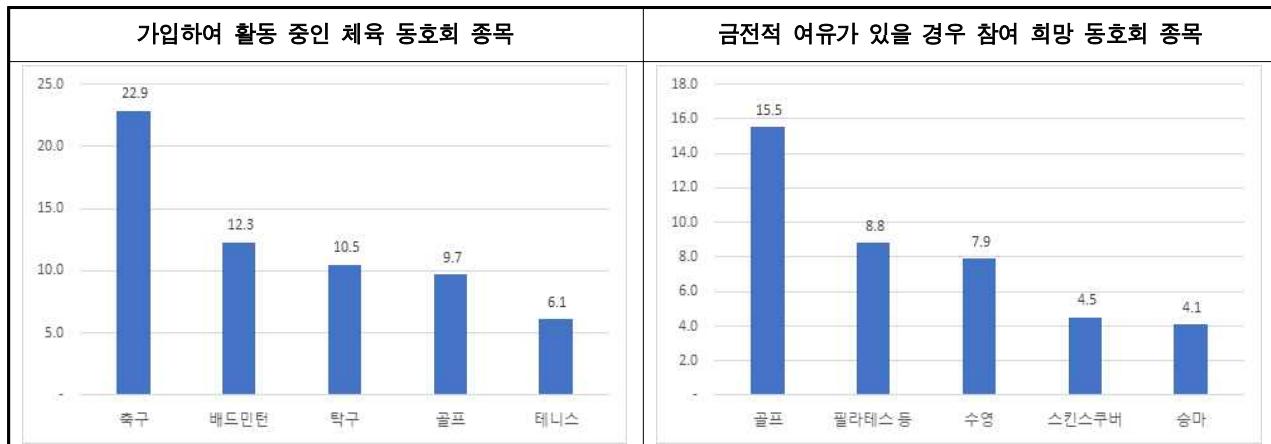
한편, 생활체육 동호회는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유인이 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체육 동호회에 가입하여 운동하는 비율은 11.3%이고, 가입하여 활동 중인 체육 동호회 종목을 보면 [도표 9]와 같이 축구가 22.9%로 가장 많고, 배드민턴(12.3%), 탁구(10.5%), 골프(9.7%), 테니스(6.1%) 순이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될 경우 참여하고 싶은 운동종목으로는 골프가 15.5%로 가장 많고, 필라테스 등(8.8%), 수영(7.9%), 스키스쿠버(4.5%), 승마(4.1%) 순이다.

122) 향후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을 원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응답

123) 공동주택체육시설, 청소년체육시설 등

[도표 9] 생활체육 동호회 선호 종목(2023년)^{주)}

(단위: %)



주: 복수응답임

자료: 국민생활체육조사(2023)

라. 시사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생활체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활동을 하지 않는 국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활체육 미참여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국민이 축구 동호회 등 다양한 체육 동호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는 골프 동호회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활동에 비용이 많이 드는 골프 등의 운동종목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국민은 선호도가 제일 높은 공공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체육시설 선택 시 접근성('거리상 가까움', '가격 저렴' 등)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 세부 감사중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도 및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골프를 즐기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형골프장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추진되고 있는지, 특정 동호회의 독점 사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2. 문제점

가

사후관리 체계 마련 없이 대중형골프장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정책 실효성 저하

1) 업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금 면제, 체육진흥기금 응자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을 하는 등 국민체육 진흥 및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행태를 보임에 따라 2022. 1. 20.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골프장을 대상으로 기존 대중골프장에 적용하였던 수준의 세제 혜택¹²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5. 3. [그림 2]와 같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박정 등 국회의원 12명이 2022. 1. 21. 발의한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법률안¹²⁵⁾에

124) 대중형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 세율 비교

구분	회원제골프장	대중형골프장
개별소비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입장객당 21,120원	없음
재산세	토지: 4%(분리과세) 건축물: 4%	토지: 0.2~0.4%(별도합산) 건축물: 0.25%

125)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 제2호의 비회원제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대중형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해 검토하였다.

[그림 2] 골프장 체제 개편

기존	개편	
회원제골프장	회원제골프장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골프장
대중골프장(주)	비회원제골프장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
	대중형골프장	비회원제골프장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

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2022. 11. 3. 일부 개정) · 시행규칙(2022. 11. 4. 일부 개정) ·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2022. 12. 30.)를 제 · 개정하여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 · 절차 및 대중형골프장 이용요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였고, 2023. 2. 14.부터 2024. 6. 19.까지 362개의 대중형골프장을 지정하였으며, 반기별로 사단법인 **대한민국협회** 등을 통해 골프장 이용요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대중형골프장 지정해제(취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지정요건 위반 시 제재 불가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대중형골프장처럼 정부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의 경우 당초 지정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규정이 필요¹²⁶⁾하다.

이와 관련하여 [표 38]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진흥시설 · 지정스포츠클럽 · 문화산업진흥시설 · 전담여행사 등 지정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정요건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26) 「법령 입안 심사 기준」(2023. 법제처) 제2편 제2장 8에 따르면 지정이 영업규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특허·허가·인가 등의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인허가로서의 지정은 인허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허가에 대한 법령 입안 · 심사 기준에 따라 지정기준, 절차, 취소 기준과 제재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음

[표 38] 지정과 해제 조항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사례

구분	지정 조항	해제 · 취소 조항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2조 - 문화체육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 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클럽법」 제9조 제1항 - 문화체육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클럽법」 제11조 - 문화체육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화산업 진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 제1항 - 문화체육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2조 - 문화체육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전담여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 · 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제3항 - 문화체육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재구성

한편,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의3, 제12조 및 같은 규정 시행

규칙 제8조의2에 따르면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 · 조직 · 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제도 도입과 관련된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검토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지정해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포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월경(날짜 미상) 위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확인하여 대중형골프장에 관한 지정취소 기준 또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도 관계 기관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지 않았고¹²⁷⁾,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취소 기준과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2022. 2. 7. 위 개정법률안을 전부 수용한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 15.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11. 3.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¹²⁸⁾ 및 절차 등 이 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취소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관련 예상 질의답변을 작성하는 등 현행 체육시설법상 지정요건을 위반한 대중형골프장에 대하여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도, 2024. 6. 19. 감사일 현재까지도 체육시설법에 대중형골프장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과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31개 대중형골프장¹²⁹⁾을 대상으

127)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7건의 체육시설법 관련 의원발의법률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의견조회 공문을 송부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본건 개정안을 제외한 16건은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의견조회 공문을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128)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골프장업은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구분하되,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연도 평균금액, 회원제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한 비회원제골프장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23. 1. 2. 주 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을 2023년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지정요건(상한기준)으로 확정함

로 가을(9~11월) 평균 코스 이용료가 2023년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1인 기준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¹³⁰⁾한 결과, [내]CC 등 5개 골프장¹³¹⁾은 홈페이지에 지정요건보다 높은 요금을 공지하였으면서도 코스 이용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정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자료를 제출한 26개 골프장 중 [내]CC 등 16개 골프장은 지정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내]CC의 경우 이용자에게 최대 주중 27만 원, 주말 30만 원의 그린 피를 부과함으로써 대중형골프장 평균 코스 이용료 지정요건보다 높은 요금이 부과된 이용자가 주중 60.9%, 주말 65.9%에 달하고,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주중 222,000원, 주말 281,000원)보다도 높은 요금이 부과된 이용자도 주중 33.9%, 주말 37.3%로 나타나며 2023년 가을 평균 코스 이용료가 주중 198,223원, 주말 256,342원으로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을 각각 10,164원, 10,461원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10개 골프장은 [별표 6]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을 초과한 골프장 명세(2023년 가을 기준)”와 같이 골프장 이용자에게 지정요건을 초과한 주

129)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 주말 최고요금이 26만 원 이상이어서 지정요건 위반이 의심되는 대중형골프장을 대상으로 함

130)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조 및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코스 이용료는 골프장 입장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가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요금이라고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골프장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요금을 기준으로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나, 일부 골프장은 부계별 요금 구간을 게재(예시: 1부 요금 220,000~290,000원)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대별로 정확한 입장요금을 알 수 없으므로 골프장 홈페이지 게재 요금만으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감사기간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골프장으로부터 골프장 홈페이지 게재 요금 이외에도 이용자별 그린피 명세도 제출받아 9~11월 월별 평균요금을 각각 산정한 후 3개월 평균요금을 계산하였음. 이 과정에서 골프장에서 제출한 이용자별 그린피가 홈페이지에 공지된 하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한금액으로 보정한 후 평균요금을 산정하였음(「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골프장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요금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함)

131) [내]CC, [내]CC, [내]CC, [내]CC, [내]CC. 이 중 [내]CC의 경우 “2023년 9월 그린피 이벤트가”로 공지한 금액이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보다 높은 주중 요금(22만~25만 원)과 주말 요금(22만~29만 원)으로 확인되는 등 요금 지정요건을 준수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임

중 188,533~198,223원, 주말 247,759~256,342원의 평균요금을 부과하여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나자CC 등 10개 대중형골프장이 지정요건을 위반하였는데도 체육시설법에 지정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 10개 골프장은 계속하여 대중형으로 지정됨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1인당 34,000원¹³²⁾ 상당의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받고 있는 실정이다.¹³³⁾

3) 대중형골프장에 대한 코스 이용료 실태조사를 부실하게 실시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대중형골프장 지정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는 코스 이용료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코스 이용료 준수 여부가 제대로 관리되어야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132)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5조에 회원제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를 34,000원으로 정함.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해 회원제골프장에 입장객 1인당 세금 21,120원(개별소비세 12,000원,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을 부과하는 반면 대중형골프장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회원제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의 재산세 총액을 이용객 수로 나눈 1인당 재산세액 차이가 13,289원으로서 위 과세금액 차이의 합계 34,409원($=21,120원+13,289원$)에서 백 원 단위를 절사하여 34,000원을 산정함

133) 2023년 비회원제골프장 이용객은 1홀당 4,684명이므로 1개 골프장(18홀 기준)의 이용객은 84,312명이고, 대중형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과의 1인당 코스 이용료 차이는 34,000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여, 1개 골프장별로 연간 28억 6천여만 원($84,312\text{명} \times 34,000\text{원}$)의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코스 이용료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회원제·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코스 이용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골프장 홈페이지에 게재된 코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월별 평균금액을 엑셀 서식에 입력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홈페이지상 요금표, 이용자별 코스 이용료 정수 내역 등)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9. 15. 사단법인 **[내부]**협회에 2023년 하반기 코스 이용료 조사요청하면서 요금 조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공문을 작성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위 협회에서 코스 이용료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9. 25. 요금조사 기관을 사단법인 **[내부]**협회로 변경하면서 위 공문에 포함되어 있던 증빙자료(홈페이지상 요금표, 예약시스템 화면 자료 또는 데이터 등) 관련 문구를 삭제¹³⁴⁾한 조사요청 공문을 위 협회로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에서 사실과 다른 코스 이용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항 나)”에서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지정요건(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을 초과한 10개 골프장에 대해 2023년 하반기 실태조사

134) 사단법인 **[내부]**협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중형골프장 최고 이용료가 코스 이용료 상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용료 자료 이외 증빙자료까지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 제외를 요청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수용함

시 각 골프장이 보고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대~~^국CC의 경우 주중과 주말 평균요금을 각각 172,372원, 226,083원으로 하여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단법인 ~~대~~^국협회에 제출하는 등 [별표 7] “2023년 하반기 실태조사 시 10개 대중형골프장이 보고한 코스 이용료”와 같이 8개 골프장은 주중 또는 주말 평균 요금이 지정요건보다 낮은 수준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단법인 ~~대~~^국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 위반 시 지정 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 골프장 이용요금 실태조사에서 증빙자료를 검증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지정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2) 항”과 관련하여]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 취소 및 제재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법령상 개선)
- ② [“3) 항”과 관련하여]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실태조사 시 증빙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는 등 대중형골프장이 지정요건을 준수하는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대책 필요

1) 업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제4조, 제8조 및 제36조 등에 따라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고, 공공체육시설¹³⁵⁾에 대해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도록 하는 등 그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로부터 매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받고 있는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시책을 총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시설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스포츠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10. 21. 특정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장기간 사용하고 일반주민의 신청은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13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로서 전문체육시설(체육시설법 제5조 제1항) 및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법 제6조 제1항)을 의미함

방안”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4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다시피 사용하여 논란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¹³⁶⁾가 나온 이후 2023. 5. 8.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公正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며,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 관련 국고보조사업 평가에 반영하여 폐널티를 부과한다는 등의 방안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동호회의 독점 사용 방지 및 일반 주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공공체육시설 이용 원칙 및 시설 예약 현황을 공개하고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공공체육시설 관련 보조사업에 반영하여 사후관리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을公正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동호회 위주로 이용하도록 하여 일반 주민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52개 공공테니스장을 대상¹³⁷⁾으로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토·일요일을 기준으

136)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특정 체육관의 경우, 8개 배드민턴 코트 중 7개가 동호회에 배정되어 있고, 동호회 회원들이 코트에서 음주를 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임(“동호회가 점령한 공공체육시설, 술판까지 벌여 눈살”, 연합뉴스, 2023. 4. 29.)

137) 전국 모든 종목의 체육시설을 조사하기에는 여전상 한계가 있어 2024년 4월 기준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 개

로 예약정책 및 예약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공공테니스장의 상당수가 여전히 특정 동호회 위주로 운영하면서 일반 주민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테니스장의 65.4%가 특정 동호회에 우선 예약이 가능하도록 운영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공공테니스장을 특정 동호회에 우선적으로 예약을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강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의 경우 총 3개 코트의 예약가능시간인 89시간¹³⁸⁾의 83.1%(74시간)를 ‘대내’ 등 24개 동호회에 우선 배정하는 등 [표 39]와 같이 18개 자치구는 34개 테니스장(전체 52개 중 65.4%)에 대하여 특정 동호회에 우선 예약을 허용하고 있었다.

[표 39] 서울특별시 공공테니스장 예약정책 현황(2024년 4월 기준)

(단위: 개)

우선 예약 허용 여부	자치구(공공테니스장)	개수
특정 동호회 우선예약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북(오동근린공원), 관악(관악구민운동장), 광진(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금천(독산), 노원(마들·불암산·수락산·초안산스포츠타운), 도봉(다락원체육공원),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장평근린공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중랑천체육시설), 동작(동작주차공원), 마포(망원나들목, 망원유수지), 서대문(가좌, 가좌다목적구장, 혼저, 흥은), 서초(내곡동체육시설, 양재시민의숲), 성북(월곡, 정릉), 송파(송파, 오륜), 양천(목동), 영등포(대림운동장, 양평누리), 용산(용봉근린공원 한남), 은평(은평구민센터, 장미테니스장), 종로(삼청), 종량(용마폭포공원, 종량구립) 	34
특정 동호회 우선예약 불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강남세곡체육공원, 대치유수지, 봉은, 포이), 강동(강일, 명일), 강서(우장산, 황금내근린공원), 구로(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신도림), 동작(대방테니스장), 송파(오금공원, 잠실유수지), 서초(반포종합운동장), 성동(마장, 응봉), 종(손기정문화체육센터) 	18
합계		52

자료: 서울특별시 자치구 제출자료 재구성

나) 일부 공공테니스장의 경우 특정 동호회에 90% 이상 우선 예약 허용 동대문구는 이문체육문화센터 테니스장에 대해 2개 코트의 모든 시간대를

수(체육시설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서 조회)가 가장 적은 서울특별시 관내 테니스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4년 4월 개장하였거나 공사 중인 테니스장은 제외함

138) 3개 코트 하루 16시간 토·일요일 총 96시간($3 \times 16 \times 2$) 중 개인교습시간(7시간)을 제외한 시간(이하 산출방식 같음)

‘**다다**’ 등 9개 동호회에 배정하는 등 [표 40]과 같이 동대문구 등 5개 자치구는 5개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예약가능시간의 90% 이상을 특정 동호회에만 우선 배정함으로써, 특정 동호회 소속이 아닌 일반 시민은 예약가능시간의 10% 이하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표 40] 특정 동호회의 우선 예약률이 90% 이상인 공공테니스장 현황

(단위: %)

연번	자치구	테니스장	특정 동호회 우선 예약률
1	동대문	이문체육문화센터	100
2	서대문	가좌다목적구장	93.8
3	성북	정릉	92.9
4	마포	망원나들목	91.7
5	동작	동작주차공원	90

자료: 서울특별시 자치구 제출자료 재구성

다) 특정 동호회 위주로 전화·방문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운영

52개 공공테니스장의 온라인 예약시스템 사용 여부와 주말 및 공휴일 예약률¹³⁹⁾을 점검한 결과, [별표 8] “서울특별시 공공테니스장의 예약시스템 사용 여부 및 예약률(주말, 공휴일 기준)”과 같이 온라인 예약시스템(자체 시스템 또는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¹⁴⁰⁾ 등을 도입한 42개 공공테니스장의 예약률 평균은 96.4%로서 전화나 방문 등으로만 예약하는 10개 공공테니스장의 예약률 평균인 81.7%보다 약 14.7%p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대문구는 [표 41]과 같이 관내 가좌테니스장과 홍은테니스장의 전체 예약률이 각각 63.8%, 37.6%로 높은 수준이 아닌데도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

139) 2023년 9·10·11월 및 2024년 3·4·5월, 이하 같음

140)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체육시설, 공간시설, 문화체험, 교육강좌 등)를 시민들이 조회, 예약 및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며, 민간 위탁 공공서비스도 시스템 활용 가능

입하지 않고 전화 또는 방문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테니스장을 운영함에 따라 위 2개 공공테니스장의 일반 주민 예약률은 각각 1.3%, 6.3%에 불과하는 등 일반 주민의 공공테니스장 예약 접근성이 저하되어 있었다.

[표 41] 서대문구 가좌테니스장 및 흥은테니스장 운영 현황

(단위: %)

연번	자치구명	테니스장명	예약방식	특정 동호회 우선 예약률(A)	일반 주민 예약률 (B)	전체 예약률 (A+B)
1	서대문	가좌	전화	62.5	1.3	63.8
2		흥은	전화/방문	31.3	6.3	37.6

자료: 서대문구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동호회 위주로 이용하도록 하여 일반 주민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있었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5. 8.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발표하고도 실태 점검은 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한 후 시민 민원을 해소해달라는 의견을 제시¹⁴¹⁾하였을 뿐 구체적인 매뉴얼을 시달¹⁴²⁾하거나 공공체육시설 관련 보조사업과의 연계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개정 시 동호회 이용이 많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적정한 동호회 우선 예

141) 고양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테니스장에 대하여 현장 점검 및 자자체 담당자 등과 회의 실시

142)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하여 2023년 12월 공정한 예약방식 등을 채택하는 일부 공공체육시설을 우수 사례(60~62쪽)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는데, 위 매뉴얼의 제목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이나 그 내용은 주로 국민체육센터(공공체육시설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실내종합체육시설)에 국한된 것이고, 위 우수 사례 외 예약 현황 공개 및 예약시스템 운영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관련된 내용은 없음

약 비율을 정하고, 동호회가 독점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감점 조치하는 등 공정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원칙 및 시설 예약 현황을 공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공공체육시설 관련 보조사업에 반영하여 사후관리하는 등 일반 주민이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다

규정 미정비 등으로 부적격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으로 채용·근무

1) 업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제12조 등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체육지도자¹⁴³⁾ 자격증을 발급(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고, 결격사유¹⁴⁴⁾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3항 등에 따라 학교의 학교운동부·체육교육과정·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감독(시·도교육청에 위임)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두거나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두고 있다.

2) 시·도교육청 규정 미정비 등으로 부적격자를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으로 채용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이라 한다)를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43)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 중 하나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14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같은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학교운동부¹⁴⁵⁾ 등의 장은 선수·체육지도자 등과 채용 계약(재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체육지도자 등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축·운영(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징계정보시스템¹⁴⁶⁾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 등과 채용 계약(재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정비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채용과 관련하여 일선 학교로 하여금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 등을 마련하였는지 점검한 결과, [표 42]와 같이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¹⁴⁷⁾은 관계 규정 또는 지침 등에 학교운동지도자로부터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는 내용 등을 반영하고 있었으나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관련한 관계 규정 또는 편람 등을 마련하면서도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며,

145)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1항의 ‘운동경기부’에 대해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고 하여 운동경기부의 개념을 재정의(2022. 8. 11. 시행)

146)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체육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음

147)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계획”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관리 계획”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지침”에, 충청남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교운동부 운영 안내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계획”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지침”에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은 신규 채용계약을 할 때에만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할 뿐 재계약을 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때에는 징계 관련 증명서와 관련된 내용을 관계 규정 등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시·도교육청별 징계 관련 증명서 제출 규정 및 매뉴얼 마련 현황

시·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규정			스포츠강사 ²⁾ 관련 규정 (최초계약 또는 재계약 시)
	신규 채용계약 시	재계약 또는 무기계약 전환 시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을 시 ¹⁾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제주	O	O	X	X
대구, 경기			해당없음	
대전, 전북	X	X	X	X
서울, 울산, 세종, 전남			해당없음	
광주, 충북, 경북	O	X	X	X
경남			해당없음	

주: 1. 부산 등 10개 교육청 소속 학교 중에는 다른 기관(시·군·구체육회 등)으로부터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파견받는 사례가 있으며, 대구 등 7개 교육청 소속 학교들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파견받지 않음
2.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들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스포츠강사를 파견받지 않음

자료: 17개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시·군·구체육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파견받을 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를 채용할 때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로부터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관계 규정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대구고등학교는 2021. 5. 26. 강제추행으로 벌금형(7백만 원)을 받은 D를 2022. 4. 12. 럭비부 지도자로 채용(단기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표 43]과 같이 6개 학교는 성범죄 등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6명으로부터 징계 관련 증명서

를 제출받지 않고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으로 채용하거나 파견받았고, 2024년 6월 현재에도 6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으로 채용하거나 파견받은 현황

연번	시·도 교육청	학교 (파견근무인 경우, 파견을 보낸 기관)	종목 ¹⁾	성명	학교 근무기간 (2024년 7월 기준)	최근 계약연도 (계약기간)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일	자격취소 사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각 호)	증명서 확인 관련 규정 현황([표 42])
1	경북	대학교등학교	럭비	D	2014년 1월~ 현재	2022년 (무기계약)	2021. 5. 26.	성범죄 벌금형 (제4호 ²⁾)	무기계약 전환 시 확인 규정 없음
2	강원	대학교등학교 (대체육회)	배구	E	2023년 6월~ 현재(파견 근무)	2024년 (1년)	2020. 12. 23.		파견받을 시 확인 규정 없음
3		대학교등학교 (대체육회)	레슬링	F	2017년 9월~ 현재(파견 근무)	2024년 (1년)	2022. 12. 22.		
4	전북	대학교초등학교	태권도	G	2014년 3월~ 현재	2023년 (1년)	2022. 12. 2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제3호 ³⁾)	재계약 시 확인 규정 없음
5		대학교 등	스포츠 강사	H	2020년 3월~ 현재	2024년 (1년)	2023. 1. 19.		
6	충북	대학교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I	2023년 3월~ 현재	2024년 (1년)	2020. 6. 11.		계약 시 확인 규정 없음 (스포츠강사)

- 주: 1. 종목명이 기재된 경우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이며, '스포츠강사'라고 기재된 경우는 스포츠강사임(이하 같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료: 4개 시·도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교육부는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3차례 시·도교육청에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문 등으로 안내만 하고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규정 또는 업무매뉴얼 등을 정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 필요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및 제12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계 3,647명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으로 채용된 이후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적기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한 시점과 자격취소 정보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정보시스템에 등재되는 시점의 차이¹⁴⁸⁾로 인하여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채용 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서로 협력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및 유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으로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근무 중인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 시점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었으나 2024년 6월 기준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148) 처분일이 2023. 12. 28.부터 2024. 2. 28.까지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 처분 정보가 2024. 2. 29. 징계정보시스템에 등재되는 등 자격취소 처분 시점과 징계정보시스템 등재 시점에 차이가 있음(처분대상자별 처분서의 송달시점이 달라 처분일도 다름)

우선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대태**중학교는 2022. 7. 1.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J와 씨름부 지도자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중인 같은 해 12. 22.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해 위 사람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표 44]와 같이 5개 학교는 채용 시점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5명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근무기간 중에 위 사람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2024년 6월 현재까지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었다.

[표 44] 자격취소된 체육지도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으로 근무 중인 사례

연번	시·도 교육청	학교	종목	성명	학교 근무기간 (2024년 7월 기준)	최근 채용계약일 (계약기간)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일	자격취소 사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각 호)
1	충남	대태 중학교	씨름	J	2022년 7월~ 현재	2022. 7. 1. (무기계약)	2022. 12. 22.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제3호)
2		대파 중학교	태권도	K	2015년 1월~ 현재	2019. 2. 28. (무기계약)	2020. 6. 2.	
3	경기	대하 고등학교	태권도	L	2013년 3월~ 현재	2023. 12. 13. ('24년 3월부터 1년)	2023. 12. 28.	
4	경남	대가 고등학교	야구	M	2024년 3월~ 현재	2024. 2. 26. ('24년 3월부터 1년)	2024. 2. 28.	
5	전남	대나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N	2012년 3월~ 현재	2022. 2. 22. (무기계약)	2024. 2. 28.	

자료: 4개 시·도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대태**중학교는 2024. 2. 28. O와 레슬링부 지도자 계약(기간: 2024년 3월부터 1년)을 체결하고 나서 위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정보가 징계정보시스템에 등재¹⁴⁹⁾된 2024. 2. 29.부터 같은 해 6월 현재까지

149) O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벌금형(7백만 원)을 받아 2024. 1. 19.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가 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정보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4. 2. 22. O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정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통보하였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같은 해 2. 29. 위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 등재함. 이에 학교는 O로부터 징계 관련 증명서(발급일: 2024. 2. 7.)를 제출받았으나 증명서에 자격

위 사람의 자격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선 학교가 채용 계약을 할 때 징계 관련 증명서를 확인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기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 각 학교에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유무를 확인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강조하여 안내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하여 적격인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채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육부장관은

- ① [“2) 항”과 관련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를 채용하거나 파견받을 때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시·도교육청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취소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채용 계약을 체결함

을 마련하고

② [“3) 항”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및 유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으로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③ [“2) 항” 및 “3) 항”과 관련하여]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2024. 6. 24.부터 2024. 12. 30. 사이에 대학교 등 12개 학교([표 43]의 6개 학교, [표 44]의 5개 학교 및 대중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D 등 12명에 대하여 각각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견을 종료하는 등으로 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교육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 항”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및 유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으로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제4절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분야

1. 실태 및 세부 감사중점

가. 세출예산 집행 및 내부통제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출예산 등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표 45]와 같이 본부 및 19개 소속기관의 지출관 등 회계직공무원을 지정하고 있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500만 원 미만의 관서운영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2024. 7. 19. 현재 95명(본부 25명, 소속기관 70명)의 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45]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지정 직위

구분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본부	소속기관	본부	소속기관
지정 직위	운영지원과 사무관 또는 서기관	운영지원 부서 사무관 또는 서기관	실·국 주무과 사무관 또는 서기관	당해 관서의 장에게 임명권 위임
관직 수	2개	17개 ^{주)}	25개	-

주: 소속기관 중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지출관은 동일하므로 19개 소속기관의 지출관은 17명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조에 따라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등을 대상으로 본부 감사관실을 통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출관의 회계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감사관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관서운영경비가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 계좌 입출금 거래가 적정한지 등 경비 지출업무의 적정성

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본부 실·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18개 소속기관 중 10개에 대해서만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서운영경비 집행업무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나. 소속 공무원의 영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년(날짜 미상) 근무시간 내 과도한 외부출강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겸직허가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 정한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월 본부 부서 및 소속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 겸직허가 내부기준」과 “공무원 겸직허가 제도 안내 자료” 등을 첨부한 “겸직허가(외부출장 포함) 신청 안내” 공문을 시달하여 겸직허가 대상 업무, 겸직허가(외부강의) 기준을 안내하는 등 겸직을 희망하는 직원에게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표 46]과 같이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 789건, 외부강의 등 신고 10,628건을 승인하였다.

[표 46]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겸직허가	789	171	132	186	148	152
외부강의	10,628	1,698	1,430	1,780	2,804	2,91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 보조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세출예산 6조 7,408억 원 중 4조 3,119억 원 (64.0%)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표 47]과 같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47] 문화체육관광부 세출예산 및 보조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출예산	59,233	64,803	68,637	73,968	67,408
보조사업 예산	38,101 (64.3%)	41,154 (63.5%)	43,467 (63.3%)	46,041 (62.2%)	43,119 (64.0%)
보조사업 수	38,417	36,721	39,850	37,904	35,26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교부율은 [표 48]과 같이 2019년 92.1%에서 2023년 98.6%로 높아지고 있고, 보조금 집행률은 2019년 88.4%에서 2020년 76.8%로 대폭 낮아진 후 2023년 85.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현액	39,025	43,431	47,300	47,873	43,735
교부액 (교부율)	35,948 (92.1%)	42,563 (98.0%)	45,950 (97.1%)	47,265 (98.7%)	43,113 (98.6%)
집행액 (집행률)	31,761 (88.4%)	32,667 (76.8%)	37,332 (81.2%)	39,620 (83.8%)	36,836 (85.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라. 세부 감사중점

문화체육관광부는 본부 및 18개 소속기관에 95명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두고 있으나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관하여 자체감사 이외에 적정한 내부통제 수단이 없어 관서운영경비 횡령 등 회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박물관, 미술관 등 전문성이 높은 18개 소속기관의 특성상 소속 공무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강의 등 영리업무를 요청받을 여지가 많으며, 전체 예산 중 보조사업의 비중이 상당하고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액이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많은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적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영리업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2. 문제점

가

허위 지출결의 등을 통한 공금 횡령 및 관리·감독 소홀

1) 사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 1-5. 나. 2)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지정하여 건당 500만 원¹⁵⁰⁾ 이하의 운영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고 있다.

2) 관서운영경비 및 수입금 횡령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고금 관리법」¹⁵¹⁾ 제23조에 따르면 세출금의 지출은 채권자 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은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수입금출납직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고은행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보조자인 회계업무담당자는 일반수용비 등 세출예산을 지출할 사유가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등으로 공금을 횡령해서는

150)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

151)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 I. 1.: 대학회계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예술종합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산 총칙」,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적용하고, 위 법령 및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고 관련 법령을 준용함

아니 되고, 전형료 등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모두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원 P152)¹⁵²⁾는 2017. 9. 4.부터 2022. 3. 12.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에서, 2022. 3. 13.부터 2024. 7. 12.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에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등 관서운영경비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과 및 [■원의 부서운영비 및 법인카드결제 계좌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

(1) 관서운영경비 계좌를 이용하여 횡령

(가) 부서운영비 계좌를 활용한 허위 지출 및 횡령

위 사람은 [■원에서 근무할 당시인 2023. 7. 25. 사무용품을 구입할 계획이 없는데도 2,450,000원 상당의 “L자화일 등 각종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¹⁵³⁾와 2,450,000원을 [■원 부서운영비 계좌¹⁵⁴⁾로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 요청서와 지출결의서¹⁵⁵⁾를 기안하여 같은 날 [■원 [■실장(Q)의 결재를 받고 나서 같은 날 부서운영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은행 [■동 지점 ATM기에 2,450,000원¹⁵⁶⁾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P는 [■원 및 [■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9. 1. 22.부터 2024.

2. 15.까지 [별표 9] “부서운영비 계좌로 송금한 관서운영경비 허위 지출 명세”와

152)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8. 23. P를 직위해제함

153) 공문 제목을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재료 구입 지급(사무용품)”으로 하고, 불임 문서에 “카드매출전표 및 거래명세서 각 1부(따로 불임)”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공문 내용을 볼 때 법인카드결제대금 지급으로 보이도록 함

154) [■은행 계좌

155) 지출요청서 및 지출결의서 전명: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재료 구입 지급(사무용품 등)

156) 2023. 7. 25. 현금 출금액은 2,470,000원으로, 2,450,000원과의 차액 20,000원은 같은 해 7. 11. 473,000원을 허위로 지출하여 4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과 관련한 금액임

같이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을 소모품을 구입한다는 등의 사유로 84건의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원 및 □과 부서운영비 계좌¹⁵⁷⁾로 이체한 계 59,144,840원¹⁵⁸⁾을 2019. 1. 22.부터 2024. 4. 8. 사이에 119차례¹⁵⁹⁾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의 카드대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법인카드 결제계좌를 활용한 허위 지출 및 횡령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관서운영경비로 지출되는 법인카드 사용 건의 경우 회계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재정회계시스템¹⁶⁰⁾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법인카드 사용 정보를 선택하여 지출요청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 시스템을 통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결재를 상신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 지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P는 2023. 9. 5. 주식회사 □□로부터 프린터 토너 25개를 납품받고 다음 날인 9. 6. 정상적인 지출결의를 거쳐 토너 구입대금 4,167,600원을 위 업체 계좌에 송금을 완료하였는데도, 마치 법인카드로 결제한 토너 구입대금(4,167,000원)이 있는 것처럼 2023. 9. 6. 지출요청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원 실장(Q)의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P는 2023. 9. 7. □원 관서운영경비 계좌에서 위 4,167,000원을 □원 법인카드 결제계좌¹⁶¹⁾로 이체한 후 □□은행 □동 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

157) □□은행 계좌

158) □과 33건 32,385,650원, □원 51건 26,759,190원

159)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부서운영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곧바로 같은 금액을 출금한 경우가 있고, 며칠 지나 한꺼번에 출금하거나 나누어 출금한 경우가 있는 등 허위 지출과 현금 출금 횟수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160)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산·회계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서 예산관리, 재무회계, 회계결산, 계약관리, 전자결재, 시스템관리 등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161) □□은행 계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P는 □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2022. 4. 28.부터 2024. 4. 17.까지 [별표 10]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송금한 관서운영비 지출 명세”와 같이 재정회계시스템에 등록된 법인카드 사용 정보를 선택하여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이미 처리된 결제 내역과 같은 금액을 허위로 지출결의서에 입력하거나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관계없는 금액을 지출결의서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 122건의 허위 공문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원 □실장의 결재를 받은 후 □원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계 53,647,088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P는 2022. 7. 12.부터 2024. 4. 17.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15차례에 걸쳐 계 46,828,14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3차례에 걸쳐 계 5,500,000원을 □원 부서운영비 계좌¹⁶²⁾ 등으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 52,328,14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수입금 등 횡령

또한, P는 □과 전형료 계좌¹⁶³⁾를 관리하면서 2018. 8. 5.부터 2021. 9. 29.까지 예술전문사¹⁶⁴⁾ 외국인 전형료 3,359,851원을, 2021. 9. 1.부터 2021. 9. 2.까지 과다하게 지급된 시험감독관 수당 계 296,4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162) 2022. 11. 15. □원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300,000원을 □원 부서운영비 계좌(□□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원 별도계좌(□□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22. 11. 15.과 12. 6. 각각 300,000원, 700,000원, 계 1,000,000원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22. 11. 16.과 2023. 6. 14. □원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각각 1,500,000원, 3,000,000원을 □원 부서운영비 계좌로 이체한 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함

163) □□은행 계좌

164)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에 상당하는 2년제 및 3년제의 교육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이수하고 예술전문사 증서를 취득한 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2조에 따라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 학위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받게 됨

그런데 P는 위 금액을 세입처리하지 않은 채 2019. 1. 22. 대과 전형료 계좌에서 568,472원을 대과 부서운영비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해 1. 24. 부서운영비 계좌 잔액 21,528원을 포함한 59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2019. 12. 13.부터 2021. 11. 11.까지 4차례에 걸쳐 대과 전형료 계좌에서 계 2,495,851원을 현금으로 출금¹⁶⁵⁾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P는 대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9. 1. 22.부터 2021. 11. 11. 사이에 5차례 수입금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계 3,085,851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항 나)”와 같이 P는 혀위 지출결의나 공금 횡령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자들이 공문서나 지출결의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서 소관 계좌도 점검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9. 1. 22.부터 2024. 4. 17.까지 관서운영경비와 수입금 등 계 114,558,831원을 횡령하였다.

3) 회계집행업무 관리·감독 소홀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은 국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세출예산 등에 관하여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할 때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지출이 정당한지를 조사하여

165) 2019. 12. 13. 584,883원, 2020. 11. 27. 560,000원, 2021. 9. 15. 1,267,400원, 2021. 11. 11. 83,568원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했고, 소관 예금계좌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금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한국예술종합학교 □과 및 □원 소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R 등 6명¹⁶⁶⁾은 관서운영경비 지출담당자인 P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지출요청서와 지출결의서의 결재를 요청받고도 법인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결재하였고, P가 관리하고 있었던 법인카드 및 부서운영비 등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서 출납업무와 계좌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2)항”과 같이 P가 공금 114,558,831원을 횡령하는 결과를 막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① 관계기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출문서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계관계직원을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166) P가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수입금을 횡령하였을 당시 □과 과장 또는 □원 실장으로 재직하였던 S(2017. 9. 4.~2019. 12. 31.), T(2020. 4. 13.~2021. 12. 30.), U(2021. 10. 22.~2022. 4. 30.)는 퇴직하였으며, V(2022. 5. 1.~2023. 4. 9.)는 2023년 10월 □□부로 전출하여 재직 중이고, Q(2023. 4. 10.~2023. 10. 29.)는 □□실에, R(2023. 10. 30.~2024. 4. 28.)은 □□과에 재직 중임

P는 허위 지출결의 및 공금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공금 계 114,558,831원을 횡령한 P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라 과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허위 지출결의 등을 통해 관서운영경비 등 공금을 횡령한 P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과면)하고(징계)

* P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등),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고발 조치

②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P는 횡령금액 114,558,831원을 2024. 8. 21. 반환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며[통보(시정완료)]

③ 앞으로 관서운영경비를 허위로 지출하거나 관서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으로 출금함으로써 공금이 횡령되는 일이 없도록 회계집행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R, Q, V)에게는 주의를 촉구
(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해서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나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없이 영리행위 수행

1) 사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8조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대한 복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2)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조 및 제26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뚜렷한 영리업무(이하 “금지대상 영리업무”라 한다) 등에 종사함으로써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금지대상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이하 “겸직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9장에 따르면 공무원은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¹⁶⁷⁾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겸직허가 내부기준」¹⁶⁸⁾에 따르면 외부 연구활동 등

167) 계속성 기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168)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무시간 내 과도한 외부출장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과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0년에 위 기준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안내

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신청기간 중 1건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러 개의 외부 연구활동에 동시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동연구원 이하의 직위만 가능할 뿐 책임연구원급의 직위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구활동이 수반된 보고서나 논문 작성 등이 ‘외부 연구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금지대상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2건 이상의 영리업무(외부 연구활동)를 동시에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책임연구원급 직위로 수행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⑩과 과장 W는 2020. 1. 21.부터 2023. 2. 26.까지 ⑨과에서 상설·기획 전시 업무 등을, 2023. 2. 27.부터 2024. 6. 30.까지 ⑧과에서 세계 및 국내 민속의 조사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⑨과가 반기마다 통보한 “겸직허가 신청 안내” 공문을 열람¹⁶⁹⁾하였고, 2020년 문화재청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2020. 4. 24. ⑨과에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등 영리 행위에 대해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21년 3월경(날짜 미상) ⑨과 대학교 교수 X로부터 “① ② 시 역사 문화와 생태관광 연구” 용역에 참여해 줄 것을 개인적으로 요청받아

169) W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 하반기를 제외하고 “겸직허가 신청 안내” 공문을 모두 열람하였으며, 해당 공문들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겸직허가 내부기준」이 첨부되어 있음

이를 승낙한 후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위 용역과 관련한 원고를 작성·제출하여 4,778,682원을 지급받았는데도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등 [표 49]와 같이 2021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관사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4개 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1개월 동안 용역에 참여하거나 연구활동이 수반된 원고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겸직허가도 없이 총 16건의 영리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대가로 사례금 계 63,023,322원을 지급받았다.

[표 49]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영리업무를 수행한 명세

(단위: 원)

연번	영리업무 내용	주관기관명	영리업무 수행기간	영리업무 수행이 중복된 기간	사례금
1	“○○시 역사 문화와 생태관광 연구” 용역 참여	관사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년 4~9월(5개월)		4,778,682
2	“-” 원고 작성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년 4~8월(4개월)		1,150,000
3	“(으) 자료 연구 수집 용역” 참여	-	2021년 5~8월(3개월)		5,400,000
4	“-” 도서 집필	-	2021년 6~9월(3개월)		2,000,000
5	“-” 용역 참여	-	2021년 8~11월(3개월)	2021년 4~11월 (7개월)	2,500,000
6	“-” 집필 협약을 체결하여 원고 작성	-	2021년 8~12월(4개월)		3,000,000
7	전시장 내부 전시 자료 제공 및 자문	-	2021년 9~11월(2개월)		3,000,000
8	“-” 용역의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용역 업무 수행	-	2021년 9~11월(2개월)		3,000,000
9	- 용역 업무 수행	-	2022년 6~8월(2개월)		1,200,000
10	“- 보고서” 중 “-” 분야 등 작성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022년 6~8월(2개월)	2022년 6~8월 (2개월)	4,690,640
11	“(으)의 마을문화 조사·기록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 수행(책임연구원급)	관아문화원	2022년 8~12월(4개월)		13,000,000
12	“-” 보고서 내 “-” 원고 작성	-	2023년 4~9월(5개월)		1,050,000
13	“-”에 참여하여 “-” 등 원고 작성	-	2023년 4~12월(8개월)		1,754,000
14	“-” 원고 집필 계약을 체결하여 “-” 원고 작성	-	2023년 6월 ~2024년 5월 (11개월)	2023년 4~12월 (8개월)	1,500,000
15	“-”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 원고 작성	-	2023년 7~9월(2개월)		2,000,000
16	“(으)의 마을문화 조사·기록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 수행(책임연구원급)	관아문화원	2023년 8~12월(4개월)		13,000,000
계					63,023,32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주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더구나 위 사람은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시 역사 문화와 생태관광 연구”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 자료 연구 수집” 용역(기간: 2021년 5~8월)을 비롯하여 6건의 영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위 16건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2~6건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겸직허가 내부기준」에서 정한 기준(1건 이상 외부 연구활동 수행 금지)을 위반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2022년과 2023년 7~8월경(날짜 미상) 각각 [] 문화원 Y 연구원으로부터 “○○의 마을문화 조사·기록 사업”¹⁷⁰⁾을 수행하여 줄 것을 개인적으로 요청받아 2022. 8. 1.과 2023. 8. 28. 각각 [] 문화원과 위수탁 협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후 사진 촬영, 자료수집 및 인터뷰 등을 위해 4~5명을 고용하는 등 위 사업책임자로서 약 4개월간¹⁷¹⁾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각각 13,000,000원, 계 26,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겸직허가 내부기준」에서 정한 기준(책임연구원급 연구활동 수행 금지)을 위반하였다.

3) 외부강의 미신고 및 근무상황 신청 없이 외부강의 수행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¹⁷²⁾이라 한다)을 하고 사례금을 받을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170) 2022년에는 ○리, 2023년에는 ○리를 각각 조사하였으며, 사업내용은 ① 마을기록사업을 위한 사전 회의, ② 마을 문화자원의 조사, 수집, 채록 및 정리 등 마을지 집필, ③ 마을 문화자원 아카이브를 위한 마을 문화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임

171) 2022년 8~12월 및 2023년 8~12월

172) “외부강의 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¹⁷³⁾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며¹⁷⁴⁾,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신고 없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근무상황을 신청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W는 2018. 10. 30. 14:00~16:00 “2018년 [박물관] 하반기 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④” 강의를 하기 전 같은 해 10. 26.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외부강의를 신고하는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건의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여 외부강의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21. 6. 10. [라]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⑤아카데미 강연을 요청받은 후 같은 해 10. 19. 경상북도 ⑥회관에서 “⑦의 정체성”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나서 그 대가로 사례금 526천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표 50]과 같이 2021. 10. 19.부터 2023. 11. 15.까지 개인적으로 요청받은 18건의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사례금 계 8,514천 원을 수령하였는데도 외부강의를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우며 외부강의를 많이 신고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2022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173)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음

174) 실무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결재’는 신고자의 사전 신고 및 결재자의 결재로 이루어지는 1회의 절차임[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의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및 변경’ 기능 사용]

등의 사유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표 50] 외부강의 등 미신고 명세

(단위: 천 원)

연번	외부강의 등 행사명(발표주제 또는 행위)	일시	주관기관	사례금
1	㊂아카데미 (⊕의 정체성)	2021. 10. 19.(19:00~21:00)	라자원	526
2	- (토론)	2021. 11. 27.(14:40~17:10)	-	470
3	- (-)	2021. 12. 3.(13:00~16:00)	-	1,000
4	-	2022. 5. 12.(10:00~12:00)	-	600
5	(-)	2022. 8. 17.(14:00~16:00)	-	400
6	-	2022. 6. 23.(10:00~12:00)	-	400
7	(-)	2022. 9. 14.(14:00~16:00)	-	400
8	- (-)	2022. 6. 28.(15:30~17:30)	-	500
9	- (-)	2022. 9. 1.(14:00~17:15)	-	1,800
10	- (-)	2022. 10. 19.(19:00~21:00)	-	468
11	- (-)	2022. 11. 16.(15:10~16:00)	-	250
12	㊂을 위한 전문가 포럼(토론)	2022. 12. 16.(15:00~18:00)	라[치]문화원	300
13	- (-)	2023. 4. 11.(15:00~17:00)	-	400
14	- (-)	2023. 7. 27.(14:00~16:30)	-	150
15	㊂ 연구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자문)	2023. 9. 14.(14:00~15:30)	마[나]대학교	300
16	- (자문)	2023. 10. 18.(16:00~17:30)	-	100
17	- (토론)	2023. 10. 27.(14:00~18:00)	-	150
18	⊕ 관련 자문회의(자문)	2023. 11. 15.(16:00~17:00)	마[나]센터	300
계				8,5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주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더구나 W는 2022년 11월경(날짜 미상) 라[치]문화원 Z 박사로부터 “⑧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출 것을 요청받고서 같은 해 12. 16.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국립중앙박물관과 라[카]미술관의 전시 사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승인받고 나서 같은 날 오전에 출장 업무를 수행한 후 근무상황을 변경하지 않은 채 당일 오후 무단으로 출장 지역을 이탈하여 15:00부터 18:00까지 강원특별자치도 ⑨⑩시에 소재한 라[치]문화

원에서 개최된 위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표 51]과 같이 3회에 걸쳐 연가 등 적정한 근무상황 조치 없이 근무지 및 출장지를 이탈하여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고 사례금 계 900천 원을 수령하였다.

[표 51] 근무지 및 출장지를 이탈하여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명세

(단위: 천 원)

연번	외부강의 등 행사명	주관기관(행사지역)	일시	사례금	외부강의 등 무단 수행 내용
1	Ⓐ을 위한 전문가 포럼(토론)	라재문화원 (강원특별자치도 Ⓐ시)	2022. 12. 16. 15:00~18:00	300	▪ 전시 시례 조사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박물관 출장(9시~18시)을 승인받고, 오전에는 박물관 출장 업무를 수행한 후 오후에 춘천시로 이동하여 포럼 참석
2	Ⓑ 연구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마대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 9. 14. 14:00~15:30	300	▪ 코로나19 확진을 사유로 병가(9.12.~9.15.) 중인데도 자문회의 참석
3	⊕ 관련 자문회의	마대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 11. 15. 16:00~17:00	300	▪ 사무실(서울특별시 소재)에서 근무하다가 외출 등 근무상황을 상신하지 않고 사무실을 이탈하여 자문회의 참석
계				9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주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신고 대상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W는 집필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며 영리 업무 관련 신고 기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신고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다수의 연구활동 및 외부강의 등 영리행위에 종사하면서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안내 공문을 열람하였고, 이전에도 외부강의를 신고한 적이 있는 등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W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겸직허가 신청 및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고 적정한 근무상황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한 W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정한 근무상황 조치 없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W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 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다

예치형 보조사업 정산업무 소홀

1) 업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국가재정법」 제4조와 제5조 등에 따라 보조금 재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특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관리¹⁷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표 52]와 같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6조 9,08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조 5,176억 원, 아시아문화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3,857억 원을 보조사업에 교부하였고,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기금 1조 3,223억 원, 영화발전기금 1,725억 원, 지역신문발전기금 297억 원, 언론진흥기금 556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3조 433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7조 6,318억 원을 보조사업에 교부하였으며,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법 제27조 등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받는 등 정산업무를 하고 있다.

17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없이 운용·관리함

[표 5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사업 현황(2017~2022년)

(단위: 개, 억 원)

회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일반회계	7,806	10,036	7,990	9,294	9,131	9,880	11,119	11,844	12,024	13,080	9,609	14,946	57,679	69,080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139	8,214	6,845	7,770	7,599	9,263	1,956	7,284	1,740	6,476	2,580	6,169	27,859	45,176
	아시아문화도시 조성특별회계	88	465	80	437	81	542	93	820	155	935	199	658	696	3,857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3,120	1,797	4,331	1,940	4,177	2,055	4,118	2,083	3,344	2,364	3,504	2,984	22,594	13,223
	영화발전기금	441	233	428	237	425	267	851	342	470	338	468	308	3,083	1,725
	지역신문발전기금	414	55	333	44	365	48	401	44	481	52	476	54	2,470	297
	언론진흥기금	300	96	301	94	308	93	305	98	226	94	273	81	1,713	556
	관공진흥기본기금	1,823	4,360	1,876	4,031	2,270	4,369	2,216	5,309	2,424	6,240	2,330	6,124	12,939	30,433
	국민체육진흥기금	13,535	12,936	13,150	9,863	14,285	11,584	15,931	13,330	19,438	13,888	18,536	14,717	94,875	76,318
합계		34,666	38,192	35,334	33,710	38,641	38,101	36,990	41,154	40,302	43,467	37,975	46,041	223,908	240,66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2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자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20. 3. 31.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해당 보고서 제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¹⁷⁶⁾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제27조 제3항을 신설¹⁷⁷⁾하여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등 제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치형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예탁계좌에 보관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증빙을 등록해야 보조금이 집행¹⁷⁸⁾되므로 정산 또는 반납 결정을 하는 즉시 국고로 반납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관서가 예치형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적정히 처리하지 않으면 국비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치형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갖추는 한편, 보조사업실적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자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정산업무를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표 53]과 같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예치형 보조사업 중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176)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지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 6개월 이상인 경우 20%, 12개월 이상인 경우 50%까지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177) 부칙(법률 제17145호, 2020. 3. 31.)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법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이 법이 시행된 2010. 10. 1. 이후 정산보고서 등을 기한(보조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함

178) 예치형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각 보조사업의 예탁계좌가 생성되어 이 예탁계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용 건별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e나라도움 카드 등 증빙을 등록하여 거래처에 집행함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총 777개¹⁷⁹⁾의 보조사업(총사업비 8,674억 3,054만 원) 집행 잔액 1,110억 8,582만 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유를 점검하였다.

[표 53]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사업(2017~2022년) 집행잔액 미정산 내역(2024년 3월 말 기준)

(단위: 개, 만 원)

회계 구분	운영 주체	2024년 3월 말 미반납 내역		
		건수	총사업비	집행 잔액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309	26,725,870	2,465,68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7	1,477,203	140,595
기금		135	25,349,657	926,291
관광진흥개발기금		268	33,165,724	7,573,703
국민체육진흥기금		8	24,600	2,309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77	86,743,054	11,108,582
합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정산검토 지연

문화체육관광부(■국)는 “2021년 국가대표 훈련지원” 사업(총사업비: 131억 8,872만 원, 기간: 2021. 1. 1.~2022. 2. 28.)의 경우 2022. 4. 28. 보조사업자인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으로부터 집행 잔액 68억 3,434만 원이 포함된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고서 1년 11개월이 지난 2024년 3월까지 정산을 완료하지 않는 등 [표 54]와 같이 2024년 3월 말 기준 688개 보조사업(총사업비 7,836억 132만 원)에 대해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짧게는 1년 3개월, 길게는 7년 동안 정산을 하지 않아 이미 반납되었어야 할 집행 잔액 1,015억 4,694만 원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가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되지 않고 있었다.¹⁸⁰⁾

179)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4월경 감사원에 2024년 3월 말 기준 총 1,392개의 미정산 보조사업 내역(사업 기간: 2017~2022년)을 제출하였으나, 총 1,392개의 미정산 보조사업 내역 중 보조금 집행 잔액이 소액(100만 원 미만)인 총 346개의 보조사업을 점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총 1,046개의 보조사업을 점검하는 중 당초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기간이 2023~2024년인 보조사업, 보조금 부정집행으로 소송 중인 보조사업, 2024년 3월 전에 반납이 완료된 보조사업 등 총 269개의 보조사업을 제외하여 총 777개의 보조사업을 미정산 보조사업 점검대상으로 확정함

180)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4. 1.부터 감사종료일인 같은 해 7. 16.까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된 보조사업 실

[표 54] 정상 제출된 정산보고서 관련 집행잔액 미반납 보조사업(2017~2022년) 내역

(단위: 개, 만 원)

구분	2024년 3월 말 미반납 내역		
	건수	총사업비	집행 잔액
계	688	78,360,132	10,154,694
기한 내 제출	329	36,773,938	5,465,793
기한 경과 제출	359	41,586,194	4,688,9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제예술 교류 지원(2차)” 사업(총사업비 800만 원, 사업 기간: 2017. 10. 4.~10. 21.)의 경우 보조사업자인 AA로부터 보조사업 제출기한(2017. 12. 21.)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9. 1. 9. 집행 잔액 209만 원이 포함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서 2024년 3월까지 정산을 완료하지 않는 등 3개 보조사업자로부터 집행잔액 541만 원을 반납받지 않고 있었다.¹⁸¹⁾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법 제27조 제3항이 시행된 2020. 10. 1.부터 2024. 7. 16. 감사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194건의 보조사업에 대해 해당 보고서 제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등 보조사업 정 산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직보고서 관련 총 329개 미정산 보조사업(총사업비 3,677억 3,938만 원)의 집행 잔액 546억 5,793만 원 중 총 173개 보조사업(총사업비 2,167억 712만 원)의 집행 잔액 271억 2,674만 원을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았으나, 나머지 156개 보조사업(총사업비 1,510억 3,226만 원)의 집행 잔액 275억 3,119만 원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지 않았고, 지역 제출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관련 총 359개 미정산 보조사업(총사업비 4,158억 6,194만 원)의 집행 잔액 468억 8,901만 원 중 총 111개 보조사업(총사업비 2,037억 원 9,471만 원)의 집행 잔액 89억 4,742만 원을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았으나, 나머지 248개 보조사업(총사업비 2,120억 6,723만 원)의 집행 잔액 379억 4,159만 원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지 않음

18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보조사업자 AA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2019. 1. 9. 제출하였고, 점검기준일인 2024년 3월 말 이후인 2024. 5. 7. 집행 잔액 209만 원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았고, 보조사업자 주식회사 [태]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점검 기준일인 2024년 3월 말 이후인 2024. 4. 3. 제출하면서 같은 해 4. 3. 집행 잔액 186만 원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았으며, 보조사업자 [태]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점검기준일인 2024년 3월 말 이후인 2024. 5. 16. 제출하면서, 같은 해 5. 16. 집행 잔액 146만 원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음

나)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문화체육관광부(■국)는 “2019년 국가대표 훈련지원” 사업(보조사업자: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총사업비: 111억 9,370만 원, 기간: 2019. 1. 1.~12. 31.)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4년 3개월이 지난 2024년 3월까지 집행 잔액 26억 6,333만 원이 포함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는 등 81개 보조사업(총사업비 835억 8,322만 원)에 대해 보조사업실적보고서가 짧게는 1년 3개월, 길게는 6년 3개월 동안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집행 잔액 95억 1,580만 원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및 관객개발을 위한 예술 프로젝트” 사업(보조사업자: AB, 총사업비: 1,700만 원, 사업 기간: 2018. 10. 29.~2019. 3. 31.)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4년 3월까지 집행 잔액 266만 원이 포함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는 등 5개 보조사업(총사업비 16,100만 원)에 대해 보조사업실적보고서가 짧게는 1년 8개월, 길게는 6년 3개월 동안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집행 잔액 1,767만 원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 받고도 정산 검토업무를 지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예치형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일반회계 246억 5,684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억 595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92억 6,291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757억 3,703만 원, 문화예

술진홍기금 2,309만 원 등 총 1,110억 8,582만 원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 유선 전화 및 메일,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독려 조치하고, 미정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산을 통해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의 반납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CRP-Korea(큐레이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보조사업의 경우 연내 정산 및 반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포함한 단계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반환 명령 통보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 연락이 두절된 보조사업자 등의 보조금 회수를 위해 체납액 회수 업무 위탁을 추진하여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별표 11]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사업(2017~2022년) 집행잔액 미반납 명세”와 같이 반납받지 못한 총 485개 보조사업¹⁸²⁾의 집행잔액 749억 8,843만 원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조속히 반납받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18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총 769개 보조사업(집행잔액 1,110억 6,274만 원) 중 이번 감사기간 중 보조금 반납이 완료된 284개 보조사업(집행잔액 360억 7,431만 원)은 통보 내역에서 제외함

② 앞으로 보조사업 정산 검토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① [별표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사업(2017~2022년) 집행잔액 미반납 명세”와 같이 반납받지 못한 총 5개 보조사업¹⁸³⁾의 집행 잔액 1,767만 원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조속히 반납받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보조사업 정산 검토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18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총 8개 보조사업(집행잔액 2,308만 원) 중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보조금 반납이 완료된 3개 보조사업(집행잔액 541만 원)은 통보 내역에서 제외함

별표 목차

[별표 1] 호스텔업 기금 대여 및 등록 현황	135
[별표 2] 호스텔업 용도 외 운영 현황	136
[별표 3] 관광숙박시설 폐업 명세	137
[별표 4] 관광숙박 사업권 양도 명세	139
[별표 5] 호텔업 등급 미신청 사업체 명세	140
[별표 6]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을 초과한 골프장 명세(2023년 가을 기준)	141
[별표 7] 2023년 하반기 실태조사 시 10개 대중형골프장이 보고한 코스 이용료	142
[별표 8] 서울특별시 공공테니스장의 예약시스템 사용 여부 및 예약률(주말, 공휴일 기준)	143
[별표 9] 부서운영비 계좌로 송금한 관서운영경비 허위 지출 명세	145
[별표 10]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송금한 관서운영경비 지출 명세	147
[별표 11]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2017~2022년) 집행잔액 미반납 명세	150
[별표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2017~2022년) 집행잔액 미반납 명세	168

[별표 1]

호스텔업 기금 대여 및 등록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소유자	호스텔업 등록일자	대여시점	대여금	대여금 잔액
1	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 9. 23.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1,553	1,553
2	마마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 9. 23.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1,774	1,774
3	마바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 5. 25.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1,300	1,300
4	마가 ^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 10. 10.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800	-
5	나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 4. 7.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1,900	1,900
6	카카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 2. 18.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1,200	1,200
7	마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 등 4명	2019. 7. 22.	2019년 상반기	1,010	914
8	카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 8. 12.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00	2,000
9	카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 3. 19.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992	992
10	카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 5. 26.	2021년 상반기	1,200	1,200
11	카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 10. 30.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1,607	1,431
12	카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 4. 9.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1,712	1,712
13	카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 6. 16.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1,200	1,200
14	카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 등 3명	2021. 12. 20.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5,000	5,000
15	카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 11. 22.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850	850
16	나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 8. 18.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3,663	3,663
17	마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 11. 9.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120	2,120
18	마자	경기도 평택시	C	2019. 11. 25.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1,363	1,267
19	카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2. 1. 14.	2023년 상반기	27	27
계						33,271	30,103

주: 2020. 5. 11. 대여금 전액을 상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호스텔업 용도 외 운영 현황

(단위: 실, 만 원)

연번	사업장명	객실 수	확정일자 객실 수 ^(주)	임대차기간 최초, 최종	보증금	월세	예약 시스템 구축 여부	포스 시스템 구축 여부
1	마라	39	72	2021. 3. 21. 2026. 3. 1.	500 ~10,000	15~60	×	×
2	마마	30	56	2019. 2. 16. 2026. 4. 7.	500 ~6,000	35~80	×	×
3	마마	40	72	2020. 6. 20. 2026. 1. 20.	500 ~3,500	25~65	×	×
4	마가	136	157	2019. 12. 26. 2026. 2. 21.	500 ~11,000	15~95	×	×
5	나나	53	72	2021. 4. 20. 2026. 1. 13.	500 ~6,000	40~85	×	×
6	기카	54	94	2021. 3. 8. 2026. 4. 12.	500 ~22,000	15~68	×	×
7	마사	27	54	2019. 7. 19. 2025. 11. 24.	20 ~8,000	20~95	×	×
8	기하	38	37	2020. 9. 23. 2025. 5. 20.	100 ~20,000	25~70	×	×
9	기파	21	16	2024. 3. 23. 2026. 4. 19.	1,000 ~5,500	32~55	×	×
10	기자	38	54	2022. 5. 19. 2026. 2. 20.	1,000 ~5,000	45~90	×	×
11	기자	34	55	2019. 10. 27. 2026. 4. 20.	1,000 ~12,000	5~80	×	×
12	기자	38	9	2020. 11. 18. 2026. 4. 27.	1,000 ~6,000	40~58	×	×
13	기타	33	49	2020. 7. 3. 2026. 4. 27.	1,000 ~20,000	25~55	×	×
14	기마	97	159	2021. 12. 18. 2026. 3. 22.	1,000 ~16,000	10~95	×	×
15	기아	35	52	2022. 12. 3. 2026. 2. 1.	2,000 ~10,000	30~70	×	×
16	나가	62	77	2022. 8. 20. 2026. 4. 21.	1,000 ~8,000	40~100	×	×
17	마마	46	9	2023. 12. 5. 2026. 4. 14.	300 ~2,000	28~49	×	×
18	마자	83	133	2020. 1. 5. 2026. 1. 20.	300 ~7,500	12~65	×	×
19	기타	70	33	2022. 1. 25. 2024. 4. 15.	100 ~7,000	40~65	×	×

주: 호스텔업 등록일 이후부터 2024. 4. 1. 감사일 현재까지 확정일자가 부여된 객실 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관광숙박시설 폐업 명세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업종	등록일자	폐업일자	기금대여 신청연도	대여금	대여금 잔액
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관광펜션업	2023. 7. 18.	2024. 3. 25.	2022년 2023년	500	500
2	-	경기도 수원시	-	관광호텔업	2017. 1. 20.	2021. 8. 30.	2020년	50	41.6
3	-	경기도 용인시	-	한옥체험업	2019. 5. 21.	2022. 6. 29.	2020년	30	12.5
4	-	경기도 용인시	-	가족호텔업	2020. 4. 17.	2022. 3. 29.	2020년	110	64.12
5	-	경기도 평택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9. 11. 18.	2024. 1. 17.	2020년 2021년	71	57.1
6	-	경상북도 경주시	-	한옥체험업	2018. 10. 10.	2024. 3. 31.	2023년	50	50
7	-	경상북도 경주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21. 9. 14.	2022. 12. 23.	2022년	30	30
8	-	광주광역시 서구	-	관광호텔업	2014. 1. 29.	2021. 6. 24.	2020년	100	74.97
9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8. 7. 10.	2020. 8. 3.	2020년	20	16.6
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관광호텔업	2001. 3. 5.	2022. 6. 8.	2019년	568	497
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5. 1. 19.	2020. 1. 19.	2020년	25	18.72
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광호텔업	1997. 12. 30.	2022. 4. 18.	2020년	3,960	3,960
13	호텔[내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B	관광호텔업	2021. 1. 11.	2022. 9. 26.	2021년	1,200	1,000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업종	등록일자	폐업일자	기금대여 신청연도	대여금	대여금 잔액
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광호텔업	2018. 5. 14.	2021. 7. 2.	2020년	100	50
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관광호텔업	2018. 1. 31.	2022. 3. 1.	2020년	100	83.3
16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9. 9. 19.	2023. 9. 18.	2021년	20	20
17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9. 9. 5.	2021. 5. 3.	2020년	20	14.94
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21. 4. 27.	2023. 2. 1.	2021년	20	20
19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8. 2. 7.	2023. 1. 12.	2019년	20	1.66
20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7. 9. 27.	2020. 10. 13.	2020년	45	33.75
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	한옥체험업	2010. 5. 12.	2024. 1. 2.	2020년	50	37.44
22	-	서울특별시 종구	-	관광호텔업	2012. 10. 26.	2023. 5. 2.	2020년 2021년	1,813	1,495.22
23	-	서울특별시 종구	-	호스텔업	2014. 6. 20.	2021. 12. 31.	2020년	60	50
24	-	서울특별시 종구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4. 9. 25.	2020. 7. 31.	2019년	50	4.16
25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관광호텔업	2012. 2. 22.	2019. 3. 22.	2020년	30	22.5
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가족호텔업	2009. 7. 13.	2022. 12. 27.	2022년	20	20
27	-	경상남도 사천시	-	관광 호텔업	2015. 4. 17.	2022. 9. 21.	2018년	997	415
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관광 호텔업	2001. 3. 5.	2022. 6. 8.	2018년	1,568	759
계								11,627	9,349.5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4]

관광숙박 사업권 양도 명세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업종	사업자		등록일자		기금대여 신청연도	대여금	대여금 잔액
				신청 시	현재	최초	변경			
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호스텔업	-	-	2020. 9. 28.	2023. 12. 20.	2019년 2020년	1,950	1,754
2	-	경상남도 통영시	호스텔업	-	-	2019. 10. 11.	2021. 5. 21.	2019년	400	400
3	-	부산광역시 기장군	호스텔업	-	-	2019. 8. 14.	2024. 6. 4.	2019년 2023년	1,000	900
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호스텔업	-	-	2016. 1. 4.	2023. 11. 7.	2022년	1,200	1,200
5	-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스텔업	-	-	2015. 10. 2.	2023. 2. 28.	2020년	100	75
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텔업	-	-	2020. 7. 7.	2021. 3. 26.	2019년 2020년	900	900
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호스텔업	-	-	2015. 12. 17.	2024. 5. 23.	2023년	534	467.94
8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관광 펜션업	-	-	2022. 6. 15.	2024. 1. 19.	2021년 2022년	600	600
9	-	경상남도 창원시	관광 호텔업	-	-	2022. 3. 17.	2022. 3. 21.	2019년 2020년 2021년	14,205	14,205
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 호텔업	-	-	2015. 4. 1.	2023. 8. 9.	2020년 2021년 2023년	539	491
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 호텔업	-	-	2020. 8. 12.	2024. 1. 8.	2019년	4,450	4,450
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광 호텔업	-	-	2014. 3. 27.	2024. 3. 6.	2021년 2022년	3,300	3,233
13	-	충청남도 태안군	한옥 체험업	-	-	2015. 6. 18.	2023. 9. 12.	2019년 2020년	807	807
계									29,985	29,482.9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5]

호텔업 등급결정 미신청 사업체 명세

(단위: 일, 백만 원)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록일자 (유효기간 만료일)	등급심사 미신청 일수 ¹⁾	기금대여 신청연도	대여금	대여금 잔액
1	▣마 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 호텔업	2018. 1. 5.	563	2016년	1,900	1,253
2	-	경상북도 울릉군	가족 호텔업	2015. 7. 3.	944	2014년	514	257
3	-	전라남도 목포시	가족 호텔업	2013. 8. 12.	944	2018년	594	447
4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 호텔업	2017. 8. 11.	944	2016년	1,400	650
5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가족 호텔업	2017. 11. 3.	944	2018년	2,000	1,643
6	-	경상남도 산청군	가족 호텔업	2017. 5. 1.	944	2016년	5,958	4,823
7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가족 호텔업	2018. 4. 5.	944	2017년	14,000	11,678
8	-	전라남도 여수시	관광 호텔업	(2023. 7. 19.)	336	2012년	800	787.5
9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 호텔업	(2021. 7. 22.)	1,063	2020년	1,445	1,445
10	-	전라남도 장성군	관광 호텔업	(2020. 6. 21.)	1,459	2014년	1,584	350
11	-	경상북도 포항시	소형 호텔업	(2023. 7. 9.)	346	2018년	1,780	1,682
12	-	경상남도 창원시	관광 호텔업	(2023. 12. 17.)	186	2018년	6,050	3,999
13	-	경상남도 고성군	소형 호텔업	(2023. 4. 15.)	431	2020년	102	51
계							38,127	29,065.5

주: 1. 2024. 6. 19.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되, 가족호텔업의 경우 2019. 11. 19.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2년이 지난 2021. 11. 18.까지 등급결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2021. 11. 19.부터 2024. 6. 19.까지의 기간임

2. ▣마의 경우 2021. 11. 19.부터 호스텔업으로 변경등록한 2023. 6. 5.까지의 일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6]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을 초과한 골프장 명세(2023년 가을 기준)

(단위: 원)

연번	골프장명	대중형 골프장 지정일	가을 평균 코스 이용료 ^{주)}							
			주중				주말			
			평균금액 (초과금액)	9월	10월	11월	평균금액 (초과금액)	9월	10월	11월
1	마차	2023. 4. 20.	-	-	-	-	251,179 (4,179)	239,936	256,597	257,005
2	마카	2023. 4. 20.	189,413 (1,413)	183,564	196,857	187,818	-	-	-	-
3	마타	2023. 4. 28.	188,715 (715)	185,454	189,433	191,377	-	-	-	-
4	마파	2023. 4. 5.	-	-	-	-	247,531 (531)	247,787	256,564	238,241
5	마하	2023. 4. 20.	-	-	-	-	248,863 (1,863)	252,423	248,853	245,312
6	마가	2023. 4. 28.	197,648 (9,648)	180,878	205,742	206,325	255,812 (8,812)	225,659	262,147	279,631
7	마기	2023. 5. 4.	195,504 (7,504)	193,966	201,219	191,328	252,177 (5,177)	239,216	259,425	257,891
8	마자	2023. 5. 3.	198,164 (10,164)	196,552	198,977	198,962	257,461 (10,461)	244,517	259,614	268,253
9	마나	2023. 4. 20.	189,355 (1,355)	188,366	199,939	179,761	247,389 (389)	242,375	259,707	240,085
10	마다	2023. 4. 20.	188,662 (662)	191,769	191,669	182,548	-	-	-	-

주: 골프장별로 코스 이용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빈칸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임

자료: 10개 골프장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7]

2023년 하반기 실태조사 시 10개 대중형골프장이 보고한 코스 이용료

(단위: 원)

연번	골프장명	하반기(9~11월) 평균 코스 이용료							
		주중				주말			
		평균금액	9월	10월	11월	평균금액	9월	10월	11월
1	미자	-	-	-	-	245,442	237,577	250,250	248,500
2	미카	176,781	167,989	182,136	180,217	-	-	-	-
3	미타	183,058	186,290	182,575	180,308	-	-	-	-
4	미파	-	-	-	-	252,399	245,193	253,010	258,994
5	미하	-	-	-	-	246,324	245,234	249,524	244,214
6	다가	172,372	170,222	174,669	172,224	226,083	210,476	221,209	246,564
7	비가	188,274	194,333	194,349	176,139	247,203	242,296	254,783	244,530
8	나자 ^{주)}	186,166	-	188,057	184,275	246,282	-	241,643	250,921
9	비나	187,595	189,125	196,881	176,781	247,499	241,754	260,026	240,718
10	비다	187,857	191,190	191,190	181,190	-	-	-	-

주: 나자CC의 경우 9월 요금을 제출하지 않아 10월과 11월 평균으로 계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8]

서울특별시 공공테니스장의 예약시스템 사용 여부 및 예약률(주말, 공휴일 기준)

(단위: %)

연번	테니스장	자치구	예약시스템 사용 여부	예약률 ¹⁾	비고 (예약방법)
1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광진	예약시스템 사용	100	-
2	계남근린공원	구로		100	
3	신도림	구로		100	
4	다락원체육공원	도봉		100	
5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		100	
6	대방	동작		100	
7	망원유수지	마포		100	
8	내곡동체육시설	서초		100	
9	반포종합운동장	서초		100	
10	양재시민의숲	서초		100	
11	정릉	성북		100	
12	잠실유수지	송파		100	
13	목동	양천		100	
14	한남	용산		100	
15	은평구민체육센터	은평		100	
16	삼청	종로		100	
17	포이	강남		99.8	
18	중랑구립	중랑		99.6	
19	명일	강동		99.4	
20	응봉	성동		99.3	
21	강일	강동		99.1	
22	마장	성동		99	
23	월곡	성북		98.1	
24	우장산	강서		98	
25	동작주차공원	동작		96.3	
26	불암산	노원		96	
27	수락산	노원		96	
28	초안산	노원		95	
29	황금내근린공원	강서		95	
30	관악구민운동장	관악		94.9	
31	대림	영등포		93.9	
32	옹마폭포공원	중랑		93.8	
33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동대문		93.6	
34	강남세곡체육공원	강남		93	
35	장미	은평		92.9	
36	마들	노원		92	
37	봉은	강남		91.3	
38	양평누리	영등포		88.4	
39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종		87.6	
40	대치유수지체육공원	강남		86.9	
41	오금공원체육시설	송파		86.9	
42	중랑천체육시설	동대문		84.4	
예약시스템 사용 테니스장(42개) 예약률 평균				96.43	

연번	테니스장	자치구	예약시스템 사용 여부	예약률 ¹⁾	비고 (예약방법)	
43	망원나들목	마포	예약시스템 미사용 ²⁾	100	문자	
44	송파	송파		100	전화/문자	
45	오륜	송파		100	전화/문자	
46	가좌다목적구장	서대문		93.8	전화	
47	오동근린공원	강북		91.2	전화	
48	현저	서대문		85.8	전화/방문	
49	독산	금천		81.1	전화	
50	고척근린공원	구로		64.1	방문	
51	가좌	서대문		63.8	전화/방문	
52	홍은	서대문		37.6	전화/방문	
예약시스템 미사용 테니스장(10개) 예약률 평균				81.74		
테니스장 전체(52개) 예약률 평균				93.6		

주: 1. 공사로 운영하지 않은 기간 등은 제외하고 산정

2. 예약시스템 미사용 테니스장 10개 중 고척근린공원을 제외한 9개 테니스장은 특정 동호회 우선 예약 허용

자료: 서울특별시 자치구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9]

부서운영비 계좌로 송금한 관서운영경비 허위 지출 명세

(단위: 원)

연번	지출결의서 건명	금액	지출결의일자	자금이체일자
1	▣과 소모품 구입(토너)	2,840,000	2019. 1. 22.	2019. 1. 22.
2	2019학년도 11월입시 진행 물품 구입 비용 지급	1,560,000	2019. 2. 13.	2019. 2. 13.
3	▣과 특근매식비 구입	253,000	2019. 2. 19.	2019. 2. 19.
4	▣과 특근매식비 구입(국가지원금)	420,000	2019. 5. 3.	2019. 5. 3.
5	간담회 경비 지급	480,000	2019. 6. 12.	2019. 6. 12.
6	▣과 사무용품 구입비 지급	565,000	2019. 6. 20.	2019. 6. 20.
7	▣과 특근매식비 지급(5월~6월)	750,000	2019. 7. 4.	2019. 7. 5.
8	2020학년도 8월 입시 급식비 지급	735,000	2019. 9. 9.	2019. 9. 10.
9	2020학년도 10월 입시 급식비 지급 (내원, -, -, -)	639,000	2019. 10. 11.	2019. 10. 11.
10	2020학년도 10월 입시 2차 시험운영비 지급	195,000	2019. 10. 15.	2019. 10. 15.
11	2020학년도 신입생모집 11월 입시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시험운영비 지급	1,355,000	2019. 11. 7.	2019. 11. 7.
12	2020학년도 10월입시 시험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용 지급	1,250,000	2019. 11. 20.	2019. 11. 20.
13	2020학년도 11월입시 1차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시험용품 및 진행비 지급	1,385,000	2019. 12. 5.	2019. 12. 5.
14	2020학년도 11월입시 2차 급식비 지급	1,870,000	2019. 12. 20.	2019. 12. 20.
15	전산소모품 구입 지급	2,240,000	2019. 12. 30.	2019. 12. 30.
16	토너 구입	560,000	2020. 2. 20.	2020. 2. 20.
17	▣과 특근매식비 지급	153,000	2020. 2. 20.	2020. 2. 20.
18	▣과 특근매식비 지급	155,000	2020. 5. 11.	2020. 5. 11.
19	▣과 특근매식비 지급	84,000	2020. 10. 8.	2020. 10. 8.
20	2021학년도 신입생모집 8월 2차 및 10월 1차 급식비 지급	1,030,000	2020. 11. 9.	2020. 11. 9.
21	2021학년도 10월입시 2차 급식비 지급	1,856,000	2020. 12. 11.	2020. 12. 11.
22	2021학년도 11월입시 2차 급식비 지급	1,150,000	2021. 1. 26.	2021. 1. 26.
23	2021학년도 11월입시 급식비 지급	1,530,000	2021. 2. 8.	2021. 2. 8.
24	▣과 특근매식비 지급	94,000	2021. 7. 5.	2021. 7. 5.
25	▣과 특근매식비 지급	41,000	2021. 9. 15.	2021. 9. 15.
26	2022학년도 10월입시 1차 급식비 지급 (-, -, 내원, -)	865,000	2021. 10. 13.	2021. 10. 13.
27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10월입시 2차 시험운영비 지급 (-, -, -, - 포함>	1,000,000	2021. 10. 21.	2021. 10. 21.
28	2022학년도 10월입시 2차 진행용품 구입	369,000	2021. 11. 3.	2021. 11. 3.
29	2022학년도 10월입시 2차 급식비 지급 (내원, -, -)	729,000	2021. 11. 11.	2021. 11. 11.
30	2022학년도 11월입시 시험운영비 지급(-,-,내원)	450,000	2021. 12. 8.	2021. 12. 8.
31	2022학년도 11월입시 급식비 지급	2,452,250	2021. 12. 23.	2021. 12. 23.
32	▣과 특근매식비 지급	825,000	2021. 12. 23.	2021. 12. 23.
33	2022학년도 11월입시 2차 및 전문사 급식비 지급	2,505,400	2021. 12. 30.	2021. 12. 30.
	▣과 소계(A, 33건)	32,385,650		
34	내원 사무용품 구입 지급	765,000	2022. 4. 28.	2022. 4. 28.
35	2022-1 내원 - 공연 진행비 지급	42,900	2022. 6. 9.	2022. 6. 9.
36	2022-1 내원 - 소모품 구입 지급	200,000	2022. 6. 20.	2022. 6. 20.
37	2022-1 내원 - 소모품 구입 지급	114,670	2022. 7. 6.	2022. 7. 6.
38	내원 프린터 토너 구입	1,096,000	2022. 7. 29.	2022. 7. 29.
39	2022학년도 1학기 소모품 구입 지급	892,380	2022. 8. 10.	2022. 8. 10.
40	내원 프린터 토너 구입(프린터, 복합기)	1,020,000	2022. 10. 4.	2022. 10. 4.
41	내원 - 재료구입 지급	325,000	2022. 10. 7.	2022. 10. 11.
42	2022-2학기 - 여비 지급	150,000	2022. 10. 26.	2022. 10. 26.
43	2022년 2학기 - 진행비 지급	204,200	2022. 11. 1.	2022. 11. 1.

연번	지출결의서 건명	금액	지출결의일자	자금이체일자
44	2022년 2학기 – 진행비 지급	50,000	2022. 11. 3.	2022. 11. 3.
45	▣원 전임교원 전공심사 진행비 지급	161,700	2022. 12. 20.	2022. 12. 20.
46	– 재료비 구입	480,000	2023. 2. 6.	2023. 2. 6.
47	2023-1 ▣원 – 진행비 지급	148,000	2023. 3. 31.	2023. 3. 31.
48	2023학년도 ▣원 현장답사 사전 답사 진행비 지급	350,000	2023. 4. 6.	2023. 4. 6.
49	▣원 – 진행비 지급	118,000	2023. 4. 6.	2023. 4. 6.
50		70,180	2023. 4. 7.	2023. 4. 7.
51		15,490	2023. 4. 7.	2023. 4. 7.
52		19,250	2023. 4. 7.	2023. 4. 7.
53		193,000	2023. 4. 7.	2023. 4. 7.
54	▣원 – 진행비 지급	171,000	2023. 4. 7.	2023. 4. 7.
55		16,500	2023. 4. 7.	2023. 4. 7.
56	2023학년도 ▣원 현장답사 진행비 지급	370,000	2023. 4. 12.	2023. 4. 13.
57	2023-1 ▣원 – 진행비 지급	170,150	2023. 4. 28.	2023. 4. 28.
58	2023-1 – 중간 정산 지급	270,850	2023. 5. 4.	2023. 5. 4.
59	2023-1 – 진행비 지급	756,000	2023. 5. 4.	2023. 5. 4.
60	2023-1 – 진행비 지급	215,000	2023. 5. 10.	2023. 5. 10.
61	2023-1 – 진행비 중간 정산	291,100	2023. 5. 10.	2023. 5. 10.
62	▣원 –워크샵 여비 지급	250,000	2023. 5. 15.	2023. 5. 16.
63	– 워크숍 진행비 지급	276,000	2023. 5. 25.	2023. 5. 25.
64	2023-1 – 매식비 지급	304,000	2023. 6. 12.	2023. 6. 12.
65	2023-1 – 무대소품 구입 지급	3,000,000	2023. 6. 22.	2023. 6. 22.
66	▣원 프린터 토너 구입	792,000	2023. 6. 22.	2023. 6. 22.
67	2023년 ▣원 – 하계 워크숍 여비 지급	250,000	2023. 6. 22.	2023. 6. 22.
68	▣원 전임교원 채용 전공심사 진행비 지급	40,570	2023. 6. 29.	2023. 6. 29.
69	프린터 토너 구입(-)	473,000	2023. 7. 11.	2023. 7. 11.
70		450,000	2023. 7. 25.	2023. 7. 25.
71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재료 구입 지급(사무용품 등)	1,120,000	2023. 7. 25.	2023. 7. 25.
72		880,000	2023. 7. 25.	2023. 7. 25.
73	▣원 공무직 및 기간제채용 진행비 지급	92,780	2023. 8. 17.	2023. 8. 17.
74	2023학년도 2학기 개강 관련 진행비 지급	410,000	2023. 9. 12.	2023. 9. 12.
75		400,000	2023. 9. 12.	2023. 9. 12.
76	전임교원 승진심사 진행비 지급	99,500	2023. 9. 15.	2023. 9. 15.
77	2023-2 ▣원 수업재료 구입 지급	2,850,000	2023. 10. 30.	2023. 10. 30.
78	2023-2 ▣원 – 저작권료 지급	71,410	2023. 11. 14.	2023. 11. 14.
79	2023-2 ▣원 – 추진 진행비 지급	327,000	2023. 12. 8.	2023. 12. 8.
80	2023-2 ▣원 – 추진 진행비 지급	184,000	2023. 12. 8.	2023. 12. 8.
81		225,000	2023. 12. 8.	2023. 12. 8.
82	▣원 교육용 사무용품 구입 지급	4,984,000	2023. 12. 12.	2023. 12. 12.
83	▣원 복사기 드럼 구입 지급	450,000	2024. 2. 15.	2024. 2. 15.
84	2024학년도 ▣원 현장답사 사전답사 여비 지급	153,560	2024. 2. 15.	2024. 2. 15.
	▣원 소계(B, 51건)	26,759,190		
	계(=A+B)	59,144,8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0]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송금한 관서운영경비 지출 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지출결의서 건명	금액	지출결의일자	자금이체일자
1	2022-1 ▣원 - 진행비 지급	33,330	2022. 4. 28.	2022. 4. 29.
2		40,600	2022. 4. 29.	2022. 4. 29.
3		87,600	2022. 4. 29.	2022. 4. 29.
4		18,900	2022. 4. 29.	2022. 4. 29.
5		130,800	2022. 4. 29.	2022. 4. 29.
6		37,800	2022. 4. 29.	2022. 4. 29.
7		15,400	2022. 4. 29.	2022. 4. 29.
8		145,800	2022. 4. 29.	2022. 4. 29.
9		120,000	2022. 4. 29.	2022. 4. 29.
10		1,850,000	2022. 9. 26.	2022. 9. 26.
11		1,650,000	2022. 9. 26.	2022. 9. 26.
12	2022-2 ▣원 - 소모품 구입 지급	1,164,000	2022. 11. 8.	2022.11.09.
13	2022-2 ▣원 - 진행비지급	80,000	2022. 11. 9.	2022. 11. 9.
14		66,000	2022. 11. 9.	2022. 11. 9.
15		26,180	2022. 11. 9.	2022. 11. 9.
16		100,700	2022. 11. 9.	2022. 11. 9.
17	2022-2 ▣원 - 진행비 지급	8,860	2022. 11. 11.	2022. 11. 11.
18		126,500	2022. 11. 11.	2022. 11. 11.
19		50,000	2022. 11. 11.	2022. 11. 11.
20		109,800	2022. 11. 11.	2022. 11. 11.
21		63,700	2022. 11. 11.	2022. 11. 11.
22	2022-2 ▣원 - 진행비 지급	69,410	2022. 11. 11.	2022. 11. 11.
23		5,000	2022. 11. 29.	2022. 11. 29.
24		41,120	2022. 11. 29.	2022. 11. 29.
25		9,020	2022. 11. 29.	2022. 11. 29.
26		50,140	2022. 11. 29.	2022. 11. 29.
27		67,760	2022. 11. 29.	2022. 11. 29.
28		16,200	2022. 11. 29.	2022. 11. 29.
29		22,000	2022. 11. 29.	2022. 11. 29.
30		4,400	2022. 11. 29.	2022. 11. 29.
31		77,000	2022. 11. 29.	2022. 11. 29.
32		15,400	2022. 11. 29.	2022. 11. 29.
33	2022년 ▣원 - 문집 발간 진행비 지급	100,000	2022. 12. 1.	2022. 12. 1.
34	2022-2 ▣원 - 진행비 지급	204,050	2022. 12. 1.	2022. 12. 1.
35		47,000	2022. 12. 6.	2022. 12. 6.
36		75,000	2022. 12. 6.	2022. 12. 6.
37		24,000	2022. 12. 7.	2022. 12. 7.
38		77,440	2022. 12. 7.	2022. 12. 7.
39	▣원 업무용 봉투제작비 지급(각봉투, 일반봉투)	3,230,000	2022. 12. 20.	2022. 12. 20.
40	2022-2 ▣원 - 소모품 구입 지급	2,850	2022. 12. 20.	2022. 12. 20.
41	2023 ▣원 - 추진 진행비 지급	14,000	2023. 2. 14.	2023. 2. 14.
42	2023 ▣원 - 추진 진행비 지급	27,730	2023. 2. 14.	2023. 2. 14.
43	2023 ▣원 - 추진 진행비 지급	60,000	2023. 2. 14.	2023. 2. 14.

연번	지출결의서 건명	금액	지출결의일자	자금이체일자
44	2023-1학기 나원 개강행사 진행비 지급	360,000	2023. 3. 10.	2023. 3. 10.
45		350,000	2023. 3. 10.	2023. 3. 10.
46	나원 복합기 토너 및 드럼 구입 지급	891,000	2023. 3. 14.	2023. 3. 14.
47	나원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재료 사무용품 구입 지급	1,850,000	2023. 3. 17.	2023. 3. 17.
48		29,300	2023. 5. 4.	2023. 5. 4.
49	2023-1 – 중간 정산 지급	29,550	2023. 5. 4.	2023. 5. 4.
50		17,300	2023. 5. 4.	2023. 5. 4.
51	2023-1 나원 – 소모품 구입 지급	210,000	2023. 6. 5.	2023. 6. 5.
52		13,800	2023. 6. 5.	2023. 6. 5.
53	2023-1 나원 – 소모품 구입 지급	59,600	2023. 6. 5.	2023. 6. 5.
54		37,400	2023. 6. 5.	2023. 6. 5.
55	2023년도 상반기 나원 전체교수회의 진행비 지급	53,840	2023. 6. 8.	2023.06.12.
56	2023-1 나원 – 구입 지급	408,000	2023. 6. 8.	2023.06.12.
57	2023-1 – 실습재료비 구입 지급(중간정산)	30,000	2023. 6. 8.	2023.06.12.
58	2023-1 – 소모품 구입 지급	156,100	2023. 6. 29.	2023. 6. 29.
59		239,000	2023. 6. 29.	2023. 6. 29.
60	2023-1 공연 관련 특근매식비 지급	215,000	2023. 7. 4.	2023. 7. 4.
61	2023-1 공연 관련 특근매식비 지급	225,000	2023. 7. 4.	2023. 7. 4.
62	제31회 – 진행비 지급	132,000	2023. 7. 11.	2023. 7. 11.
63		22,000	2023. 7. 11.	2023. 7. 11.
64	2023-1 아동청소년 수업재료 구입 지급	44,000	2023. 7. 11.	2023. 7. 11.
65		205,600	2023. 7. 11.	2023. 7. 11.
66		15,900	2023. 7. 11.	2023. 7. 11.
67	2023년 나원 – 워크숍 진행비 지급	1,200,000	2023. 8. 10.	2023. 8. 10.
68	나원 프린터 토너 구입 지급	4,167,000	2023. 9. 6.	2023. 9. 7.
69	2023년 2학기 수업 관련 사무용품 구입 지급	1,850,000	2023. 10. 4.	2023. 10. 5.
70	2023-2 나원 – 추진 진행비 지급	132,000	2023. 10. 5.	2023. 10. 5.
71	2023-2 나원 – 추진 진행비 지급	88,000	2023. 10. 30.	2023. 10. 30.
72		77,000	2023. 10. 30.	2023. 10. 30.
73	나원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 지급	4,867,600	2023. 10. 30.	2023. 10. 30.
74	2023-2 나원 – 소모품 구입 지급	370,000	2023. 10. 30.	2023. 10. 30.
75		485,000	2023. 10. 30.	2023. 10. 30.
76	2023-2나원 – 진행비 지급	310,000	2023. 10. 30.	2023. 10. 30.
77		350,000	2023. 10. 30.	2023. 10. 30.
78	2023-2 나원 – 추진 진행비 지급	63,140	2023. 11. 7.	2023. 11. 7.
79		63,140	2023. 11. 7.	2023. 11. 7.
80		44,660	2023. 11. 7.	2023. 11. 7.
81	2023-2 나원 – 추진 진행비 지급	675,000	2023. 11. 7.	2023. 11. 7.
82	2023-2 나원 – 추진 진행비 지급	153,000	2023. 11. 9.	2023. 11. 9.
83		7,800	2023. 11. 9.	2023. 11. 9.
84		22,400	2023. 11. 9.	2023. 11. 9.
85		6,000	2023. 11. 9.	2023. 11. 9.
86		325,920	2023. 11. 9.	2023. 11. 9.
87	2023-2 나원 – 추진 진행비 지급(중간정산)	5,200	2023. 11. 9.	2023. 11. 9.
88		23,200	2023. 11. 9.	2023. 11. 9.
89		17,400	2023. 11. 9.	2023. 11. 9.
90		161,150	2023. 11. 9.	2023. 11. 9.
91		638,200	2023. 12. 1.	2023. 12. 1.

연번	지출결의서 건명	금액	지출결의일자	자금이체일자
92	2023-2 나원 - 추진 진행비 지급	720,000	2023. 12. 1.	2023. 12. 1.
93		1,423,000	2023. 12. 8.	2023. 12. 8.
94		20,830	2023. 12. 8.	2023. 12. 8.
95		7,000	2023. 12. 8.	2023. 12. 8.
96		17,000	2023. 12. 8.	2023. 12. 8.
97	2023-2 나원 - 추진 진행비 지급	18,100	2023. 12. 8.	2023. 12. 8.
98	2023년 2학기 - 수업 지원 재료 구입 지급	100,140	2023. 12. 12.	2023. 12. 12.
99	2023-2 나원 - 진행비 지급	3,483,700	2023. 12. 13.	2023. 12. 13.
100		28,000	2023. 12. 14.	2023. 12. 14.
101		506,718	2023. 12. 14.	2023. 12. 14.
102		23,300	2023. 12. 14.	2023. 12. 14.
103		16,000	2023. 12. 14.	2023. 12. 14.
104	2023-2 나원 - 소모품 구입 지급	1,466,300	2023. 12. 14.	2023. 12. 14.
105	2023-2 나원 - 추진 진행비 지급	189,310	2023. 12. 14.	2023. 12. 14.
106	나원 교육용 토너 구입 지급	1,540,000	2023. 12. 14.	2023. 12. 14.
107	나원 특근매식비(11월~12월)	150,000	2023. 12. 19.	2023. 12. 19.
108	나원 복합기 토너 구입 지급 (-, -, -)	1,540,000	2023. 12. 19.	2023. 12. 19.
109		1,540,000	2023. 12. 19.	2023. 12. 19.
110	2023-2 나원 - 진행비 지급	1,530,000	2023. 12. 20.	2023. 12. 20.
111	2024년 나원 - 워크숍 진행비 지급	308,000	2024. 2. 6.	2024. 2. 6.
112		195,000	2024. 3. 11.	2024. 3. 11.
113		160,000	2024. 3. 11.	2024. 3. 11.
114		195,000	2024. 3. 11.	2024. 3. 11.
115	2024학년도 1학기 개강행사 진행비 지급	150,000	2024. 3. 11.	2024. 3. 11.
116		500,000	2024. 3. 11.	2024. 3. 11.
117		962,580	2024. 3. 11.	2024. 3. 11.
118		1,037,420	2024. 3. 11.	2024. 3. 11.
119	나원 전임교원 승진심사 진행비 지급	98,000	2024. 3. 11.	2024. 3. 11.
120	나원 - 추진 진행비 지급	23,000	2024. 4. 15.	2024. 4. 15.
121		30,000	2024. 4. 15.	2024. 4. 15.
122	토너 구입 지급	3,806,000	2024. 4. 17.	2024. 4. 17.
		53,647,08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1]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2017~2022년) 집행잔액 미반납 명세

(단위: 만 원)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1	2017년 K-Pop 해외 쇼케이스 개최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1. 1.~2018. 7. 31.	120,000	9,339
2	2017년 공예 관광 산업 육성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7. 1. 1.~2018. 6. 30.	366,200	8,880
3	2017년 유원시설 안전 정보망 구축	한국관광공사	2017. 2. 1.~2018. 3. 31.	50,000	4,825
4	2017년 유원시설 안전관리 교육	한국관광공사	2017. 3. 1.~2018. 2. 28.	8,000	264
5	유원시설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한국관광공사	2017. 8. 31.~2018. 2. 28.	2,500	154
6	2018년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	2018. 11. 30.~2019. 1. 31.	3,700	190
7	2018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술지원	-	2018. 11. 1.~2019. 2. 28.	10,000	515
8	2018년 한국적 생활 문화공간 만들기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8. 3. 1.~2018. 12. 31.	40,000	1,900
9	동계종목 우수선수 육성	대한체육회선수촌	2018. 1. 1.~2019. 2. 28.	33,218	32,410
10	2018년 국산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2. 1.~2019. 10. 31.	69,507	46,638
11	2018년 국산 캐릭터 개발 프로젝트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2. 1.~2019. 10. 31.	46,006	6,066
12	2018년 우수 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2. 1.~2019. 10. 31.	4,000	1,761
13	2018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	2018. 10. 1.~2019. 1. 31.	6,000	541
14	2019년 IP 융복합 라이선싱 사업화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 1.~2019. 12. 31.	148,917	51,583
15	2019년 IP 융복합 라이선싱 기반 구축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 1.~2019. 12. 31.	20,873	3,506
16	2019년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 1.~2019. 12. 31.	62,133	10,978
17	2019년 우수 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 1.~2019. 12. 31.	47,821	39,403
18	2019년 만화 콘텐츠 기업육성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 1.~2020. 2. 29.	165,835	21,068
19	2019년 만화 유통 및 산업 기반 조성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 1.~2019. 12. 31.	10,000	1,708
20	2019년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 1.~2019. 12. 31.	30,000	1,485
21	비록 보급 사업	-	2019. 1. 1.~2019. 12. 31.	82,000	2,739
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학생 바둑대회	-	2019. 1. 1.~2019. 12. 31.	6,000	179
23	대회개최 지원사업	-	2019. 1. 1.~2019. 12. 31.	62,000	900
24	임진각 평화누리 모험 놀이시설 조성	-	2019. 1. 1.~2020. 12. 31.	20,000	271
25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20. 1. 1.~2021. 4. 30.	93,410	7,103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26	2020년 전통공예의 세계화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0. 1. 1.~2020. 12. 31.	71,900	45,757
27	2020년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0. 1. 1.~2020. 12. 31.	373,500	9,719
28	2020년 IP 융복합 라이선싱 사업화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1. 2. 28.	113,033	36,558
29	2020년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1. 2. 28.	22,215	6,846
30	2020년 글로벌 전략시장 진출 유통 활성화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0. 12. 31.	85,004	13,037
31	2020년 온라인플랫폼 활용기반 콘텐츠제작 및 홍보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0. 12. 31.	297,000	6,027
32	2020년 글로벌 뮤직네트워크 구축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0. 12. 31.	89,100	1,114
33	2020년 ICT 음악 콘텐츠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1. 2. 28.	24,740	8,674
34	2020년 공간기획형 공연개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1. 2. 28.	20,658	14,034
35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운영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0. 1. 1.~2020. 12. 31.	23,080	3,834
36	2020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	2020. 2. 1.~2021. 2. 28.	12,500	3,907
37	2020년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1. 2. 28.	3,000	2,125
38	비둑 영재 육성	-	2020. 1. 1.~2020. 12. 31.	42,000	2,273
39	비둑 교육 및 인프라	-	2020. 1. 1.~2020. 12. 31.	42,000	3,911
40	비둑 국제 교류	-	2020. 1. 1.~2020. 12. 31.	20,000	2,041
41	비둑 대표선수 강화훈련	-	2020. 1. 1.~2020. 12. 31.	60,000	2,747
42	2020년 패션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 사업	-	2020. 6. 1.~2021. 2. 28.	19,000	1,308
43	20K-Music 시즌 공연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5. 1.~2020. 12. 31.	11,644	6,842
44	2020년 세시풍속 맥 잊기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0. 7. 1.~2021. 4. 30.	17,000	3,722
45	2020년 전통 놀이문화 조성·확산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0. 7. 1.~2021. 6. 30.	187,800	3,390
46	2020년 남북 식문화 교류를 위한 도서 발간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0. 9. 1.~2021. 6. 30.	5,000	333
47	웹툰 자율 규제 위원회 홈페이지 제작	-	2020. 1. 1.~2021. 6. 30.	2,000	152
48	국민 체력 인증제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1. 1. 1.~2021. 12. 31.	434,100	72,721
49	꿈나무 선수 육성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21. 3. 1.~2022. 2. 28.	369,709	360,146
50	청소년대표팀 육성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21. 1. 1.~2021. 12. 31.	250,270	248,909
51	태릉선수촌 운영	대한체육회선수촌	2021. 1. 1.~2021. 12. 31.	617,240	78,140
52	국가대표 훈련지원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21. 1. 1.~2022. 2. 28.	1,318,872	683,434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53	2021년 병영독서활성화 지원	-	2021. 1. 1.~2022. 1. 31.	1,800	270
54	회원종목 단체 및 지회 운영	대한체육회	2021. 1. 1.~2022. 6. 30.	254,460	209,596
55	2021년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1. 1.~2022. 2. 28.	28,479	13,435
56	스포츠 미디어콘텐츠 서비스 강화	대한체육회	2021. 1. 1.~2021. 12. 31.	51,500	1,695
57	생활 체육홍보	대한체육회	2021. 1. 1.~2021. 12. 31.	99,920	277
58	2021년 만화 해외 진출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1. 1.~2022. 2. 28.	113,256	14,343
59	2021년 만화 콘텐츠 기업육성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1. 1.~2022. 2. 28.	145,077	14,200
60	인건비 및 행정 보조비	-	2021. 1. 1.~2022. 6. 30.	3,866	960
61	2021년 창의 브랜드 수출지원 공간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1. 1.~2022. 5. 31.	150,000	6,177
62	2021년 패션 문화 마켓 개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1. 1.~2022. 5. 31.	113,400	5,681
63	2021년 국내외 스토리 유통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1. 1.~2022. 3. 31.	178,400	6,907
64	2021년 글로벌 스토리 발굴육성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1. 1.~2021. 12. 31.	90,000	5,852
65	2021년 스토리텔러 양성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1. 1.~2022. 3. 31.	80,260	13,504
66	만화 콘텐츠 창작 지원	-	2021. 2. 1.~2022. 2. 28.	56,500	7,536
67	만화 해외 진출 지원	-	2021. 2. 1.~2022. 2. 28.	44,771	13,979
68	만화산업 인력 양성	-	2021. 2. 1.~2022. 2. 28.	178,430	41,213
69	진천선수촌 입촌 학생 선수 학점인정 지원사업	-	2021. 3. 1.~2022. 2. 28.	9,000	4,116
70	2021년 프로스포츠 정책 및 공통 사업	-	2021. 1. 1.~2022. 12. 31.	441,460	48,927
71	레저스포츠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1. 1. 1.~2021. 12. 31.	30,000	734
72	2021년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1. 1. 1.~2021. 12. 31.	50,000	4,879
73	바둑대회 지원사업(바둑 보급 사업)	-	2021. 1. 1.~2021. 12. 31.	70,600	2,917
74	바둑대회 지원사업(한국 디비전 바둑 리그)	-	2021. 1. 1.~2021. 12. 31.	70,200	3,133
75	바둑 대표선수 강화훈련	-	2021. 1. 1.~2021. 12. 31.	57,000	1,529
76	바둑선수 육성 및 대회 지원	-	2021. 1. 1.~2021. 12. 31.	40,000	968
77	바둑 교육 및 인프라	-	2021. 1. 1.~2021. 12. 31.	54,000	5,680
78	바둑 국제 교류	-	2021. 1. 1.~2021. 12. 31.	13,000	1,051
79	기초 종목 육성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21. 3. 1.~2022. 2. 28.	180,963	4,840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80	2021년 오르락 내리락 건강한 산행문화 보급 사업	-	2021. 5. 1.~2021. 12. 31.	22,224	2,239
81	2021년 MICE 산업 인력양성 및 업계지원 사업	-	2021. 2. 1.~2021. 12. 31.	51,800	2,945
82	국외 전지훈련	-	2021. 1. 1.~2022. 2. 28.	12,712	951
83	장보고 여름학교	-	2021년 2월~2022년 3월	500	500
84	2021년 관람형 태권도 대회	-	2021. 6. 1.~2021. 12. 31.	90,000	4,981
85	2021년 전통문화 인성교육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1. 6. 1.~2022. 3. 31.	30,000	2,190
86	2021년 MICE 업계 디지털 전환 및 역량강화 사업	-	2021. 6. 1.~2022. 1. 31.	190,000	4,092
87	2021년 온라인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대회	-	2021. 6. 1.~2021. 10. 31.	30,000	839
88	2021년 소규모 대중 음악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	2021. 8. 1.~2022. 4. 30.	300,000	940
89	생명 평화의 바람꽃 청소년 평화 인성교육	-	2021. 8. 1.~2022. 2. 28.	345	345
90	제13회 나란다 축제	-	2021년 11월~2022년 2월	13,000	762
91	장애인 스포츠 과학화 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	2022. 1. 1.~2022. 12. 31.	35,900	2,954
92	장애인 동계스포츠육성	대한장애인체육회	2022. 1. 1.~2022. 12. 31.	56,400	1,761
93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육성	대한장애인체육회	2022. 1. 1.~2022. 12. 31.	10,300	3,425
94	장애인 국제 스포츠 교류	대한장애인체육회	2022. 1. 1.~2022. 12. 31.	92,000	42,425
95	장애인 국제대회 개최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	2022. 1. 1.~2022. 12. 31.	1,000	174
96	국민체력 인증제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2. 1. 1.~2022. 12. 31.	431,400	44,435
97	시도 장애인 스포츠 권익 보호 전문인력 풀 운영	대한장애인체육회	2022. 1. 1.~2022. 12. 31.	16,005	675
98	장애인카누 및 트라이애슬론 종목 저변확대	대한장애인체육회	2022. 1. 1.~2022. 12. 31.	36,200	958
99	장애인 기초 종목 육성	대한장애인체육회	2022. 1. 1.~2022. 12. 31.	45,702	10,921
100	2022년 공예 매개 인력 양성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2. 1. 1.~2022. 12. 31.	25,000	1,171
101	2022년 출판 신성장 동력 창출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2022. 1. 1.~2022. 12. 31.	180,817	7,391
102	2022년 전자출판산업 육성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2022. 1. 1.~2022. 12. 31.	231,300	34,950
103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	2022. 1. 1.~2022. 12. 31.	13,522	965
104	2022년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1. 1.~2022. 12. 31.	15,000	6,207
105	2022년 방송영상 콘텐츠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1. 1.~2022. 12. 31.	502,999	59,392
106	2022년 플랫폼 기반 대중음악 활성화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1. 1.~2022. 12. 31.	248,000	8,382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107	2022년 공간기획형 공연개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1. 1.~2022. 12. 31.	5,400	1,801
108	2022년 독립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1. 1.~2022. 12. 31.	10,452	4,744
109	2022년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1. 1.~2022. 12. 31.	22,681	9,538
110	2022년 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1. 1.~2022. 12. 31.	8,009	2,775
111	2022년 패션콘텐츠 활성화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1. 1.~2022. 12. 31.	64,624	5,133
112	2022년 온라인플랫폼 활용유동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1. 1.~2022. 12. 31.	100,000	1,424
113	2022년 아이디어 기획 개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1. 1.~2022. 12. 31.	43,600	3,201
114	2022년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프로그램 홍보 및 컨설팅 지원	한국관광공사	2022. 1. 1.~2022. 12. 31.	15,000	966
115	2022년 국민 독서문화 확산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2022. 1. 1.~2022. 12. 31.	193,500	9,934
116	국학진흥 실버 일자리 창출	-	2022. 1. 1.~2022. 12. 31.	200,000	1,816
117	국학자료 수집 및 보존	-	2022. 1. 1.~2022. 12. 31.	187,100	2,062
118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	2022. 1. 1.~2022. 12. 31.	279,400	2,910
119	국학진흥 청년 일자리 창출	-	2022. 1. 1.~2022. 12. 31.	250,000	2,804
120	2022년 호남 국학진흥 지원	-	2022. 1. 1.~2022. 12. 31.	322,400	1,914
121	태릉선수촌 운영	대한체육회선수촌	2022. 1. 1.~2022. 12. 31.	617,500	28,191
122	스페셜 중증 발달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	2022. 1. 26.~2022. 12. 31.	500	237
123	2022년 강원 국학진흥지원 사업	-	2022. 1. 1.~2022. 12. 31.	100,000	9,843
124	2022년 풍석 학술진흥 연구	-	2022. 1. 1.~2022. 12. 31.	60,000	256
125	생활 체육 정보센터 운영	대한체육회	2022. 1. 1.~2022. 12. 31.	50,000	474
126	2022년 체육 인재 육성 사업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2. 1. 1.~2022. 12. 31.	10,000	208
127	2022년 체육 분야 현장 전문가 교육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2. 1. 1.~2022. 12. 31.	112,200	564
128	2022년 한국음악 데이터센터(KMDC) 구축 및 운영	-	2022. 1. 1.~2022. 12. 31.	10,000	176
129	2022년 남북한 전통문화 교류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2. 2. 1.~2022. 12. 31.	3,000	156
130	2022년 전통문화 해외거점 조성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2. 2. 1.~2022. 12. 31.	96,200	1,232
131	2022년 세시풍속 맥 잊기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2. 2. 1.~2022. 12. 31.	17,000	425
132	레저스포츠 안전 정보시스템 관리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2. 2. 1.~2022. 12. 31.	2,500	518
133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2. 1. 1.~2022. 12. 31.	16,300	2,181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134	레저스포츠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2. 1. 1.~2022. 12. 31.	10,200	7,275
135	레저 스포츠시설 안전 점검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2. 2. 1.~2022. 12. 31.	50,000	19,309
136	2022년 오르락내리락 건강한 산행문화 교육사업	-	2022. 3. 1.~2022. 12. 31.	19,490	1,051
137	워크숍 개최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2. 3. 1.~2022. 12. 31.	18,130	12,944
138	바둑 교육 및 인프라	-	2022. 1. 1.~2022. 12. 31.	57,000	773
139	바둑 국제 교류	-	2022. 1. 1.~2022. 12. 31.	13,000	250
140	바둑선수 육성 및 대회 지원	-	2022. 1. 1.~2022. 12. 31.	32,000	1,117
141	바둑 대표선수 강화훈련	-	2022. 1. 1.~2022. 12. 31.	44,300	2,089
142	2022년도 관람형 태권도 대회	-	2022. 1. 1.~2022. 12. 31.	90,000	2,941
143	바둑진흥 기반 조성	-	2022. 1. 1.~2022. 12. 31.	54,000	542
144	한국 디비전 바둑 리그	-	2022. 1. 1.~2022. 12. 31.	90,100	2,946
145	대회개최 지원사업	-	2022. 1. 1.~2022. 12. 31.	15,300	110
146	바둑 보급 사업	-	2022. 1. 1.~2022. 12. 31.	31,800	806
147	2022년 패션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 사업	-	2022. 5. 1.~2022. 12. 31.	15,700	384
148	비대면 표준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제작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2022. 3. 1.~2022. 12. 31.	10,000	412
149	2022년 대한민국 공간 문화 대상	-	2022. 4. 1.~2022. 12. 31.	8,000	108
150	2022년 국제 건축문화교류	-	2022. 5. 1.~2022. 12. 31.	8,000	533
151	2022년 레저스포츠 실태조사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2022. 5. 26.~2022. 12. 31.	14,000	291
152	2022년도 세계 태권도 아카데미(WTA) 운영 사업	-	2022. 1. 1.~2022. 12. 31.	35,000	1,319
153	2022년 K-뮤직 시즌	-	2022. 9. 30.~2022. 12. 31.	130,000	413
154	충청권역 청년 일자리 창출	-	2022. 1. 1.~2022. 12. 31.	43,078	14,617
155	충청 국학진흥 지원	-	2022. 1. 1.~2022. 12. 31.	122,709	29,522
156	2021년 전통공예의 세계화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1. 1. 1.~2022. 12. 31.	64,750	405
157	2017년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	2017. 2. 1.~2018. 1. 31.	17,000	260
158	2017년 유원시설업 사업주 안전교육	-	2017. 2. 1.~2017. 3. 31.	1,400	176
159	올림픽 대비 특별지원	대한체육회선수촌	2017. 1. 1.~2018. 1. 30.	126,078	43,006
160	2017년 지역 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	2017. 1. 1.~2018. 2. 28.	49,020	6,885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161	2017년 강원지역 예술 강사 지원사업	-	2017. 1. 1.~2017. 12. 31.	45,163	813
162	2017년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	2017. 1. 1.~2017. 12. 31.	24,850	3,745
163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	-	2017. 1. 1.~2017. 12. 31.	6,702	125
164	2017년 지역 특성화 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	-	2017. 1. 1.~2017. 12. 31.	2,402	1,187
165	배드민턴 국외 전지훈련	-	2017. 1. 1.~2018. 1. 30.	26,191	934
166	2017년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	2017. 1. 1.~2017. 12. 31.	30,775	1,824
167	2017년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	2017. 1. 1.~2017. 12. 31.	28,411	342
168	2017년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	2017. 1. 1.~2017. 12. 31.	10,400	2,283
169	2017년 한국음악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	2017. 1. 1.~2017. 12. 31.	10,000	355
170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예술 포스터 개발 사업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7. 3. 31.~2018. 6. 30.	40,000	4,222
171	DO DREAM(꿈을 향한 도전)	-	2017. 1. 1.~2017. 12. 31.	750	176
172	임진각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	2017. 2. 17.~2018. 9. 30.	200,000	14,730
173	배드민턴 외국인코치	-	2017. 1. 1.~2018. 1. 30.	8,774	416
174	두근두근 숲 놀이터	-	2017. 1. 1.~2017. 12. 31.	1,500	258
175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2017. 1. 1.~2017. 12. 31.	1,850	306
176	2017년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	2017. 4. 1.~2017. 12. 31.	6,000	785
177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양성사업단	순천대학교 신학협력단	2017. 4. 1.~2017. 12. 31.	7,125	160
178	전남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사업지원	-	2017. 1. 1.~2018. 4. 30.	11,000	566
179	충북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	-	2017. 1. 1.~2017. 12. 31.	11,990	2,506
180	지역 기반 문화예술 거점 공간 조성 사업	-	2017. 10. 1.~2019. 6. 30.	9,600	5,753
181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 포스터 등 전시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7. 6. 30.~2018. 5. 31.	40,000	4,005
182	핸드볼 국외 전지훈련	-	2017. 1. 1.~2018. 1. 30.	23,558	1,106
183	평창 동계올림픽기념 서예 특별전	예술의전당	2017. 6. 30.~2018. 5. 31.	30,000	3,517
184	평창문화올림픽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1. 1.~2018. 3. 31.	305,400	41,757
185	가라테 국외 전지훈련	-	2017. 1. 1.~2018. 1. 30.	1,681	117
186	2018년 평창 겨울 음악제	-	2017. 10. 31.~2018. 5. 31.	50,000	3,569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187	2017년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	2017. 11. 30.~2018. 1. 31.	1,500	111
188	2018년 테마관광 활성화 (고급 관광 육성)	한국관광공사	2018. 1. 1.~2018. 12. 31.	128,000	3,428
189	2018년 공예 관광산업 육성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8. 1. 1.~2019. 4. 30.	395,300	33,271
190	2018년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	2018. 2. 1.~2019. 1. 31.	15,000	905
191	2018년 유원시설 안전 관리체계 구축	한국관광공사	2018. 2. 1.~2019. 1. 31.	101,300	3,248
192	스포츠 푸드트럭	대한체육회	2018. 1. 1.~2018. 12. 31.	26,000	2,783
193	2018년 글로벌 뮤직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1. 1.~2018. 12. 31.	62,600	887
194	2018년 잔다리 페스티벌	-	2018. 7. 1.~2018. 12. 31.	40,000	2,432
195	2018년 지역 문화 전문인력 “문화예술 교육사 역량 강화”	-	2018. 4. 1.~2018. 12. 31.	1,500	157
196	2018년 지역 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사업	-	2018. 1. 1.~2018. 12. 31.	47,677	4,760
197	2018년 공예 디자인진흥원 지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8. 1. 1.~2019. 2. 28.	552,900	11,560
198	2018년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8. 1. 1.~2019. 7. 31.	358,100	2,105
199	2018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8. 1. 1.~2019. 4. 30.	48,826	8,250
200	2018년 전통예술의 세계화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8. 1. 1.~2019. 1. 31.	70,000	1,031
201	공연연습장 조성 및 운영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2. 1.~2020. 3. 31.	501,320	48,751
202	만화 콘텐츠 창작 기반 조성	-	2018. 2. 1.~2019. 7. 31.	83,624	17,770
203	2018년 DMZ 아트 페스타	-	2018. 4. 30.~2018. 10. 31.	50,000	3,014
204	2018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	2018. 1. 1.~2018. 12. 31.	13,550	4,723
205	2018년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2018. 1. 1.~2018. 12. 31.	2,400	718
206	2019년 대관령 겨울 음악제	-	2018. 10. 31.~2019. 3. 31.	45,000	295
207	내 꿈의 속삭임_에코 아트 팝트럭	-	2018. 1. 1.~2018. 12. 31.	950	119
208	올림픽 누정 전통문화 공연 및 공예작품 전시회	-	2018. 1. 31.~2019. 3. 31.	35,000	336
209	2018년 전남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	2018. 3. 6.~2018. 12. 31.	12,650	5,717
210	2018년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	2018. 1. 1.~2018. 12. 31.	19,449	1,638
211	2018년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	2018. 1. 1.~2018. 12. 31.	13,300	1,368
212	3대 문화권 공동홍보사업	-	2018. 7. 1.~2019. 11. 30.	55,930	245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213	제주시 도시 공간 청년기획단, 헬로뉴비	-	2018. 1. 1.~2018. 12. 31.	1,200	369
214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	한국관광공사	2018. 1. 1.~2018. 12. 31.	136,000	1,835
215	한국 음식 관광 활성화 (음식 관광 환경개선)	한국관광공사	2018. 2. 1.~2019. 3. 31.	171,000	13,295
216	2019년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	2019. 1. 1.~2019. 12. 31.	1,600	1,600
217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2019. 1. 1.~2019. 12. 31.	1,500	1,500
218	2019년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	-	2019. 1. 1.~2019. 12. 31.	258	258
219	2019년 전통예술의 세계화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9. 1. 1.~2019. 12. 31.	80,000	1,859
220	2019년 공예 디자인 진흥원 지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9. 1. 1.~2020. 4. 30.	547,900	9,227
221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2019. 1. 1.~2019. 12. 31.	1,000	939
222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	2019. 1. 1.~2019. 12. 31.	1,810	1,810
223	2019년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	2019. 1. 1.~2019. 12. 31.	21,380	2,959
224	2019년 유원시설 안전 관리체계 구축	한국관광공사	2019. 1. 1.~2020. 4. 30.	133,700	6,019
225	2019년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	2019. 1. 1.~2019. 12. 31.	850	850
226	2019년 창의 브랜드 육성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 1.~2020. 5. 31.	8,621	5,347
227	2019년 아이디어 기획개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 1.~2019. 12. 31.	55,200	3,775
228	2019년 패션 문화 마켓 개최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 1.~2020. 5. 31.	140,000	29,172
229	만화 콘텐츠 창작 지원	-	2019. 1. 1.~2019. 12. 31.	20,600	5,405
230	만화산업 인력 양성	-	2019. 1. 1.~2019. 12. 31.	184,930	17,838
231	만화 해외 진출 지원	-	2019. 1. 1.~2019. 12. 31.	99,936	8,928
232	2019년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	2019. 1. 1.~2019. 12. 31.	11,750	2,617
233	2019년 패션콘텐츠 활성화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 1.~2019. 12. 31.	171,200	5,761
234	만화 유통 및 산업 기반 조성	-	2019. 1. 1.~2019. 12. 31.	103,260	8,076
235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	2019. 1. 1.~2019. 12. 31.	8,800	6,278
236	3·1 평화 운동 100주년 기념 윤봉길 뮤지컬 제작 공연	-	2019. 1. 1.~2019. 12. 31.	50,000	171
237	2019년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	-	2019. 1. 1.~2019. 12. 31.	6,425	2,093
238	2019년 공예 관광 산업 육성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9. 1. 1.~2020. 4. 30.	429,200	30,328
239	2019년 강원 문화예술 아카데미	-	2019. 1. 1.~2019. 12. 31.	2,250	462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240	2019년 전문예술 창작 지원	-	2019. 1. 1.~2019. 12. 31.	8,850	1,421
241	2019년 강원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	2019. 1. 1.~2019. 12. 31.	1,500	686
242	2019년 문화예술 공간 지원사업	-	2019. 1. 1.~2019. 12. 31.	1,250	593
243	2019년 신진 예술가 창작 활동 지원	-	2019. 1. 1.~2019. 12. 31.	2,150	657
244	2019년 원로예술인지원	-	2019. 1. 1.~2019. 12. 31.	2,500	311
245	2019년 문화예술 교류 지원	-	2019. 1. 1.~2019. 12. 31.	1,050	230
246	문화도시 기반 조성	-	2019. 1. 1.~2019. 12. 31.	30,000	1,150
247	2019년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9. 1. 1.~2020. 4. 30.	328,100	357
248	2019년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	2019. 1. 1.~2019. 12. 31.	7,075	590
249	2019년 저작권 제도 개선 조사 연구	-	2019. 3. 1.~2019. 12. 31.	6,000	130
250	2019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술지원	-	2019. 8. 1.~2020. 1. 31.	11,000	503
251	2019년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2. 20.~2021. 1. 31.	294,708	43,333
252	2019년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만들기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9. 3. 1.~2020. 4. 30.	37,000	3,231
253	2019년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9. 1. 1.~2020. 4. 30.	19,525	10,840
254	2019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실태점검	-	2019. 2. 1.~2020. 2. 29.	24,000	1,542
255	보라매 축구 공원 스코어 전광판 설치 공사	광주광역시체육회	2019. 3. 29.~2019. 12. 31.	10,500	839
256	월드컵경기장 내 풋살장 조성	광주광역시체육회	2019. 5. 7.~2019. 12. 4.	40,000	7,739
257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_안동시	-	2019. 1. 1.~2020. 12. 31.	19,200	2,361
258	도쿄올림픽대비 신규 전략 특별종목지원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19. 4. 1.~2020. 3. 31.	55,170	7,930
259	도쿄올림픽대비 마라톤 특별훈련지원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19. 4. 1.~2020. 3. 31.	390	230
260	2019년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	-	2019. 1. 1.~2020. 5. 31.	30,000	425
261	2019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	2019. 2. 1.~2020. 1. 31.	6,100	261
262	2019년 남양주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	2019. 5. 1.~2020. 3. 31.	30,000	3,776
263	전통 놀이문화 조성·확산 사업	-	2019. 6. 1.~2020. 9. 30.	169,239	2,864
264	3대 문화권 방문의 해	-	2019. 6. 1.~2021. 12. 31.	10,550	2,089
265	2019년 문화적 도시재생	-	2019. 5. 1.~2020. 3. 31.	25,000	371
266	유원시설 안전관리 교육	한국관광공사	2019. 3. 1.~2020. 4. 30.	13,300	998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267	- 건립 공사	-	2019. 1. 1.~2019. 12. 31.	12,000	253
268	경북 문화기행 H STORY 경북 지역 연계상품운영(1권역)	-	2019. 11. 1.~2020. 12. 31.	67,900	17,991
269	경북 문화기행 H STORY 경북 지역 연계상품운영(3권역)	-	2019. 11. 1.~2020. 12. 31.	14,000	1,484
270	경북 문화기행 H STORY 경북 지역 연계상품운영(5권역)	-	2019. 11. 1.~2020. 12. 31.	21,000	2,299
271	경북 문화기행 H STORY 경북 지역 연계상품운영(7권역)	-	2019. 11. 1.~2020. 12. 31.	14,000	1,378
272	경북 문화기행 H STORY 경북 지역 연계상품운영(4권역)	-	2019. 11. 1.~2020. 12. 31.	21,000	2,191
273	경북 문화기행 H STORY 경북 지역 연계상품운영(2권역)	-	2019. 11. 1.~2020. 12. 31.	45,500	7,244
274	경북 문화기행 H STORY 경북 지역 연계상품운영(8권역)	-	2019. 11. 1.~2020. 12. 31.	17,500	2,252
275	시구 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체육회	2019. 1. 1.~2020. 6. 30.	1,440	768
276	경북 문화기행 H STORY 경북 지역 연계상품운영(6권역)	-	2019. 11. 1.~2020. 12. 31.	21,000	2,228
277	유원 시설업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	2019. 2. 1.~2019. 12. 31.	5,000	103
278	보문 수상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	2019. 1. 1.~2021. 12. 31.	75,000	13,382
279	동계종목 우수선수 육성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20. 1. 1.~2021. 3. 31.	229,725	229,725
280	태릉선수촌 운영	대한체육회선수촌	2020. 1. 1.~2021. 3. 31.	667,500	73,677
281	국가대표 훈련지원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20. 1. 1.~2021. 2. 28.	2,507,417	1,615,223
282	2020년 공예 디자인진흥원 지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0. 1. 1.~2020. 12. 31.	555,350	7,573
283	스포츠 미디어콘텐츠 서비스 강화	대한체육회	2020. 1. 1.~2020. 12. 31.	51,500	2,251
284	생활 체육 홍보	대한체육회	2020. 1. 1.~2021. 2. 28.	100,000	2,635
285	지방 체육 진흥	대한체육회	2020. 1. 1.~2020. 12. 31.	30,324	6,206
286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	2020. 1. 1.~2020. 12. 31.	1,600	1,041
287	2020년 패션콘텐츠 활성화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0. 12. 31.	152,900	13,569
288	2020년 만화 콘텐츠 기업육성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1. 2. 28.	158,987	19,415
289	2020년 창의 브랜드 창작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0. 12. 31.	6,140	1,456
290	2020년 아이디어 기획개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0. 12. 31.	45,000	3,597
291	2020년 신진 디자이너 해외판로개척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1. 6. 30.	148,265	26,048
292	만화 콘텐츠 창작 지원	-	2020. 2. 1.~2020. 12. 31.	36,000	13,624
293	2020년 외국어 관광 안내 표기 지원	한국관광공사	2020. 1. 1.~2020. 12. 31.	16,500	109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294	만화 해외 진출 지원	-	2020. 2. 1.~2021. 2. 28.	55,378	17,805
295	2020년 신규캐릭터 발굴 및 IP 사업화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0. 12. 31.	25,158	4,332
296	만화산업 인력 양성	-	2020. 2. 1.~2021. 6. 30.	190,033	50,736
297	만화 유통 및 산업 기반 조성	-	2020. 2. 1.~2021. 12. 31.	189,570	25,575
298	2020년 우수 뮤지션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	2020. 1. 1.~2020. 12. 31.	200,000	648
299	국민 체력인증 기반 구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0. 1. 1.~2021. 1. 31.	59,200	8,088
300	생활 체육 정보센터 운영	대한체육회	2020. 1. 1.~2020. 12. 31.	50,000	559
301	2020년 공예 관광산업육성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0. 1. 1.~2021. 1. 31.	447,100	119,272
302	2020년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	2020. 1. 1.~2020. 12. 31.	28,411	1,191
303	국민 체력 인증제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0. 1. 1.~2021. 1. 31.	620,881	114,030
304	2020년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0. 1. 1.~2020. 12. 31.	24,247	8,893
305	비둑대회 지원사업 (대회개최 지원사업)	-	2020. 1. 1.~2020. 12. 31.	81,300	1,994
306	비둑대회 지원사업 (비둑 보급 사업)	-	2020. 1. 1.~2020. 12. 31.	64,700	456
307	도쿄올림픽대비 신규 전략 종목 특별훈련 지원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20. 4. 1.~2021. 8. 31.	70,002	68,892
308	2020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실태점검	-	2020. 3. 1.~2021. 4. 30.	20,000	3,305
309	2020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실태점검	-	2020. 3. 1.~2021. 4. 30.	10,000	614
310	2020년 창의 브랜드 수출지원 공간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 1.~2021. 5. 31.	180,000	12,034
311	2020년 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2. 1.~2021. 5. 31.	32,610	9,065
312	2020년 산사 문화예술제	-	2020. 4. 1.~2020. 12. 31.	24,100	23,231
313	2020년 사회통합행사	-	2020. 1. 1.~2020. 12. 31.	20,700	16,101
314	국민체력 100 스포츠 활동 인증 노인기 기준 개발(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3. 1.~2020. 12. 31.	11,800	451
315	국민체력 100 중장기 발전 방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3. 18.~2020. 12. 31.	5,000	1,760
316	국민체력 100 유아기 체력 측정 항목 개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3. 1.~2020. 12. 31.	9,900	600
317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심폐지구력 대체 종목 개발 및 기준 동등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3. 1.~2021. 1. 31.	13,000	355
318	국민체력 100 체력 인증 기준개선 및 맞춤형 운동콘텐츠 개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3. 1.~2020. 12. 31.	17,800	587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319	두리와 함께하는 영산강의 하루	-	2020. 1. 1.~2020. 12. 31.	2,500	570
320	2020년 패션디자이너 역량 강화 지원사업	-	2020. 6. 1.~2021. 1. 31.	20,000	2,397
321	꽃향기 문화 예술재	-	2020년 4월~2020년 12월	900	533
322	스포츠 친화 기업 지수 개발 및 시범사업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2020. 4. 1.~2020. 12. 31.	10,000	299
323	2020년 지방 체육 진흥	서울특별시체육회	2020. 1. 1.~2020. 12. 31.	43,267	3,365
324	k-style Hub 운영	한국관광공사	2020. 1. 1.~2022. 6. 30.	700,000	2,096
325	동계종목 대학팀·실업팀 창단 등 지원	대한체육회	2020. 1. 1.~2020. 12. 31.	64,630	63,640
326	2020년 전통문화 인성교육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0. 7. 1.~2021. 5. 31.	20,000	960
327	2020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한국관광공사	2020. 1. 1.~2021. 12. 31.	47,000	1,456
328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	2020. 7. 1.~2021. 3. 31.	200	200
329	문화관광축제 지원	-	2020. 1. 1.~2020. 12. 31.	6,000	122
330	2020년 공공미술(문화 뉴딜) 프로젝트 사업	-	2020. 8. 1.~2021. 5. 31.	1,239	661
331	동계종목 특별지원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20. 11. 1.~2021. 11. 30.	4,765	3,953
332	국민 체력인증 기반 구축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1. 1. 1.~2021. 12. 31.	56,300	3,358
333	2021년 한국 관광 온라인 홍보	한국관광공사	2021. 1. 1.~2021. 12. 31.	313,800	10,799
334	2021년 IP 융복합 라이선싱 사업화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1. 1.~2021. 12. 31.	180,818	39,570
335	2021년 충북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사업	-	2021. 1. 1.~2021. 12. 31.	400	400
336	탁구 국가대표 촌외 훈련	-	2021. 9. 16.~2021. 12. 31.	17,007	404
337	2021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한국관광공사	2021. 1. 1.~2021. 12. 31.	47,000	2,246
338	2021년 온라인플랫폼 활용유통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1. 1.~2021. 12. 31.	100,000	5,244
339	2021년 패션콘텐츠 활성화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1. 1.~2021. 12. 31.	123,400	2,498
340	2021년 창의 브랜드 창작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1. 1.~2021. 12. 31.	3,900	1,238
341	2021년 아이디어 기획 개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1. 1.~2021. 12. 31.	43,600	4,379
342	만화 유통 및 산업 기반 조성	-	2021. 2. 1.~2022. 12. 31.	189,600	13,406
343	2021년 구미주 시장 유치 확대	한국관광공사	2021. 1. 1.~2021. 12. 31.	749,900	23,286
344	2021년 홍보간행물 활용 한국 관광 홍보	한국관광공사	2021. 1. 1.~2021. 12. 31.	156,600	9,148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345	2021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실태점검	-	2021. 3. 1.~2021. 12. 31.	10,000	516
346	2021년 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2. 1.~2022. 3. 31.	30,418	6,801
347	2020년 공공미술프로젝트 (양평군 양강 이야기)	-	2020. 10. 1.~2022. 2. 28.	9,600	626
348	동계종목 대학팀·실업팀 창단 등 지원	대한체육회	2021. 1. 1.~2021. 12. 31.	85,410	84,810
349	2021년 남북한 전통문화 교류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1. 3. 1.~2022. 2. 28.	5,000	336
350	2021년 패션디자이너 역량 강화 지원사업	-	2021. 5. 1.~2021. 12. 31.	16,600	111
351	국민체력 100 유아기 체력인증 기준 개발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2021. 3. 1.~2021. 12. 31.	12,000	1,279
352	2021년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	2021. 3. 1.~2021. 11. 30.	2,000	918
353	스포츠 친화 기업 인증제 시범 사업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1. 7. 1.~2021. 12. 31.	6,300	127
354	2021년 스포츠 친화 기업 선정 지원사업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2021. 3. 1.~2021. 12. 31.	3,200	439
355	문화 콘텐츠형 시티투어 활성화 사업	-	2021. 3. 1.~2022. 12. 31.	7,500	2,365
356	지방 체육진흥	대한체육회	2021. 1. 1.~2021. 12. 31.	76,309	19,949
357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	2022년 1월~2022년 12월	8,000	966
358	2021년 세시풍속 맥 잊기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1. 5. 1.~2022. 2. 28.	17,000	1,248
359	2021년 관광특구 평가	-	2021. 4. 30.~2022. 3. 31.	17,000	793
360	전통 사찰 보조경비	-	2021. 1. 1.~2022. 12. 31.	22,500	1,124
361	2021년 창의 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	2021. 1. 1.~2021. 12. 31.	19,600	6,744
362	2021년 국제 건축문화교류	-	2021. 6. 1.~2021. 12. 31.	6,000	1,149
363	광주 관광두레 지역 협력 센터 운영	-	2021. 7. 1.~2022. 3. 31.	20,000	5,620
364	2021년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	2021. 9. 1.~2021. 10. 31.	1,190	127
365	국제회의 참가 및 초청	대한체육회	2022. 1. 1.~2022. 12. 31.	22,680	9,857
366	2022년 이야기 산업 활성화 현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1. 1.~2022. 12. 31.	27,600	2,381
367	스포츠 미디어콘텐츠 서비스 강화	대한체육회	2022. 1. 1.~2022. 12. 31.	51,500	1,749
368	생활 체육 홍보	대한체육회	2022. 1. 1.~2022. 12. 31.	100,000	10,140
369	유소년 아마추어 활성화 사업	-	2022. 1. 1.~2022. 12. 31.	137,000	25,132
370	만화 콘텐츠 창작 지원	-	2022. 1. 1.~2022. 12. 31.	50,310	5,412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371	만화산업 인력 양성	-	2022. 1. 1.~2022. 12. 31.	160,630	30,188
372	만화 해외 진출 지원	-	2022. 1. 1.~2022. 12. 31.	42,038	9,522
373	통합스포츠 활성화	-	2022. 1. 21.~2022. 12. 31.	19,200	2,247
374	2022년 전북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	2022. 1. 1.~2022. 12. 31.	26,500	15,310
375	2022년 K-Music 시즌 운영	-	2022. 1. 1.~2022. 12. 31.	100,000	250
376	2022년 충북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지원	-	2022. 1. 1.~2022. 12. 31.	20,250	2,973
377	4·3 추념 전시전 (동백이 피엄수다)	-	2022. 2. 1.~2022. 11. 30.	20,000	104
378	2022년 '씬디(Xindie) 티켓라운지' 운영지원	-	2022. 1. 1.~2022. 12. 31.	20,000	1,757
379	2022년 전통문화 일상 누림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2. 2. 1.~2022. 12. 31.	30,000	3,078
380	2022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대한장애인체육회	2022. 1. 1.~2022. 12. 31.	5,780	181
381	2022년 컨벤션 유치 개최지원 활성화	한국관광공사	2022. 1. 1.~2022. 12. 31.	700,000	55,432
382	2022년 전통 생활문화콘텐츠 제작 및 확산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2. 3. 1.~2022. 12. 31.	111,200	3,313
383	해·달맞이 생활 체육 교실 지원	대한체육회	2022. 1. 1.~2022. 12. 31.	4,896	2,610
384	전통 스포츠 보급	대한체육회	2022. 4. 1.~2022. 12. 31.	600	428
385	소년체전 출전비	대한체육회	2022. 1. 1.~2022. 12. 31.	1,834	1,345
386	소년체전 운영비	대한체육회	2022. 1. 1.~2022. 12. 31.	21,200	881
387	동계종목 대학팀·실업팀 창단 등 지원	대한체육회	2022. 1. 1.~2022. 12. 31.	91,574	90,416
388	춘계 공동학술대회	-	2022. 5. 1.~2022. 5. 31.	500	168
389	순기정 탄생 110주년 기념사업	대한체육회	2022. 1. 1.~2022. 12. 31.	300	207
390	시도체육회 훈련비 지원	대한체육회	2022. 1. 1.~2022. 12. 31.	3,122	2,813
391	유아기 체력 증진 운동 지침서 및 동영상 개발 제작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2022. 3. 1.~2022. 12. 31.	15,000	593
392	지방 체육진흥	대한체육회	2022. 1. 1.~2022. 12. 31.	70,000	4,964
393	2022년도 스포츠 친화 기업 선정지원 사업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2022. 1. 1.~2022. 12. 31.	9,500	240
394	2022년 창의 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	2022. 1. 1.~2022. 12. 31.	3,000	2,835
395	"여행을 일상처럼, 함양 On 데이" 프로그램	-	2022. 6. 1.~2022. 12. 31.	10,000	1,913
396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역량 강화	대한체육회	2022. 7. 1.~2022. 12. 31.	43,014	9,335
397	2022년 전통 한옥 브랜드화 사업	-	2022. 1. 1.~2022. 12. 31.	2,580	839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398	2022년 서울 인디 뮤직페스타	-	2022. 9. 1.~2022. 12. 31.	40,000	3,712
399	공예 디자인진흥원 지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7. 1. 1.~2017. 12. 31.	544,500	14,127
400	우리 마을 문화 활력 프로젝트	-	2017. 1. 1.~2017. 12. 31.	2,000	244
401	지역 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	2018. 1. 1.~2018. 12. 31.	1,200	400
402	음식 관광 활성화 사업(해외 흥보마케팅)	한국관광공사	2018. 1. 1.~2018. 12. 31.	60,000	1,930
403	2021년 공예 관광 산업 육성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21. 1. 1.~2022. 1. 31.	452,050	14,199
404	3대 문화권 활성화 포럼 운영	-	2019. 4. 1.~2020. 12. 31.	19,250	618
405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대한체육회선수촌	2017. 1. 1.~2018. 1. 9.	854,936	92,984
406	잔다리 페스티벌	-	2017. 1. 1.~2017. 12. 31.	50,000	189
407	-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	2017. 12. 1.~2017. 12. 30.	7,300	351
408	2018년 MICE 산업 육성 지원	한국관광공사	2018. 1. 1.~2019. 6. 30.	1,929,800	60,344
409	2018년 카바디 국외 전지훈련	-	2018. 1. 1.~2018. 12. 31.	4,494	582
410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18. 1. 1.~2018. 12. 31.	1,067,197	153,779
411	카바디 국가대표 촌외 훈련	-	2018. 1. 1.~2018. 12. 31.	31,435	106
412	2018년 평창문화올림픽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2. 28.~2019. 4. 30.	175,500	16,929
413	2018년 평창 문화올림픽 기념 공연전시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8. 3. 31.~2018. 12. 31	30,000	612
414	평창 대표 공연 시리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10. 31.~2019. 4. 30.	94,595	13,567
415	두근두근 인생극장	-	2018. 1. 1.~2018. 12. 31.	1,200	124
416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	2018. 1. 1.~2018. 12. 31.	380	380
417	강화 – 보수 정비 공사	-	2018. 1. 1.~2018. 12. 31.	6,000	151
418	구미 – 개축 공사	-	2018. 6. 27.~2018. 12. 20.	29,035	205
419	동계종목 우수선수 육성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19. 1. 1.~2019. 12. 31.	64,330	64,330
420	국가대표 훈련지원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2019. 1. 1.~2019. 12. 31.	1,119,370	266,333
421	카바디 국가대표 강화훈련 수당	-	2019. 1. 1.~2019. 12. 31.	21,453	360
422	카바디 국가대표 촌외 훈련	-	2019. 1. 1.~2019. 12. 31.	14,797	315
423	2019년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	2019. 1. 1.~2019. 12. 31.	519	159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424	체조 국가대표 강화훈련 수당	-	2019. 1. 1.~2019. 12. 31.	120,357	360
425	체조 국외 전지훈련	-	2019. 1. 1.~2019. 12. 31.	20,584	347
426	2019년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	2019. 1. 1.~2019. 12. 31.	28,411	102
427	체조 국가대표 외국인코치 초청	-	2019. 3. 1.~2019. 12. 31.	4,194	445
428	2019년 함평 – 보수사업	-	2019. 1. 1.~2019. 12. 31.	3,000	137
429	2019년 인디 뮤직 연합 페스타	-	2019. 1. 1.~2019. 12. 31.	40,000	2,916
430	2020년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관광공사	2020. 1. 1.~2021. 3. 31.	264,169	23,411
431	좌뇌와 우뇌로 즐기는 우리 色 이야기	-	2020. 1. 1.~2020. 12. 31.	3,000	175
432	2020년 전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	2020. 1. 1.~2020. 12. 31.	2,000	876
433	2020년 PCO 업계 경쟁력 강화 사업	-	2020. 2. 1.~2021. 2. 28.	55,700	972
434	2020년 몽골 관광 종합교육센터 건립 및 인적 역량 강화	한국관광공사	2020. 3. 1.~2022. 12. 31.	230,300	34,103
435	3대 문화 야간 관광상품 개발 운영	-	2020. 5. 1.~2021. 6. 30.	35,000	221
436	경북 문화기행 HI STORY 경북	-	2020. 5. 1.~2021. 12. 31	312,970	17,709
437	3대 문화권 공동 홍보 사업	-	2020. 5. 1.~2021. 8. 31.	42,140	286
438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	-	2020. 6. 26.~2020. 12. 28.	15,000	536
439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	-	2020년 4월~2021년 6월	5,000	277
440	2020년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	2020. 1. 1.~2020. 12. 31.	6,500	2,000
441	2020년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사업	-	2020. 7. 1.~2020. 12. 31.	3,500	165
442	2020년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보조사업	-	2020. 9. 1.~2020. 12. 31.	800	200
443	체력 인증센터 운영	계룡시장애인 체육회	2021. 1. 1.~2021. 12. 31.	16,500	4,933
444	국민체력 100 목포 체력 인증센터 운영	-	2021. 1. 1.~2021. 12. 31.	16,500	1,259
445	2021년 지역 문화 예술교육 기반 구축	-	2021. 1. 1.~2021. 12. 31.	3,600	3,600
446	민간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재단	2021. 2. 5.~2022. 6. 30.	153,097	118,430
447	공공미술 프로젝트	-	2020. 10. 1.~2021. 5. 31.	4,000	123
448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한국관광공사	2021. 1. 1.~2022. 3. 31.	182,600	768
449	2021년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관광공사	2021. 3. 1.~2022. 3. 31.	262,100	20,674
450	공공미술 프로젝트	-	2020. 11. 1.~2021. 5. 31.	1,000	122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451	MICE 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	2021. 4. 1.~2022. 2. 28.	450,000	11,080
452	2021년 실내 민간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	2021. 2. 5.~2022. 6. 30.	144,894	114
453	3대 문화권 공동 홍보 사업	-	2021. 3. 1.~2021. 12. 31.	38,360	298
454	3대 문화권 방문의 해	-	2021. 3. 1.~2021. 12. 31.	6,872	152
455	문화여행 기획전문가 육성	-	2021. 3. 1.~2021. 12. 31.	17,150	1,293
456	3대 문화 야간 관광상품 개발 운영	-	2021. 5. 1.~2021. 12. 31.	16,800	231
457	성주 - 단청공사	-	2021. 1. 1.~2021. 12. 31.	6,910	503
458	2021년 PCO 업계 경쟁력 강화 사업	-	2021. 2. 1.~2022. 2. 28.	55,700	7,321
459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여행 꼭지점 카페)	-	2021년 1월~2021년 12월	7,000	733
460	- 아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	2021. 10. 1.~2022. 9. 30.	1,800	518
461	2022년 국민 체력 100 사업	강원대학교삼척 산학협력단	2022. 1. 1.~2022. 12. 31.	16,000	990
462	강진에서 1주일, 맘 확 푸소(FU-SO)	-	2022. 1. 1.~2022. 12. 31.	10,000	1,315
463	2022년 마포 체력 인증센터 운영지원	마포구체육회	2022. 1. 1.~2022. 12. 31.	16,000	1,360
464	첨단기술 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사업	-	2022. 1. 1.~2022. 12. 31.	64,500	1,060
465	스포츠 산업 융복합 대학원	-	2022. 1. 1.~2022. 12. 31.	70,500	1,334
466	2022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	2022. 1. 1.~2022. 12. 31.	1,200	130
467	나주 - 주변 정비사업	-	2022. 5. 1.~2022. 7. 31.	13,500	970
468	[청춘 사운드] 대구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	2017. 1. 1.~2017. 12. 31.	13,000	457
469	2017년 찾아가는 라이브 카 운영	-	2017. 12. 18.~2018. 4. 30.	10,000	100
470	문화예술 해커톤 및 컬쳐톤 운영	-	2017. 1. 1.~2017. 12. 31.	1,200	357
471	역사와 전통 문화도시조성	-	2018. 1. 1.~2018. 12. 31.	8,000	800
472	2019년 전남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	2019. 2. 20.~2019. 12. 31.	12,175	5,151
473	전남 각지로 떠나는 문학여행	-	2019. 1. 1.~2019. 12. 31.	600	280
474	신안 - 주변 정비 공사	-	2019. 1. 1.~2019. 9. 30.	7,000	311
475	2020년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 사업	-	2019. 1. 1.~2020. 6. 30.	5,149	807
476	-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	2020. 1. 1.~2020. 12. 31.	5,350	141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잔액
477	3대 콘텐츠 통합 홍보 체계구축	-	2021. 3. 1.~2022. 5. 31.	11,200	982
478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	-	2021. 10. 1.~2021. 12. 31.	100	100
479	2021년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	2021. 11. 29.~2022. 3. 31.	800	800
480	2021년 야영장 화재 안전성 지원사업	-	2021. 12. 24.~2022. 12. 31.	1,500	1,500
481	2021년 등록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 사업	-	2021. 12. 1.~2022. 1. 31.	1,500	136
482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	2021. 9. 1.~2021. 12. 31.	800	800
483	- 한옥마을 브랜드화 사업	-	2022. 1. 1.~2022. 12. 31.	6,000	107
484	2022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	2022. 1. 1.~2022. 12. 31.	1,200	1,200
485	2022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	2022. 1. 1.~2022. 12. 31	1,200	1,200
합계				44,637,921	7,498,843

주: 감사기간 중 반납받은 284개 보조사업(집행잔액 360억 7,431만 원)은 표 내역에서 제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사업(2017~2022년) 집행잔액 미반납 명세

(단위: 만 원)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집행 잔액
1	CRP-Korea (큐레이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	2017. 10. 1.~2017. 12. 22.	3,500	151
2	춤추는 재즈 여행	-	2020. 3. 4.~2021. 1. 31.	7,500	224
3	뮤지컬 – 디자인 컨셉 포트폴리오 제작기획	-	2022. 3. 14.~2022. 6. 14.	1,400	872
4	2018년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및 관객개발을 위한 예술프로젝트	AB	2018. 10. 29.~2019. 3. 31.	1,700	266
5	재즈(Jazz), -	-	2020. 5. 1.~2020. 12. 31.	2,000	254
합계				16,100	1,767

주: 감사기간 중 반납받은 3개 보조사업(집행잔액 541만 원)은 표 내역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